

# 심판 매뉴얼

한국어 번역본

2026. 01.

## 서문

이 매뉴얼은 국제심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있는 심판들을 위한 학습 자료로 설계되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심판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 국제심판들을 위한 참고 지침서로도 활용될 수 있다.

세일링 스포츠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 매뉴얼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문서가 되어야 한다. 현재 실무 관행을 반영하는 개선 사항과 새로운 주제에 대한 의견 제시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변경이나 추가되는 것이 있을 경우, 개정판은 월드세일링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이다.

이 매뉴얼을 만드는데 기여해 주신 월드세일링 국제심판 소위원회 위원들, 매뉴얼 작업반, 그리고 모든 국제심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Andrus Poksi, Chair

World Sailing International Judges Sub-Committee

January 2026

월드세일링 국제심판 소위원회 위원장

사용상 유의 사항: 명확성과 간결성을 위하여, 이 매뉴얼에서는 보트를 지칭할 때 역사적 관례에 따라 여성형을 사용하며, 사람을 지칭할 때는 성 중립적 표현을 사용한다. 월드세일링 규정, 코드 (Code) 및 정책은 이 매뉴얼보다 더 빈번히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 명칭으로만 언급된다.

## 목차

서문 .....	1
목차 .....	2
A. 대회 경기임원 - 용어.....	9
A.1 머리말.....	9
A.2 용어의 의미.....	9
A.3 월드세일링 경기임원.....	13
A.4 국제심판 임명 신청.....	14
A.5 국제심판 최초 임명을 위한 평가서.....	14
B. 국제심판의 자격과 능력 .....	16
B.1 행동 강령.....	16
B.2 이해 상충.....	17
B.3 심판활동에 대한 적합성.....	17
B.4 부적절한 행위 또는 역량에 대한 혐의.....	22
C. 항의위원회 .....	23
C.1 머리말.....	23
C.2 이해 상충.....	23
C.3 구성 .....	23
C.4 상고할 수 없는 심판단 및 국제심판단.....	24
C.5 국제심판단 구성에 대한 국가협회의 승인 .....	25
C.6 3 명으로 구성된 국제심판단에 대한 월드세일링의 승인.....	26
C.7 책임 .....	26
C.8 국제심판단의 추가적인 책임 .....	26
C.9 절차 .....	26
C.10 국제심판단 패널 .....	27
C.11 현장에 없는 항의위원회 위원 .....	27
C.12 현장에 없는 당사자 및 증인 .....	28
C.13 원격 청문 권고 사항 .....	28
D. 대회 전 및 대회 중 바람직한 실무.....	30
D.1 대회 전.....	30
D.1.1 대회 전 항의위원장의 책임 .....	30
D.1.2 국제심판단의 책임 범위 결정.....	30
D.1.3 대회공고와 범주지시서 초안 검토.....	31
D.1.4 항의위원회 위원들의 업무 할당 .....	32
D.1.5 많은 대회에서의 일반적인 업무.....	32

D.2 대회 중 .....	35
D.2.1 도착 .....	35
D.2.2 시설과 장비 .....	36
D.2.3 항의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 .....	37
D.2.4 경기위원장, 총괄수역장, 다른 요원들과의 경기 전 회의 .....	38
D.2.5 선수 브리핑 .....	38
D.2.6 지원인력과의 소통 .....	39
D.2.7 미디어 (언론)와의 소통 .....	40
D.2.8 조사관 임명, RRS 69 관련 협의 .....	40
E. 대회에서 항의위원회의 행정 업무 .....	41
E.1 청문 관리 .....	41
E.2 일일 행정 업무 .....	42
E.3 청문요청서 접수 .....	42
E.4 청문요청서 기록 및 사본 생성 .....	43
E.4.1 서면 청문요청서 양식을 사용하는 대회 .....	43
E.4.2 온라인 청문요청이 가능한 대회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회 .....	44
E.5 중재 대상이 되는 항의 .....	44
E.6 사건에서의 벌칙 수락 .....	45
E.7 청문요청 철회 .....	45
E.8 청문일정 잡기 .....	45
E.9 청문 .....	47
E.10 마지막 경기 후 .....	48
F. 항의 청문 .....	49
F.1 일반 원칙, 관할권 .....	49
F.1.1 청문 준비 .....	49
F.1.2 여러 요청에 대한 동시 청문 .....	50
F.1.3 당사자의 권리, RRS 63.1 .....	51
F.1.4 통역 .....	51
F.1.5 항의 또는 구제요청의 철회, RRS 63.2(a) .....	52
F.2 항의, RRS 60 .....	52
F.2.1 항의서의 내용, RRS 60.3(a) .....	52
F.2.2 항의의 유효성, RRS 60.4 .....	52
F.2.3 경기수역에서 보트의 항의, RRS 60.2 .....	53
F.2.4 상해나 손상과 관련된 항의의 유효성 .....	54
F.2.5 경기수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항의의 유효성 .....	54

F.2.6	항의 제출 마감시간.....	54
F.2.7	경기위원회, 기술위원회 또는 항의위원회에 의한 항의.....	55
F.3	구제, RRS 61.....	56
F.3.1	누가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가?.....	56
F.3.2	구제청문 당사자.....	56
F.3.3	경기 시작 전 구제요청 .....	57
F.3.4	구제요청의 유효성, RRS 61.2 .....	57
F.4	청문의 진행, RRS 63 .....	58
F.4.1	청문 시작 .....	58
F.4.2	오퍼버.....	58
F.4.3	이해 상충, RRS 63.3.....	59
F.4.4	증거 수집, RRS 63.4.....	60
F.4.5	증인, RRS 63.4(b).....	61
F.4.6	제 3 의 보트가 RRS 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RRS 63.2(d).....	62
F.4.7	유도 심문 .....	62
F.4.8	전해들은 증거 및 서면 증거, RRS 63.4(b) .....	63
F.4.9	사진 및 비디오 증거, RRS 부칙 M8 .....	64
F.4.10	GPS 및 인터넷 트래킹 증거.....	65
F.5	사실, 결론, 판결, RRS 63.5.....	68
F.5.1	증거의 평가.....	68
F.5.2	사실의 판명.....	69
F.5.3	심의 .....	69
F.5.4	항의위원회 위원들 사이의 의견차이 해소 .....	70
F.5.5	입증 기준의 적용, RRS 63.5(a).....	71
F.5.6	당사자와 기타 관련자에게 통보, RRS 63.6 .....	71
F.6	항의 판결, RRS 60.5 .....	72
F.6.1	항의가 인용된 경우의 벌칙 .....	72
F.6.2	클래스규칙 및 장비에 관한 항의 판결, RRS 60.5(d) .....	72
F.6.3	RRS 61.4(b)(5)에 따른 항의위원회의 벌칙에 대한 조치 .....	74
F.7	구제 판결, RRS 61.4 .....	74
F.7.1	구제 요건 .....	74
F.7.2	득점 또는 순위가 크게 나빠졌거나 나빠질 수 있는 경우.....	75
F.7.3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우.....	76
F.7.4	부적절한 조치 또는 부적절한 임무누락, RRS 61.4(b)(1).....	76
F.7.5	물리적 손상과 상해, RRS 61.4(b)(2), 61.4(b)(3).....	77

F.7.6	도움 주기, RRS 61.4(b)(4).....	78
F.7.7	RRS 2 또는 또는 RRS 69, RRS 61.4 (b)(5)에 따른 벌칙받은 보트의 행동.....	78
F.7.8	구제 판결, RRS 61.4(c).....	78
F.8	재청문 요청.....	80
F.8.1	재청문, RRS 63.7.....	80
F.8.2	재청문 요건.....	81
F.8.3	재청문 절차.....	83
F.9	지원인력이 포함된 청문.....	84
F.9.1	지원인력이 포함된 청문의 당사자.....	84
F.9.2	지원인력과 관련된 청문 절차, RRS 62.....	84
F.9.3	지원인력에 대한 벌칙, RRS 62.3.....	85
F.9.4	지원인력의 규칙 위반에 대하여 보트에게 부과되는 벌칙, RRS 62.4.....	86
F.9.5	지원인력 또는 그가 지원하는 보트에 의한 상고.....	87
F.9.6	지원인력에 대한 부정행위 혐의.....	87
G.	Rule 2 and Rule 69.....	88
G.1	공정한 범주와 부정행위.....	88
G.1.1	RRS 2 공정한 범주.....	88
G.1.2	부정행위.....	88
G.2	절차.....	89
G.2.1	항의위원회가 RRS 69 에 따른 조치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90
G.2.2	RRS 69 청문의 적용 대상?.....	91
G.2.3	부정행위의 시기 및 장소.....	91
G.2.4	항의위원회의 준비.....	92
G.2.5	조사관 임명, RRS 69.2(c) 및 (d).....	92
G.2.6	당사자 서면 통보.....	93
G.3	RRS 69 청문.....	94
G.3.1	충분한 납득.....	95
G.3.2	벌칙의 감경과 가중.....	96
G.3.3	당사자의 불참.....	96
G.3.4	혐의 기각.....	97
G.3.5	벌칙.....	97
G.4	청문 이후.....	98
G.4.1	판결에 대한 상고.....	98
G.4.2	국가협회 또는 월드세일링에 보고.....	98
G.4.3	국가협회의 조치.....	98

G.4.4 소송 .....	99
H. RRS 부칙 T 중재 .....	100
H.1 머리말 .....	100
H.2 중재자 .....	100
H.3 경기-후 벌칙 .....	100
H.4 중재의 원칙 .....	102
H.5 중재 절차 .....	103
H.6 상고 불가 .....	106
H.7 장점과 단점 .....	106
I. RRS 42 와 RRS 부칙 P 를 포함한 수상에서의 판결 .....	108
I.1 머리말 .....	108
I.2 규칙 준수 관찰하기 – 일반 .....	108
I.3 경기위원회와의 연락 .....	108
I.4 준비해야 할 장비 .....	109
I.5 RRS 부칙 P – RRS 42 를 위한 특별 절차 .....	110
I.6 선수에 대한 브리핑 .....	110
I.7 RRS 42 추진 .....	111
I.8 벌칙 부과 여부 결정 .....	112
I.9 즉결판결 절차 .....	115
I.9.1 벌칙 신호 .....	116
I.9.2 벌칙 기록 .....	117
I.9.3 선수에게 벌칙 설명하기 .....	119
I.10 심판 보트 위치 선정 .....	120
I.10.1 스타트-전 .....	122
I.10.2 스타트에서 .....	122
I.10.3 풍상코스에서 .....	123
I.10.4 리칭코스에서 .....	125
I.10.5 런코스에서 .....	127
I.10.6 피니시에서 .....	129
J. 심판과 청소년 선수 .....	132
J.1 머리말 .....	132
J.2 청소년 선수의 정의 .....	133
J.3 청소년 대회에서의 행동 기준 .....	133
J.4 심판의 시인성 .....	134
J.5 대회 브리핑 .....	134

J.6 청소년 선수 및 그들의 지원인력과의 의사소통.....	135
J.7 청문.....	135
J.8 청문의 읍저버.....	136
J.9 항의기 사용.....	136
J.10 RRS 42 및 RRS 부칙 P.....	136
J.11 지원인력 및 지원보트.....	136
J.12 아동보호 및 RRS 69 부정행위.....	137
K. 대양 및 외양 경기 심판.....	138
전문.....	138
K.1 항의위원회 구성 및 조직.....	138
K.2 항의위원회의 책임.....	139
K.3 범주지시서에서의 특정한 규칙 변경.....	140
K.4 청문 절차.....	142
K.5 벌칙.....	143
K.6 구제요청.....	144
L. 무선세일링 심판.....	146
약어.....	146
L.1 머리말.....	146
L.1.1 대회공고에 대한 추가 사항.....	147
L.1.2 범주지시서에 대한 추가 사항.....	147
L.2 엠파이어 방식.....	148
L.3 장비.....	149
L.4 무선세일링 엠파이어 방식의 기본 원칙.....	149
L.5 엠파이어 위치.....	152
L.6 해결되지 않은 사건.....	152
L.7 요약.....	153
M. 선수분류.....	160
M.1 머리말.....	160
M.2 대회공고와 범주지시서.....	160
M.3 항의.....	161
M.4 벌칙.....	162
M.5 선수분류위원회에 의한 변경.....	162
M.6 항의위원회에 접수된 보고.....	162
N. 슬라럼 윈드서핑 심판 지침.....	164
N.1 머리말.....	164

N.2 일반.....	164
N.3 경기 방식.....	165
N.3.1 경기 코스.....	165
N.3.2 엘리미네이션 (탈락) 방식에서의 경기 진행.....	166
N.4 규칙.....	166
N.4.1 스타트 (관련) 시각적 안내.....	166
N.4.2 리칭 코스 (관련) 시각적 안내.....	167
N.4.3 마크 돌기.....	167
N.5 심판의 위치.....	168
N.6 항의와 구제요청.....	169
N.6.1 청문 절차.....	170
N.6.2 구제.....	171

# A. 대회 경기임원 - 용어

## A.1 머리말

세일링 스포츠에서 심판의 주요 역할은 국제운영기구인 월드세일링의 세일링 경기규칙과 방침에 따라 대회가 운영되게 하는 것이다. 이 역할은 여러 측면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심판은 선수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공정하고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하여, 심판은 세일링 경기규칙(RRS)과 함께 해당 대회를 통제하는 기타 모든 규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클래스규칙, 월드세일링 규정 (Codes),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IRPCAS) 그리고 각 국가협회 규정이 포함된다.

둘째, 심판은 대회공고와 범주지시서를 검토하고, 계측 및 등급 규칙 준수와 관련된 사항을 판단하며, 규칙 위반 여부를 관찰하고, 수상에서 추진 관련 규칙을 집행하는 등 대회의 여러 핵심적인 요소에서 지원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심판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심판은 대회의 공정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도전적이며 때로는 어려운 임무이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 세일링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이 장은 우리 세일링 스포츠에 봉사하고 있는 경기임원들에 대한 용어와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며,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기술한다. 또한 국제심판 임명에 관한 월드세일링의 절차를 설명한다.

## A.2 용어의 의미

### 세일링 경기규칙 (이하 규칙 또는 RRS)

월드세일링의 관할 하에 실시되는 세일링 경기에 적용되는 규칙을 말한다.

### 월드세일링 규정 (Code)

다음의 월드세일링 규정은 규칙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 광고 규정 (Code)
- 도핑-방지 규정 (Code)
- 윤리 강령
- 자격 규정 (Code)
- 선수분류 규정 (Code)

이 규정들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RRS 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규정의 최신판은 월드세일링 웹사이트 ([www.sailing.org](http://www.sailing.org))에 게시되며, 가맹 국가협회를 통하여 공지된다.

### **판결 사례집**

월드세일링은 경기규칙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으로써 판결 사례집을 발행한다. 이 판결 사례들은 경기규칙위원회에 제출된 상고와 질의에 근거한다. 판결 사례집 (해석들을 모아 엮은 책)은 규칙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상충되는 해석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 것이다. 심판은 규칙을 해석할 때 RRS 와 판결 사례를 따라야 한다.

### **질의 응답 (Q&A)**

월드세일링 경기규칙 Q&A 는 경기규칙위원회와 경기임원위원회의 공동 책임으로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Q&A 는 RRS 와 관련하여 월드세일링에 질문할 자격이 있는 경기임원, 가맹 국가협회, 그리고 월드세일링 클래스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이 답변들은 RRS 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이나 공식 설명은 아니지만, 경험이 풍부한 경기임원들이 신중하게 검토한 의견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이러한 Q&A 들은 또한 4 년마다 규칙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집과 매치 레이스 및 팀 레이스 즉결판결 지침서에 포함될지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된다.

이 서비스는 상고 절차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RRS 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된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월드세일링

월드세일링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인정하는 세일링 스포츠의 세계적 관할 기구이다. 월드세일링의 사명은 누구나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세일링을 더욱 흥미롭고 접근하기 쉬운 종목으로 만들고, 그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일링 종목과 전 세계 수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월드세일링은 가맹 국가협회, 클래스협회 및 기타 가맹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월드세일링의 많은 책임과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국제 경기임원의 교육 및 자격 인증으로, 여기에는 국제심판, ump이어, 경기임원, 계측관, 등급담당관 및 대회 감독관 (경기임원 전체를 대표하면서 위원회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이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포함된다.

### 가맹 국가협회

국가협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인정한 각 국가의 세일링 스포츠에 대한 관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국가협회는 국가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의 세일링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지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협회는 월드세일링의 회원이다. 많은 국가협회는 크루징과 파워보트 레이싱과 같은 추가적인 책임도 수행하고 있다.

국가협회는 종종 RRS 에 추가적인 규칙을 규정한다. 이 규정들은 범주지시서에 의하여 국가협회의 관할권 내에서 세일보트 경기를 관리하는 규칙으로 포함된다. 비록 일부 국가협회에서는 그들의 자체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국제요트대회에서 이 국가협회 규정들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협회는 항의위원회의 판결에 대하여 보트, 경기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가 제기하는 상고를 청문하기 위한 상고위원회를 임명한다. 상고 절차는 각 국가의 규칙, 방침 및 국가 규정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상고위원회의 구성원에는 다른 국가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포함될 수도 있다. 또한 국가협회는 상고를 다른 국가의 상고위원회에 위임할 수도 있다. 상고에 대한 최종 권한은 해당 대회가 개최되는 장소의 관할권을 가진 국가협회에 있다. 월드세일링은 상고에 대한 청문을 하지 않는다.

국가협회는 규칙을 명확히 하거나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상고를 월드세일링 경기규칙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경기규칙위원회가 해당 상고가 규칙의 이해를 돕는 데 유익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로 받아들인다.

## 조직위원회 (OA)

대회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기구를 조직위원회라고 한다. 조직위원회는 RRS 89.1 에 명시된 바와 같이 클럽, 클래스협회, 국가협회, 월드세일링 자체 또는 이들의 조합일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경기위원회, 항의위원회, 기술위원회, 엄파이어 및 등급분류관을 임명한다.

## 경기위원회

경기위원회는 경기를 운영한다. 경기위원회는 범주지시서를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채점할 책임이 있다. 조직위원회가 항의위원회 또는 국제심판단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경기위원회는 청문을 수행할 항의위원회를 임명할 책임이 있다. 경기위원회의 구성원은 항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 또는 부적절한 임무누락 혐의에 대한 구제요청의 청문에서는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의위원회는 경기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항의위원회는 이해 상충을 고려하고 규칙에 따라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경기위원회 위원은 RRS 부칙 N 에 따라 구성된 국제심판단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 항의위원회

항의위원회는 항의, 구제요청과 재청문,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 그리고 지원인력이 규칙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신고를 청문한다. 항의위원회는 경기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 RRS 부칙 N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심판단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국제심판단

국제심판단은 RRS 91(b)와 RRS 부칙 N 의 요건을 충족하는 항의위원회이다. 국제심판단은 경기위원회나 기술위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해당 위원회 (경기 또는 기술)의 구성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국제심판단은 세일링 경기규칙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폭넓은 항의위원회 경험을 가진 경륜있는 세일러로 구성된다. 그 구성원은 서로 다른 가맹 국가협회에 소속된 인원들로 이루어지며, 그 과반수는 월드세일링 국제심판이어야 한다. 국제심판단이 RRS 부칙 N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 RRS 70.3 은 국제심판단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심판단의 책임에는 RRS 제 5 장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항의, 구제요청 및 기타 사안을 청문하고 판결하는 것이 포함된다. 조직위원회, 경기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의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지원한다. 국제심판단은 참가 자격, 계측 또는 레이팅 증명서에 대한 요청을 판결하고, 규칙에 따라 선수, 보트 또는 장비의 대체를 승인한다. 또한 조직위원회, 경기위원회 및 기술위원회가 회부한 사안에 대해서도 판결한다.

### **기술위원회**

기술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지시 그리고 규칙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장비 검사와 대회에서의 계측 임무를 수행한다. 기술위원회의 기능에는 대회 시작 전에 보트를 계측하고 클래스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경기 중 점검 (세일이 블랙 밴드 내에 범장되어 있는 것, 밸러스트의 배분, 의류의 무게 등) 이 포함될 수 있다.

청문 중에 항의위원회가 계측 규칙의 의미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관련 사실과 함께 그 질문을 해당 규칙의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에 회부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답변에 따라야 한다. 클래스규칙 권한 기관은 클래스규칙, 그 변경 사항 및 클래스규칙 해석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갖는 기관이다.

### **심판, 국가심판, 국제심판**

심판은 항의위원회의 구성원이다. "국가심판"이라는 명칭은 심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협회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 "국제심판"이라는 명칭은 월드세일링의 문서 <경기임원의 역할, 자격 및 역량>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드세일링이 부여한다.

### **엄파이어, 국가엄파이어, 국제엄파이어**

엄파이어는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상황과 규칙을 실시간으로 판결하여야 한다.

## **A.3 월드세일링 경기임원**

세일링 종목의 경기임원 교육과 자격 인증 및 RRS 의 관리•운영은 월드세일링의 핵심 목적이다.

월드세일링은 1981년에 선수들이 인식한 세 가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제심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첫째, 세계선수권대회 및 기타 주요 국제대회에서 항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을 식별하여야 할 필요성; 둘째, 이러한 국제대회의 항의위원회가 참가 선수들의 다양한 국적과 세일링 문화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 셋째,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판결을 확정하여야 할 필요성이다.

월드세일링은 또한 계측관, 엄파이어, 경기임원, 대회 감독관 및 등급심사관을 위한 교육 및 자격 인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월드세일링의 경기임원 규정은 경기임원의 관리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은 경기임원위원회의 권한 하에서 관리되며, 그리고 종목별로 구성된 해당 소위원회를 통하여 운영된다. 국제심판 프로그램은 국제심판 소위원회를 통하여 관리된다.

현재의 월드세일링 규정은 월드세일링 공식 웹사이트인 [www.sailing.org](http://www.sailing.org)에 게시되어 있다.(검색창에 "regulation"을 입력한 후, submit을 클릭하고, "Documents"를 선택하면 된다.)

#### **A.4 국제심판 임명 신청**

국제심판으로 임명되기 위한 요건과 신청 절차는 월드세일링의 경기임원 규정과, 최신 발간물 월드세일링 <경기임원의 역할, 자격 및 역량 (국제 경기임원 신청 문서)>에 있다.

<경기임원의 역할, 자격 및 역량> 문서는 어떤 대회가 주요 대회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국제심판이 되기 위한 참고 자료 문서, 최초 신청 패키지, 그리고 국제심판 자격 갱신을 위한 자료는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의 <경기임원 (Race Officials) - 국제심판 (International Judge)> 영역에 게시되어 있다.

월드세일링은 국제심판의 자격 갱신 대상 연도에 해당하는 해에 해당 국제심판에게 연락하여 자격 갱신을 위한 신청 패키지를 발송한다.

#### **A.5 국제심판 최초 임명을 위한 평가서**

국제심판으로 처음 신청하는 경우, 해당 대회에서 신청인의 심판 수행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항의위원회 위원장인 국제심판의 평가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청자는 대회 이전에

월드세일링을 통하여 항의위원장에게 평가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항의위원장은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월드세일링에 제출한다.

국제심판 신청 매뉴얼은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국제심판 평가서 양식 작성 지침> 문서는 항의위원회 위원장이 국제심판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두 문서 모두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의 <국제심판>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원자 및 항의위원회 위원장을 위한 평가서에 대한 지침**

대회 기간 동안 항의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자의 수행능력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판단의 다른 선임 국제심판을 선정할 수 있다. 항의위원장은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심판 및 신청자와 매일 논의하여 추가적인 발전이 필요한 분야의 식별을 도와 신청인이 대회 기간 중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대회 종료 후에 항의위원장은 평가서를 완성하고, 평가 내용을 신청자와 논의한 다음,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를 월드세일링 [raceofficials@sailing.org](mailto:raceofficials@sailing.org) 에 제출한다. 신청자는 평가서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항의위원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 B. 국제심판의 자격과 능력

### B.1 행동 강령

세일링 스포츠의 참가자인 월드세일링 경기임원은 월드세일링 윤리 강령에 정의된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제심판은 세일링 스포츠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경기임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심판은 최고 수준의 전문성, 품위, 그리고 청렴성을 갖추어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심판은 스포츠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국제심판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 규칙, 판결 사례, 절차 및 월드세일링 방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적용을 유지할 것;
- 각 판결이 규칙과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그리고 어떠한 편견도 없이 내려지도록 보장할 것;
- 대회 중 및 대회 종료 후에도 항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
- 동료, 선수, 경기임원, 팀 관계자, 코치, 지원인력 및 주최 측에 대해 예의 바르고 정중하며, 열린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할 것;
- 동료, 선수, 경기임원, 각 팀 관계자, 코치, 지원인력, 조직위원회 및 개최국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할 것;
- 항의위원회 초청을 수락하기 전에 이해 상충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이후 새로운 이해 상충이 될 수 있는 상황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것;
- 대회에 정시에 도착하고, 마지막 항의 사안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있을 계획을 세울 것;
- 필요한 비용만 지출하여야 하며, 비용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없는 한 적법하고 필수적인 실비 지출만을 청구할 것;
- 정시에 임무에 임하고, 수상 및 육상에서 적절한 복장을 착용할 것;

- 향의위원실, 기타 건물, 대회장 내 흡연이 금지된 구역 및 수상에서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흡연 및 전자담배 사용을 삼가할 것;
- 청문 전이나 청문 중, 그리고 수상에 있는 동안에는 음주를 자제할 것. 청문 전에 식사를 하였더라도 음주는 피해야 한다. 심판은 대회 기간 중 어떠한 경우에도 취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행동 강령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심판은 그 임명이 취소될 수 있다.

## B.2 이해 상충

대회에서 경기임원이 활동하는 경우, 이해 상충은 RRS 에 있는 정의 <이해 상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존재한다.

월드세일링은 경기임원이 대회에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 상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참고해야 할 문서를 발행하였다. 해당 문서는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 있다. (“conflict of interest”를 검색한 후 submit 을 클릭하고 “Documents”를 선택하면 된다).

## B.3 심판활동에 대한 적합성

국제심판은 자신이 활동하는 대회의 유형에 맞게 필요한 역할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 초청을 수락하기 전에, 해당 대회의 요구사항과 자신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심판에게 기대되는 활동에는 다양한 범위가 있으며, 이런 모든 활동이 각 대회마다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대회에서의 역할	필요한 역량
청문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통상적으로 영어로 읽고 쓰며 말할 수 있는 능력</li> <li>● 적절한 시력과 청력 (필요한 경우 보조장치 활용)</li> <li>●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을 분석하기 위한 강력한 추론 능력과 기억력</li> </ul>

대회에서의 역할	필요한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결을 내릴 때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li> <li>● 항의와 구제요청에 대한 판명된 사실과 판결을 모두 평가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li> <li>● RRS 69 청문에 대한 혐의 제기 및 판결문 작성</li> </ul>
수상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승한 동료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소형 파워보트를 운항하는 능력</li> <li>● 계류장에서 보트로, 그리고 보트 간 이동 시 균형을 잃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기동성</li> <li>● 멀미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하는 능력</li> <li>● 수상에서 자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 (민첩성)</li> <li>● 각 클래스의 범주 특성을 고려하여, 경기를 방해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보트 위치 선정</li> <li>● VHF (종종 면허 필요함) 및 개인 무전기를 사용할 때 적절한 통신 절차를 준수하는 능력</li> <li>● 어떠한 수상 조건에서도 장시간 활동할 수 있는 체력</li> <li>● 물에 빠진 동료를 구조할 수 있는 체력</li> <li>● 경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항의 청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집중력</li> </ul>

대회에서의 역할	필요한 역량
RRS 부칙 P 에 따른 RRS 42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수상에서"를 참조</li> <li>● RRS 42, 각 클래스별 일반적인 특정 움직임, 그리고 RRS 부칙 P 의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li> <li>● RRS 42 에 대한 클래스별 변경 사항에 대한 지식</li> <li>● 경기 중인 보트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경기하는 보트의 움직임을 판별할 수 있는 심판 보트의 위치 선정</li> <li>● 논쟁없이 선수에게 부과한 벌칙을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li> </ul>
with Fast Fleets 속도가 빠른 플리트와 함께 수상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수상에서" 참조</li> <li>● 어떤 상황에서도 코스에 따른 빠른 이동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li> <li>● 심판 보트로 빠르게 접근하는 보트와 태킹 또는 자이빙하여 심판 보트와 충돌 코스가 될 수 있는 보트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력</li> </ul>
윈드서핑/카이트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수상에서" 참조</li> <li>● 관련 부칙 (B/F)에 있는 규칙 변경사항에 대한 지식</li> <li>● 경기 코스를 운항하기 위한 특정한 루트 (이동 경로)에 대한 지식</li> </ul>
대양/장거리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PCAS 및 WS &lt;외양 특별 규정&gt;에 대한 철저한 이해</li> <li>● 항로 계산, 항적 추적 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li> <li>● 수정된 항의 절차에 대한 지식</li> <li>● 임의재량 벌칙 시스템 (시간, 기항, 정박)에 대한 지식</li> </ul>

대회에서의 역할	필요한 역량
즉결심판 및 엠파이어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수상에서" 참조</li> <li>● 적용되는 플리트 엠파이어 방식 규칙과 그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li> <li>● 메달레이스 엠파이어 방식과 플리트 경기의 즉결심판을 위한 심판 보트</li> <li>● 위치에 대한 지식</li> <li>● RRS 제 2 장의 규칙위반에 대한 신속한 판결</li> <li>● 해당되는 경우, 위의 'RRS 부칙 P 에 따른 RRS 42 판결' 참조</li> </ul>
무선 세일링 엠파이어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RS 부칙 E 및 그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li> <li>● RRS &lt;제 2 장&gt;의 규칙위반에 대한 신속한 판결</li> <li>● 긴 시간의 경기 동안 부두 (방파제나 교각) 를 따라 오래 서 있고 이동할 수 있는 체력</li> <li>● 어떤 상황에서도 야외에서 장시간을 버틸 수 있는 체력</li> </ul>

심판은 대회에서 요구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활동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때, 자신의 역량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적절히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대회 초청을 수락하는 것은 항의위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선수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아래의 자기평가 표는 다양한 유형의 대회에서 요구되는 요건과 관련하여 심판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의 능력 수준			
대회 요구사항	아직 아님/ 지금은 아님	개발 중	능숙함
청문에서			
수상에서			

RRS 부칙 P 에 따른 RRS 42			
빠른 플리트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대양/장거리			
즉결 판결/엠파이어링			
무선세일링			

### 나의 능력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능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대회의 종류도 바뀔 수 있다. 이는 당신의 경력에 따라 담당할 수 있는 대회의 유형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한이 있는 경우, 요구되는 항의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해당 초청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 만약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초청을 수락하기 전에 항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경기임원을 담당하는 조직위원회 관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숙소가 개인 주택인 경우, 담배 연기 등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조직위원회에 알린다;
- 식단에 제한이 있는 경우, 도착 전에 이를 조직위원회에 알린다.

#### **B.4 부적절한 행위 또는 역량에 대한 혐의**

월드세일링 규정인 <경기임원 수행 평가>는 월드세일링 경기임원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역량 부족에 대한 보고서를 정책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보고는 <윤리 강령> 및 <괴롭힘과 학대 방지 보호 정책>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다.

## C. 항의위원회

### C.1 머리말

조직위원회가 선수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심판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은 대회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 경기위원회나 요트클럽이 임명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클럽 회원들로 구성된 항의위원회부터, 세계적인 주요 대회에서 월드세일링이 임명하거나 승인한 상고가 불가한 국제심판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 가장 경험이 많은 국가심판이나 국제심판이 항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규칙과 절차가 준수되도록 할 책임을 진다.

### C.2 이해 상충

월드세일링 경기임원 (World Sailing Race Official)이 자신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해 상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각 심판은 대회 초청을 수락하기 전에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 게시된 "경기임원을 위한 이해 상충 평가 지침 (Guidelines for Assessing a Conflict of Interest for Race Officials)"을 확인하고, 해당 지침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웹사이트에서 "conflict of interest"를 검색한 후 submit 을 클릭하고, "Documents"를 선택한다.)

여기에는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RRS 63.3(c)는 이해 상충이 있는 사람이 월드세일링의 주요 대회 또는 개최지의 국가협회가 정하는 기타 대회에서 항의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해 상충이 있음을 인지한 월드세일링 경기임원은 국제심판단이 임명되는 대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대회의 초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대회 기간 중에는 RRS 63.3 에 따라, 심판은 항의 또는 구제요청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인지하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C.3 구성

통상적으로, 조직위원회가 항의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세계선수권대회와 같은 대회에서는 이 결정이 조직위원회와 클래스협회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올림픽과 같이 월드세일링이 항의위원회 임명에 책임이 있는 특정 대회에서는 예외가 있다. 항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초청장을 발송하도록 요청받을 수는 있으나, 그 초청은 조직위원회 또는 경기위원회를 대리하여 발송하는 것이다.

항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보트 유형과 경기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항의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한 명은 경기하려는 보트, 해당 클래스의 규칙과 관행 그리고 대회 유형에 대하여 정통하여야 한다. 윈드서핑 대회의 항의위원회는 윈디자인 세계선수권대회나 외양경기와는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가능하다면, 현지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위원 한 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클럽의 선수가 참가하는 오픈 대회에서는, 조직위원회가 보통 경기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3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항의위원회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파성, 선입견 또는 이해 상충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이 항의위원회는 서로 다른 클럽 소속의 위원들로 구성될 수 있다. 더 높은 수준의 경험과 지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협회들은 국가심판을 양성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국가협회는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의 항의위원회 구성원으로 과반수의 국가심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수상에서 RRS 42 추진에 대한 즉결심판인 RRS 부칙 P가 적용될 경우, 항의위원회 위원 대다수는 이 전문적인 유형의 심판 업무에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는 정식 심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오피저버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되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

국제심판단의 경우, 해당 대회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숙련된 국가심판 1~2 명을 포함할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항의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심판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특정 위원에게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C.4 상고할 수 없는 심판단 및 국제심판단**

세일링 경기규칙은 당사자들에게 항의위원회의 판결이나 절차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세일링 경기규칙은 상고의 권리가 거부될 수 있는 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RRS 부칙 N에 따라 구성된 국제심판단을 임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추가로, RRS 70.3 에는 상고를 거부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조항이 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의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해당 규칙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심판단을 위하여 제공되는 지침 중 일부는 상고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받은 항의위원회에도 유용하다.

국제심판단의 성공을 좌우하는 두 명의 핵심 인물은 항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이자, 항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항의위원장이 선수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하며, 가급적 개최되는 국가와 같은 국적이 아닌 것이 좋다. '현지' 부위원장에게는 대회가 시작되기 전, 관리 및 조직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

'현지' 심판은 대회 조직위원회에 잘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항의위원회 구성 작업을 돕도록 요청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현지' 심판은, 외국 국적 심판이 위원장을 맡고, '현지' 심판이 부위원장을 맡는 것이 항의위원회의 독립성을 더 쉽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 심판은 다른 국가협회 소속의 자격을 갖춘 심판을 위원장으로 초빙하는 데 도움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후 위원장과 함께 항의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들을 모집할 수 있다.

RRS 부칙 N 에는 국제심판단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월드세일링 가맹 국가협회 그룹 (MNA)은 월드세일링 정관에 나와 있다. 항의위원회 위원의 국적은 중대한 이해 상충에 해당되지 않는다 (RRS 부칙 N3.1).

국제심판단으로 구성된 항의위원회는 경기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와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항의위원회 위원은 경기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질병이나 긴급 상황으로 인하여 국제심판단 또는 패널이 3~4 명으로 줄어드는 경우, 조직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대체 인력을 찾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RRS 부칙 N1.5).

## **C.5 국제심판단 구성에 대한 국가협회의 승인**

일부 국가협회는 그들의 규정에 따라 국제심판단 임명을 승인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승인이 필요할 경우, 조직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추천된 국제심판단의 위원장과 위원들의 이름과 함께 대회 세부 사항을 국가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RRS 부칙 N1.8 은 국가협회 규정에 국제심판단 임명에 대하여 국가협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RRS 91(b) 참조), 그 승인에 대한 공지를 범주지시서에 포함시키거나 공식게시판에 게시할 것을 요구한다.

### **C.6 3 명으로 구성된 국제심판단에 대한 월드세일링의 승인**

RRS 부칙 N1.7 에 따른 제한적인 상황에서, 월드세일링은 총 3 명으로 구성된 국제심판단을 승인할 수 있으며, 모든 위원은 국제심판이어야 하고, 3 개의 서로 다른 국가협회 소속이어야 한다. (M, N, Q 그룹에서는 2 명) 월드세일링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C.7 책임**

임명된 항의위원회 또는 국제심판단의 주요 임무는 항의, 구제요청, 지원인력에 대한 신고를 청문하고, RRS 69 에 따른 혐의를 제기하며 청문을 개최하는 것이다. 그 책임은 RRS 42 에 대한 수상 심판과 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도록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항의위원회는 경기위원회나 조직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대회 중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지원한다.

### **C.8 국제심판단의 추가적인 책임**

국제심판단의 주요 임무는 항의위원회와 동일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회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판, 조직위원회,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부담과 압박은 커진다. 국제심판단으로 구성된 항의위원회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권이 없기 때문에, 세일링 스포츠에 대한 평판은 대회의 국제심판단이 명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데 달려있다.

조직위원회나 경기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심판단은 경기의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문하고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대회에서 국제심판단은 종종 자격, 계측 또는 레이팅 증명서 문제에 대한 것, 그리고 선수, 보트, 세일 또는 장비의 교체 승인 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받을 수 있다 (RRS 부칙 N2 참조). 국제심판단은 RRS 부칙 N 의 요건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C.9 절차**

항의위원회의 판결은 모든 구성원의 단순 다수결로 결정된다. 동수일 경우,그 청문의 패널위원장이 추가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 C.10 국제심판단 패널

5 명 미만의 위원들로 구성된 패널이 청문을 개최하기 위한 요건은 RRS 부칙 N1.4(b)에 요약되어 있다. 패널은 3 명의 서로 다른 국가협회 소속이어야 하며, 그 중 2 명은 국제심판이어야 한다. 또한 청문의 당사자들에게 해당 청문이 RRS 부칙 N1.4(b)에 따라 임명된 국제심판단 패널에 의하여 진행됨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3 명으로 구성된 패널의 판결에 불만족할 경우, 판명된 사실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 국제심판단에 의한 청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 요청은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항의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5 인으로 구성된 국제심판단을 지명한다. 모든 청문 당사자는 청문에 참석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5 명으로 구성된 국제심판단이 원래의 청문에서 사용했던 절차를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은 결론과 판결이 판명된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 새로운 청문은 RRS 63.7 에 따른 재청문이 아니다. 이전의 3 명으로 구성되었던 패널이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심판단은 재청문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C.11 현장에 없는 항의위원회 위원

RRS 부칙 N 은 국제심판단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RRS 부칙 M 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지만, 청문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비록 어느 경우에도 항의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청문에 물리적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모든 위원이 청문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항의위원회는 모든 위원이 한 장소에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더라도 원격 청문절차를 채택하여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 명 또는 모든 원의 물리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 대회 시작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예: 선수의 출전 자격 또는 분류);
- 대회가 종료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예: 기술위원회에서 며칠이 소요되는 복잡한 계측 항의 등);
- 대양 경기인 경우; 또는

- 질병이나 긴급 상황으로 인해 전체 심판단 또는 패널의 인원이 5명 미만이 되었고, 자격을 갖춘 대체 위원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C.12 현장에 없는 당사자 및 증인

RRS 63.1은 당사자에게 청문 전 과정에 참석할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청문의 당사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의위원회가 청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최선의 방법은 청문을 진행하는 동안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출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항의위원회가 원격 청문절차를 채택하여 이들이 원격으로 청문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현장에 없는 항의위원회 위원 (off-site protest committee members)의 경우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항의위원회 위원이 원격시스템을 통하여 출석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면, 청문 당사자나 증인들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C.13 원격 청문 권고 사항

2020년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하여 많은 항의위원회가 청문에 화상회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특히 비즈니스 회의와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발전과 함께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그 과정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이다. 이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향후에도 업데이트와 개선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원격 청문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청문 관련자 모두에게 동시에 전송되어야 한다. 화상회의 시스템이란 인터넷을 이용해 관련자들의 음성과 영상을 최소한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전송하는 프로그램, 프로토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이 외에도 항의실 테이블을 비추는 영상이나 가상 화이트보드와 같은 추가적인 스트림이 포함될 수 있다.

원격 청문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광대역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대회 전에 조직위원회의 일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항의위원회가 다른 사용자와 광범위하게 공유되지 않는 강력한 Wi-Fi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당사자와 증인은 각자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차량을 운전하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당사자나 증인의 경우, 대체로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간헐적으로 끊어지기 쉽다.

당사자와 심판이 서로 다른 여러 장소에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청문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래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회 현장에 항의위원회 위원이 있다면, 그 위원은 이러한 절차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다음은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임무에 대한 일부 점검 목록이다:

- a) 청문 준비는 원격 청문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준비하는데 대면 청문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b) 대회 중 발생하는 청문의 경우, 현장에 없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청문의 시간을 미리 정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의 시간대를 고려할 것;
- c) 현장에 없는 항의위원회 위원과 당사자들에게 청문요청서와 기타 문서의 사본을 발송할 것;
- d) 당사자들이 영상 증거를 사용할 경우, 현장에 없는 항의위원회 위원 및 당사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본을 입수하도록 노력할 것;
- e) 모든 당사자와 증인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혼자 있는 공간에서 청문에 참여하도록 할 것;
- f) 화상회의 플랫폼의 대기실 기능을 활용하여, 증인을 플랫폼의 대기실에서 청문 플랫폼으로 초대하였다가 내보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듣지 못하게 할 것;
- g) 청문에 참석한 사람과 현장에 없는 모든 사람이 이 원격 청문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예를 들어, 대양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화상 원격 청문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만 이메일을 통하여 원격 청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심판 매뉴얼의 <대양 및 외양경기의 심판>장에 상세히 설명된 대로, 대회공고 또는 범주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D. 대회 전 및 대회 중 바람직한 실무

### D.1 대회 전

#### D.1.1 대회 전 항의위원장의 책임

대회가 시작되기 전, 항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직접 수행하거나 배정해야 할 다양한 업무와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항의위원장은 조직위원회에 대한 공식적인 권한이 없지만, 양측의 관계가 협력적으로 유지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가능할 경우, 항의위원장은 조직위원회가 항의위원회와 관련된 자신의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적절하고 신중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회 개최 이전의 주요 책임은 항의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있으나, 다른 위원들이 이를 지원할 수 있다면 항의위원회는 그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될 것이다

항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구체적인 대회 전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대회공고와 범주지시서 초안을 검토할 것;
- 필요한 경우, 조직위원회가 대회에 적합한 심판을 선정하는 것을 도울 것;
- 조직위원회와 심판들이 사용할 경비의 정산 및 숙소에 대하여 협의할 것;
- 육상과 수상에서의 운영에 대한 항의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조직위원회에 전달할 것;
- 항의위원회의 첫 번째 모임 시간을 결정하고 위원들에게 이를 알릴 것;
- 조직위원회가 선수들 또는 경기임원들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위원들 간에 업무 및 역할을 배분하고, 그 내용을 충분한 사전 기간을 두고 공유할 것; 그리고
- 위원회 구성원들 (필요한 경우 다른 경기임원 포함) 간에 WhatsApp 그룹과 같은 메시징 시스템을 구축할 것.

#### D.1.2 국제심판단의 책임 범위 결정

RRS 부칙 N2 에는 국제심판단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RRS 부칙 N2.2 와 N2.3 에는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심판단에게 주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국제심판단은 경기위원회나 기술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지 않고 독립적이다. 신중한 항의위원회는 경기 코스와 기타 경기위원회 문제에 대하여 총괄수역장에게 개선 사항과 의견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경기위원회의 조치와 관련된 구제요청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 **D.1.3 대회공고와 범주지시서 초안 검토**

대회공고는 사실상, 대회 조직위원회와 선수들 사이의 합의 또는 계약이다.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개최할 때 적용될 조건들을 제시한다.

따라서, 대회공고에는 선수가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데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선수들은 세일링 경기규칙의 변경 사항, 광고, 참가 자격 (승정원 체중 제한, 국적, 계측 또는 레이팅 증명서 등), 코스 유형, 대체 벌칙, 채점 방식 및 시상에 관한 정보와 함께 RRS 부칙 J1 에서 요구하는 기타 사항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대회공고를 검토할 때는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 게시된 RRS 부칙 J 와 대회공고 가이드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 표준 문구를 사용하여 모든 필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선수들이 문서 열람이나 요청서 (청문, 채점, 승정원 또는 장비 교체 등)를 제출하기 위하여 온라인 공식게시판이 포함된 대회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요건 (예를들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스마트폰 등)을 대회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플랫폼 세부정보는 나중에 명시할 수 있다.

하지만 철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회공고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박으로 인하여 항만이 봉쇄되거나 정부 당국에 의해 사용 가능한 무선 주파수가 변경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경우 선수들은 이러한 변경을 이해하고 수용하겠지만, 변경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선수로 하여금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는 변경은 구제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회를 관장하는 문서들 (대회공고, 범주지시서 또는 기타 문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상충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대회공고 및/또는 범주지시서를 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항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항의위원들도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에 범주지시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위원들은 검토 의견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항의위원장은 이를 취합·검토한 후 경기위원회에 보낸다. 항의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최종 문서를 검토하여, 대회 개시 전에 경기위원회에 변경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의 변경은 대회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 **D.1.4 항의위원회 위원들의 업무 할당**

적어도 여행 2 주 전에, 항의위원장은 항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연락하여 환영인사를 전하여야 한다. 항의위원장은 항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고, 첫 항의위원회 회의 일정을 결정하며, 위원들에게 임무를 할당하고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그래야 위원들이 미리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대회 준비도 잘 할 수 있다. 첫 항의위원회 회의를 위한 간단한 안건 초안은 경험이 적은 심판들에게 도움이 되며, 이는 논의될 주제를 미리 파악하게 하여, 해당 논의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회의 유형과 항의위원회의 규모에 따라 주어지는 임무는 달라진다. 대부분의 대회에서 공유 문서 저장소 (예: 드롭박스 또는 구글 드라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유용하며, 그 저장소에는 모든 해당 규칙, 각종 양식들, 항의위원회 위원의 업무, 항의위원회가 대회에서 사용하게 될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항의위원장은 각 위원들의 경험, 국제심판 가서 작성을 위한 요건, 현지 언어 사용 가능 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 위원들에게 업무 선호도를 묻고, 가능하다면 업무를 할당할 때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 **D.1.5 많은 대회에서의 일반적인 업무**

##### **대회공고와 범주지시서**

이 업무는 대회에 앞서 대회공고, 범주지시서 및 대회와 관련된 다른 문서들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회 중, 항의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에게 모든 수정 사항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직위원회와의 연락**

이 업무는 보통 항의위원장이 수행한다; 그러나, 현지 언어 사용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에게 이 업무를 할당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 **경기위원회와의 연락**

이 업무는 보통 매일 열리는 경기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고, 경기위원회의 의도를 항의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매 경기일 종료 후 항의마감시간을 어느 위원회(경기위원회, 항의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 등)가 게시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항의위원회가 경기위원회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을 경우, 이를 외교적이고 신중하게 전달하는 역할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업무는 때때로 경기운영요원 자격도 가지고 있는 항의위원에게 배정된다.

### **기술위원회와의 연락**

이 업무는 대회 중에 발생하는 계측 및 클래스규칙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기술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 **질의 답변**

이 업무는 항의위원회 내의 소위원회를 통하여, 항의위원회에 제출된 서면 질의를 접수하고, 공식게시판에 공지할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다.

### **청문 관리**

이 업무는 필요에 따라 청문요청 접수, 패널 구성, 청문과 중재 일정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관련 공지가 모두 규칙에 따라 게시되도록 하고, 순위 변동사항이 채점담당관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업무는 조직위원회에서 심판단 간사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수상 배치**

RRS 부칙 P가 적용될 경우, 날짜별로 수상심판 배치가 결정된다. 이것은 기존의 순환배정 방침, 각 심판의 경험 그리고 국제심판 자격기준 평가를 해야 하는 심판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각 구역별 책임 심판**

여러 클래스의 경기가 진행되는 대회에서, 각 구역별로 한 명의 심판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배정된 심판들의 수상 활동을 관리하고 그 구역의 운영요원과 의사 소통한다.

### **위반 담당**

RRS 부칙 P 가 적용될 경우, 이 업무는 수상에서의 RRS 42 위반 사항을 수집하고, 범주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게시하며, 순위 변동 사항을 채점담당관에게 전달한다.

### **보트와 무전기**

이 업무는 항의위원회에 배정된 수상 장비 (보트, 보트 키, 무전기, 수상안전 장비, 깃발, 계류 및 연료 보급 관련 사항)를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보통 현지 언어를 구사하고, 지역 관행을 잘 이해하는 그 지역 심판에게 배정하는 것이 좋다.

### **공식게시판**

이 업무는 대회 공식게시판 및 웹사이트에 규칙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항의위원회의 판결로 인한 채점 변경 사항이 성적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시스템 담당**

이 업무는 대회에서 사용되는 대회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있고 가장 익숙한 위원에게 배정된다. 여기에는 대회 관리 소프트웨어, 대회 웹사이트, 문서 저장소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등) 및 통신 시스템 (텔레그램, 왓츠앱 등)이 포함된다. 이 업무는 해당 시스템의 사용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시스템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그에 따라 다른 항의위원들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이다.

### **트래킹 시스템 (공식 비디오와 데이터 수집 포함)**

대회에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위원 중 1 명은 트래킹 시스템, 영상과 데이터 수집을 관리하는 팀과 협력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나 장점을 이해하는 것은, 해당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는 모든 청문회에서 필수적이다.

### **여행경비 정산**

이 업무는 향의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자신의 여행경비 청구서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확인하고, 비용 환급이 대회 기간 중에 이루어지거나, 또는 모든 위원에게 사전에 공지된 별도의 정산 절차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 **심판의 역량 강화**

선택적이지만 중요한 이 과제는 다양한 경험 수준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대규모 향의위원회 또는 국제심판단에서 특히 유용하다. 이 업무의 목적은 매일 비공식적인 규칙 설명 세션과 특정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주제의 예로는 RRS 42, 지원인력과 관련된 절차, 최근 변경된 규칙, 최근 Q&A 의 판결, 해당되는 경우 메달레이스 엄파이어링 등이 있다. 이런 세션들은 때때로 심판대학이라고 불리며, 그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입증되어 왔다. 향의위원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위하여 향의위원들에게 이러한 세션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 **사교, 점심 및 물**

이 업무는 심판들이 수상이나 육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점심과 물을 확보하고, 저녁 식사 일정을 조율하며, 참석이 요구되는 행사에 대하여 향의위원회가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 **미래의 대회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기록해 두기**

이 업무는 대회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의견, 범주지시서의 변경, 향의위원회 관행의 변화 및 기타 절차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대회 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향의위원장과 협력한다.

### **대회 후 보고서**

향의위원장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대회 기간 동안 수집된 관련 의견과 제안을 포함한 대회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직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의 목록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일부 업무는 어떤 대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통상적으로 모든 위원들은 최초의 선수 브리핑, 일일 향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청문회의 패널이 되고, 필요할 경우 중재에 임하여야 한다.

## **D.2 대회 중**

### **D.2.1 도착**

항의위원회 위원장은 대회 일정을 기준으로 조직위원회와 심판들의 도착 일정을 조율한다. 가능한 한 많은 위원이 경기 전 준비활동 기간에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늦어도 경기가 시작되기 전날까지는 모든 위원이 도착하여야 하며, 경기가 오후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날 오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선수, 대회 관계자, 경기운영요원과 심판들이 서로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항의위원회가 계측 또는 장비 검사 또는 범주지시서 그리고 기타 경기관련 문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모든 심판들이 일찍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항의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중 한 명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도착하여야 한다.

### D.2.2 시설과 장비

대회에서 항의위원회가 사용할 시설과 장비는 설치 및 점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 적절한 접수처, 또는 항의접수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적절한 청문실에 충분한 의자, 테이블, 조명, 항의 보트 모형, 비디오를 볼 수 있는 TV 화면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공식게시판은 범주지시서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식별되는지 확인한다.
- 공식게시판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선수들이 있는 구역에 해당 게시판을 표시하는 TV 화면이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 프린터, 전용 복사기 및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필요한 경우, 항의위원장, 경기위원회, 채점담당관, 웹 관리자 등과의 의사소통 체계가 합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적시에 게시되어야 하는 모든 공지가 공식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국가협회의 규정, 상고권 배제, 클래스규칙 변경에 대한 클래스 승인 등

- 인터넷 및 대회 관리 시스템의 접근 코드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 청문요청서 및 성적질의서가 항의접수처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심판정, 깃발, 무전기, 안전장비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계류, 열쇠 관리 및 급유 절차를 확인한다.

### D.2.3 항의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

항의위원회의 첫 회의의 목적은 심판들을 통합된 팀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팀 구축을 위한 이 첫 번째 단계는 각 위원에게 대회를 위하여 채택된 결정과 절차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있다.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범주지시서를 최종 점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후반 단계에서는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주지시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변경은 경기위원회가 시행하여야 한다. 이 첫 번째 만남에서의 외교적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경기위원회와 항의위원회 간의 협력적인 첫 경험은 대회 기간 동안 두 조직 간의 상호 존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각 심판에게 배정된 책임 분야가 명시된 업무 목록은 경기 전 회의의 안건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회의에서 각 위원은 자신에게 배정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수상으로 나가기 전에 모든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다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매일 그 내용을 항의위원회에 보고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많은 대회에서는 선수들이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식게시판을 포함한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대회에 따라 전통적인 형태의 공식게시판을 함께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두 게시판 중 어느 것이 효력을 가지는지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범주지시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수, 지원인력 및 기타 경기임원과의 추가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회의의 안건을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RRS 42 를 판결하기 위한 RRS 부칙 P 가 적용되는 경우, 심판단은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위반 사례, 클래스별 특별 규칙, 그리고 수상에서의 심판정 배치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항의위원회는 자체 운영방침에 대해서도 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보트를 항의할 것인지, 범주지시서에 의해 임의재량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 그 부과 기준 그리고 서로 다른 심판 패널 간의 구제 판결의 일관성 등을 논의한다.

모든 회의는 간결하게 핵심 위주로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결론을 포함하여야 한다. 합의된 조치는 끝까지 이행하여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 **D.2.4 경기위원장, 총괄수역장, 다른 요원들과의 경기 전 회의**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항의위원회와 경기위원장, 총괄수역장, 기술위원장, 안전책임자 및 기타 주요 대회 관계자 간의 회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회의의 목적은 협력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항의마감시간 공지 방법 및 담당자)와 같은 일부 절차적 사항을 정리하는 데 있다. 또한 항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그 대표자는 기술위원회와 만나, 사용될 경우, 젖은 의류 검사 장비와 장비 계측 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항의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경기위원회와 소통하여야 한다. 항의위원장은 총괄수역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경기위원회와 소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선수들이 상반된 지시를 받는 것을 피하고, 구제요청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D.2.5 선수 브리핑**

많은 대회들이 선수 브리핑을 실시한다. 선수 브리핑의 주요 목적은 경기위원회, 기술위원회, 항의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들을 선수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선수들이, 대회 기간 중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조직위원회, 경기위원회 또는 항의위원회의 누구나 이 선수 브리핑의 의장이 될 수 있다. 선수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선수 브리핑은 영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수 브리핑의 의장은 영어에 능숙하여야 하며, 다국어 그룹과의 대화에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항의위원회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에 제시되는 사항들은 친절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 심판들 소개
- 항의위원회는 선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
- RRS 부칙 P <RRS 42 를 위한 특별 절차>를 적용하는 대회라면, 이를 언급한다. 선수들에게 항의위원회의 역할은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상기시킬 것.

- 특정 구역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항의위원회가 그 구역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지 설명한다. 항의위원회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규칙을 준수하는 선수들은 안심할 수 있다.

청소년 또는 경험이 적은 선수들에게 규칙을 어겼을 경우, 항의를 받든 안 받든, 즉시 벌칙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또한 그들에게 RRS <제 2 장의 규칙> 위반 또는 마크를 접촉하였을 때, RRS 44 에 따른 벌칙 이행에 대하여 상기시킨다. 보트 사이의 충돌 후, 어느 보트도 벌칙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한쪽 또는 양쪽 보트 모두 항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선수들은 종종 범주지시서 또는 경기 진행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럴 경우, 그 답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항의위원회는 선수들의 질문에 빨리 답변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대체로 처음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경우가 많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선수들에게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의위원회는 이 질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 또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공식게시판에 게시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답변도 공식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D.2.6 지원인력과의 소통**

모든 지원인력을 존중하여야 한다. 코치와 팀 리더는 대체로 전문가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올림픽 팀 코치가 1 년에 4 개 또는 5 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대회 중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직위원회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매일 아침 지원인력과의 회의를 주선하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다면, 항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대표자가 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의는 선수, 경기운영진 그리고 항의위원회 사이의 비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제공하지만, 공식게시판에 게시되는 공식적인 공지사항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회의는 선수들이 직접 또는 그들의 코치를 통하여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코치와의 토론은 문제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토론을 통하여, 코치는 스포츠맨십 위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행동을 선수가 수정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 **D.2.7 미디어 (언론)와의 소통**

미디어는 모든 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론인 그리고 일반 대중과의 소통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우리 스포츠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경기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가 제공되어야 한다. 항의위원회를 대표하여 언론과 소통하는 역할은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수행한다.

RRS 69 에 따른 혐의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급적 대회 전에 조사관을 임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관은 어떤 이해 상충도 없어야 하므로, 그의 임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정행위 청문을 위한 패널의 최소 요건이 3 명이므로, 필요한 경우, 심판단 중 한 명이 조사관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고의 원인이 된 사안, 관련자의 연령, 성별, 사용 언어 및 국적, 그리고 잔여 항의위원회 구성의 균형 등과 같은 요소들이 조사관 지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문에서 사건을 제시하는 조사관은 <정의>에 따라 당사자가 되며, 이후 패널의 논의나 판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본 매뉴얼의 RRS 2 와 69 의 관련 항목 및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 게시된 <부정행위 지침> (Guidance on Misconduct)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웹사이트에서 "misconduct"를 검색한 후 제출 (submit) 버튼을 클릭하고, "Documents"를 선택하면 된다.)

### **D.2.8 조사관 임명, RRS 69 관련 혐의**

RRS 69 에 따른 혐의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급적 대회 전에 조사관을 임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관은 어떤 이해 상충도 없어야 하므로, 그의 임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정행위 청문을 위한 패널의 최소 요건이 3 명이므로, 필요한 경우, 심판단 중 한 명이 조사관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고의 원인이 된 사안, 관련자의 연령, 성별, 사용 언어 및 국적, 그리고 잔여 항의위원회 구성의 균형 등과 같은 요소들이 조사관 지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문에서 사건을 제시하는 조사관은 <정의>에 따라 당사자가 되며, 이후 패널의 논의나 판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본 매뉴얼의 RRS 2 와 69 의 관련 항목 및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 게시된 <부정행위 지침> (Guidance on Misconduct)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웹사이트에서 "misconduct"를 검색한 후 제출 (submit) 버튼을 클릭하고, "Documents"를 선택하면 된다.)

## E. 대회에서 항의위원회의 행정 업무

### E.1 청문 관리

대부분의 대회에서 청문요청서의 접수, 청문 일정 잡기, 선수와 지원인력으로부터의 질의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항의접수처가 설치된다. 이 접수처는 지정된 심판위원이 총괄하며, 임명된 경우 심판단 간사와 함께 운영한다.

항의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심판단 간사라 불리며, 이 용어는 E 절 전체에 사용된다. 훈련 중인 그 지역 심판이 간사로 임명될 수 있다. 현지 언어를 구사하고, 조직력이 뛰어나며 항의위원회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사람은 위원회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

현재 많은 대회에서는 심판 청문과 공지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대회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모든 항의위원회 위원과 심판단 간사는 그 시스템의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적으로 항의접수처는 선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문실 옆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떤 대회에서는 선수들이 젖은 상태로 방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항의접수처를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청문실에 테이블, 충분한 의자, 조명 및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할 것.
- 공식게시판이 범주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항의위원회 공지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있고 다른 위원회와 명확하게 식별되는지 확인할 것.
- 프린터, 전용 복사기 및 WI-FI 접속 코드를 이용한 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 항의위원장, 경기위원회, 채점담당관, 그리고 기타 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 체계가 사전에 합의되어 있으며, 실제로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향의위원회 위원 간에 (필요한 경우 다른 운영요원 포함) WhatsApp 그룹과 같은 메시지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상고권의 거부 또는 국제심판단의 구성에 대한 문서가 있는 경우, 그 문서를 공식게시판에 게시할 것.
- 청문요청서, 성적질의서, 벌칙 수락 서식이 향의접수처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 각 청문실에 대회공고, 범주지시서, 모든 변경 공지 그리고 표준벌칙, 장비, 안전, 미디어 규정, 청문점검표, 옴저버 양식 등 관련 문서가 담긴 서류철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이 서류철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지 매일 확인할 것.

향의위원회는 드롭박스 또는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대회문서 저장소를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모든 관련 RRS 과 문서, 향의위원회 위원들의 도착 및 출발 목록, 그들의 식이 요구사항과 음식의 제한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대회 이후, 판결사례를 보관하기 위한 폴더가 포함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정보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이 범주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향의접수처는 매일의 향의마감시간과 당일 적용된 대체 벌칙 목록을 향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E.2 일일 행정 업무**

향의위원회의 각 위원들은 매일 범주지시서나 기타 RRS 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통보 받아야 한다. 공식게시판의 향의위원회 공지 부분은 최신 정보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승정원 교체와 육상올리기 신청은 경기위원회에서 처리하지만 범주지시서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향의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할 수 있다.

향의위원회의 판결에 따른 성적 변경이 채점 결과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 **E.3 청문요청서 접수**

향의위원회는 서면, 온라인 또는 두 방식으로 청문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완전히 정립해 두어야 한다.

항의접수처는 청문요청이 어떤 형식의 문서로 접수되든, 그리고 항의마감시간 이후에 접수되었더라도, 항상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절대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항의위원회만이 청문을 통하여 그 요청의 유효성을 결정할 수 있다.

청문요청이 서면으로 접수되면, 청문요청서에는 번호, 날짜, 시간, 항의마감시간, 그리고 이를 접수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정보를 청문요청서와 요청서 수령 일지에 기록한다.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 중이고 제출된 서면 양식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그 시스템에서 사건 번호가 부여되므로, 온라인으로 사건이 게시될 때 부여된 사건 번호를 서면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온라인 대회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청문요청은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다. 시스템이 해당 요청에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는지 확인하고,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추가한다.

대체 벌칙 이행 목록을 확인하여 청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벌칙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그 서식을 청문요청서에 추가한다.

당일 접수된 성적에 대한 질의 중 청문 요청과 연관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이를 청문요청서에 추가한다.

선수 또는 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모든 보고는 구두 보고 또는 서면 제출에 관계없이 즉시 항의위원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보고는 반드시 접수 시간과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 **E.4 청문요청서 기록 및 사본 생성**

### **E.4.1 서면 청문요청서 양식을 사용하는 대회**

각 청문 관련 서류는 판결사례 봉투 (Case envelope)에 보관하여야 하며, 투명 서류철이나 앞면에 항의 세부사항이 기재된 종이 봉투를 사용한다. 투명 서류철을 사용하는 것이 더 신속한데, 이는 봉투 겉표지에 해당 정보를 다시 옮겨 적을 필요가 없으며, 기재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각 요청서의 사본은 청문 패널의 각 위원들에게 한 부씩, 그리고 각 당사자들에게 한 부씩 준비되어야 한다. 원본은 파일로 보관한다.

청문요청이 접수되면 가능한 한 빨리 공식게시판에 청문 일정표를 게시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이를 알린다. 게시 내용에는 클래스, 경기 번호, 항의자와 피항의자 또는 구제요청자와 관련 위원회를 포함하여야 한다. 청문의 시간과 장소는 청문의 진행 및 완료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갱신될 수 있다.

#### **E4.2 온라인 청문요청이 가능한 대회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회**

전자식 대회관리 시스템에는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 따라서 청문요청 접수 방식, 공식게시판 게시 방법, 청문요청 및 청문 시간·장소에 대한 당사자 통보 방식에 대하여 해당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문요청은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청문요청과 함께 비디오 증거와 같은 첨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작성된 청문요청에는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다. 시스템에 따라 사건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도 있으며, 다른 시스템에서는 사건 번호를 수동으로 부여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시스템은 청문요청을 자동으로 게시할 수도 있고, 온라인 게시를 위하여 승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의도한 내용이 정확히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온라인 공식게시판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항의접수처에 있는 심판과 청문을 기다리는 선수들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공식게시판을 표시하는 TV 화면을 비치한다.

일부 시스템은 청문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청문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보하며, 동시에 청문의 시간과 장소도 알려준다. 또한 각 당사자가 해당 청문요청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대회에서 청문요청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일부 청문요청서는 종이 양식으로 접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요청서는 다른 종이 요청서와 동일하게 접수 시간을 기재하여 처리한다. 그 다음 클래스, 경기 번호, 항의자 또는 요청자, 피항의자 또는 피요청자, 접수 시간 등의 세부 사항을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여 사건 번호가 순서대로 부여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청문요청서를 스캔하여 대회관리 시스템의 해당 청문요청에 문서로 첨부한다.

#### **E.5 중재 대상이 되는 항의**

이 매뉴얼의 중재 H 절에서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 항의일 경우에, 그 절차를 설명한다. 보트 간의 항의가 항의접수처에 접수되면, 해당 항의는 접수 처리 후 중재 심판에게 전달되며, 중재

심판은 그 항의가 중재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중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재 심판은 중재 절차 (RRS 부칙 T)에 따라 진행한다. 청문일정에 대한 공고는 즉시 공식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재와, 필요한 경우 청문이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중재회의에 참석한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경기-후 벌칙을 받겠다고 결정하면, 공식게시판의 항의결과표에 이 정보를 기록하고, 채점담당관에게 이를 알린다. 중재 심판이 항의 철회를 허가하면, 청문일정 공고에 항의가 철회되었음을 알리고, 청문은 열리지 않는다.

중재회의가 진행되지 않거나 항의가 철회되지 않은 경우,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 **E.6 사건에서의 벌칙 수락**

항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트는 항의마감시간 이내에 임의재량 벌칙의 대상이 되는 RRS 을 위반하였음을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은 필요하지 않다. 항의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를 검토하여 적절한 벌칙을 결정한다.

항의가 접수된 경우, 당사자는 청문에 앞서 벌칙을 수락할 수 있다. 심판은 해당 사건에서 보트의 손상이나 또는 선수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상해나 중대한 손상이 없었다면, 해당 보트는 범주지시서에 규정된 대체 벌칙을 받거나 해당 경기에서 리타이어할 수 있다. 중대한 손상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유일하게 적용 가능한 벌칙은 해당 경기에서 리타이어하는 것이다. 심판은 해당 보트의 대표자에게 벌칙 수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청한다.

벌칙을 수락하는 모든 항의는 반드시 항의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이를 항의자에게 알리고 항의 철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 **E.7 청문요청 철회**

청문요청은 청문 이전에 항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철회될 수 있다. RRS 부칙 T 중재가 적용되는 경우, 중재심판은 항의위원회를 대신하여 철회를 허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항의위원회가 철회 요청을 결정하여야 한다. 범주지시서는 이 임무를 한 명의 항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RRS 63.2 를 변경할 수 있다.

## **E.8 청문일정 잡기**

청문은 가능한 한 빨리 공식게시판에 일정이 게시되어야 한다. 공고는 항의마감시간 전에 게시될 수 있다. 이후에 제출된 청문요청은 청문 공지를 위한 마감시간 이후에 게시될 수 있다.

구제요청이 접수되면, 경기위원회와 기술위원회에 즉시 알린다. 이는 청문 전에 해당 요청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제요청이 사실상 성적에 대한 질의인 경우, 청문 일정을 잡고, 청문 전에 경기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요원과 해당 보트 대표 간의 미팅을 주선한다.

가능한 한 빨리 당사자들에게 예정된 청문 시간을 통보한다. 항의마감시간이 끝나기 이전에 첫 청문이 예정된 경우, 항의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청문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지 확인한다. 처음 몇 건의 청문은 20 분 간격으로, 그 다음에는 각 청문 패널마다 30 분 간격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처음 한두 건의 청문요청이 무효인 경우에도 일정 지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초기 청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남은 청문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

항의접수처는 가장 효율적인 청문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경기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가 당사자인 청문은, 해당 위원회가 육상으로 복귀하는 대로 연속하여 청문할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한다. 대회의 마지막 날에는, 입상 가능성이 있는 보트가 관련된 청문을 우선 배정하여 가능한 한 빨리 시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항의와 맞항의가 있거나, 같은 사건에서 서로 다른 보트가 항의 또는 구제요청을 한 경우, 이를 하나의 청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는다.

일부 대회관리 시스템은 청문 당사자들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채팅시스템 (WhatsApp, Telegram 등)을 통하여 청문 요청, 청문 일정 및 변경사항을 알린다.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정확하다면 선수들과의 의사소통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RRS 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항의접수처가 참가 등록 정보에 포함된 모든 선수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은 바람직한 관행이다. 청문 요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알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대회 일반 공지용 온라인 채팅 그룹에 메시지를 보낸다.

목표는 모든 청문이 종료될 때까지 항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선수들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청문이 일정보다 늦어지면, 재조정된 일정을 게시하여 청문 당사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식사를 하러 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 E.9 청문

항의위원회가 청문을 진행할 준비가 되면, 일반적으로 각 보트 당 한 명의 당사자를 부르고, 필요할 경우, 통역을 둘 수 있다.

청문을 시작하기 전에 패널위원장은 당사자가 증인을 부를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증인이 청문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증인이 증언하러 청문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청문 진행 과정을 들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옵저버를 허용할 경우, 옵저버에 대한 RRS 을 상기시키고, 이름을 기록하게 한다.

사건에서 어느 당사자가 벌칙 이행을 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어느 당사자라도 청문요청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청문요청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대회인 경우, 각 청문을 마친 다음, 판결을 기록하고 항의서 원본, 항의위원회 위원의 메모와 청문 중 접수된 기타 서류를 보관한다. 항의접수처는 각 청문을 마친 즉시 청문 결과와 성적 변경을 채점담당관에게 전달한다. 또한 청문의 결과를 공식게시판에 게시한다.

대회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회인 경우, 판결은 일반적으로 자동적으로 온라인에 게시되며, 성적 변경도 채점담당관에서 자동으로 전달된다. 이 경우, 시스템은 많은 사람이 열람 가능하므로 게시되는 판결문에 어느 정도의 세부 내용이 담길지를 고려하도록 한다. 보통 간결한 판결문과 전체 판결문 등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대회의 마지막 날에는, 각 청문의 항의위원회 판결에 대한 재청문 또는 구제요청의 제한시간은 청문 결과가 게시된 후 30 분이다. 이러한 판결과 재청문 그리고 구제에 대한 각 마감시간을 게시 날짜와 시간을 날인하여 공식게시판에 즉시 게시한다.

항의접수처는 청문 당사자 중 요청하는 자가 있을 경우, 전체 서면 판결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청문요청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대회인 경우, 대회의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 판결문은 다음 날 받을 수 있다. 대회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전체 판결문은 자동으로

온라인에 게시된다. 간결한 판결문만 게시되는 경우, 요청이 있을 때 이메일로 당사자에게 전체 판결문을 송부할 수 있다.

## **E.10 마지막 경기 후**

항의접수처는 항의위원장과 협의하여 모든 항의와 그 서류들을 참고용으로 주최 클럽에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자료들은 대회 후 최소 6개월 동안은 보관되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사건 파일을 스캔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도 있다.

## F. 항의 청문

### F.1 일반 원칙, 관할권

RRS 에 정의된 청문에는 항의 청문, 구제 청문, 지원인력의 RRS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청문, 부정행위에 대한 청문 등 4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장에서는 RRS 제 5 장의 RRS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청문의 시작, 진행 및 판결에 대한 RRS 과 절차에 대해서 논의한다. RRS 2 와 69 에 따른 부정행위는 이 매뉴얼의 G 절 <RRS 2 와 RRS 69>에서 다룬다.

항의위원회의 관할권은 현행 RRS 에 정의된 RRS 에 의하여 제한된다. 정부기관, 항만관리소 또는 해운항만청의 법규에 대한 보트의 위반은, 해당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대회공고나 범주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항의위원회의 관할이 아니다.

RRS 6 에는 선수, 선주 및 지원인력이 준수하여야 하는 월드세일링 규정이 나열되어 있다. 이 규정들은 RRS 의 지위를 갖는다. 위반에 대한 항의를 진행하기 전에 각 규정 또는 코드를 확인하여야 한다.

RRS 부칙 M <항의위원회에 대한 권고>는 청문을 위한 표준 절차와 고려 사항을 제공한다.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슈퍼요트 그리고 무선세일링 경기에 대해서, 항의위원회는 항의, 구제와 청문에 관한 RRS 을 수정한 해당 RRS 부칙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청문도 있다. RRS 부칙 N2 에 따라 국제심판단은 대회의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직위원회가 항의나 구제요청의 결과가 아닌 참가자격 또는 계측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항의위원회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요청은 청문에서 선수, 운영요원 또는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 F.1.1 청문 준비

청문실의 배치는 사용 가능한 공간과 가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항의위원회가 출입문을 마주보는 테이블 쪽에 앉고, 패널위원장은 중앙에 앉는다. 항의위원회 위원들은 명찰이나 명패로 식별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위원회의 맞은편에 앉는다. 증언을 하는 증인은 당사자들 사이에 앉는다.

청문실에서는 음주, 흡연 또는 전자담배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휴대 전화와 녹음 장치는 전원을 꺼야 한다. 무알코올 음료, 커피 제공에 대한 방침은 항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해진다.

항의위원회 위원들은 대회 및 그 개최지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조직위원회가 대회 복장을 제공하는 경우, 항의위원회가 운영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청문 시 이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항의위원회와 경기위원회가 동일한 대회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경기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 또는 임무의 누락을 주장하는 보트에 대한 구제 청문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항의위원회는 청문 전에 청문요청서를 검토하여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고 관련 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해 상충이 있는 위원은 이를 표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해당 위원은 청문 패널에서 교체되어야 한다.

청문을 시작하기 전에, 각 당사자들이 청문에서 다루어질 항의서, 구제요청서 또는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준비할 합리적인 시간을 가졌는지, 그리고 청문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준비 시간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항의마감시간 종료 이후, 30 분 동안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모든 공지가 일정대로 이루어졌다면, 패널위원장은 그 요청 당사자에게 10 분 정도의 추가 시간만을 허용할 수도 있다. 항의위원회가 예정시간보다 이르게 청문을 시작하려는 경우라면, 패널위원장은 피항의자가 청문에 대한 방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줄 수도 있다. 또한 당사자들에게 증인들이 청문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도록 요청한다.

청문에서는,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사용한다. <청문 체크리스트>는 월드세일링 웹사이트 <국제심판>절에 있는 <문서보관함>에서 찾을 수 있다.

### **F.1.2 여러 요청에 대한 동시 청문**

항의위원회는 같은 사건이거나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사건들로부터 발생한 청문들을 하나로 결합하여 청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항의와 맞항의 또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여러 항의, 또는 같은 사안에 대한 복수의 구제요청이 이에 해당한다. 항의나 구제요청이 같은 사건인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사건으로 가정하고, 모든 당사자와 함께 청문을 시작한다. 적어도 하나의 요청이 유효하다면, 청문요청서에 기재된 당사자들과 함께 청문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 F.1.3 당사자의 권리, RRS 63.1

청문이 진행되는 동안, 그 보트의 대표자가 당사자로 참석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다. 청문에서 당사자란 RRS <정의>에 정의된 용어이며, 청문의 유형에 따라 항의자, 피항의자, 구제를 요청하는 보트 또는 구제가 요청된 보트, 경기위원회, 기술위원회, RRS 69 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는 사람, 또는 지원인력 그리고 해당 지원인력이 지원하는 보트가 될 수 있다. 항의위원회는 결코 당사자가 아니다.

항의가 제 2 장, 제 3 장 또는 제 4 장의 RRS 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항의위원회가 달리 판단할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트들의 대표자는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승선해 있어야만 한다 (RRS 63.1(a)(4)).

당사자가 청문 시간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항의위원회는 어느 범위까지 이를 수용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청문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공지가 적절히 게시되었다면, 그 불출석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문은 그 당사자의 대표 없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문 도중 해당 당사자가 도착한 경우, 불가피하게 늦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항의위원회는 청문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해당 당사자가 합당한 사유없이 늦게 도착하였다면, 항의위원회는 해당 당사자가 현재 진행 단계에서 청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당사자가 놓친 증거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항의위원회는 나중에 제출된 증거로 인하여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항의 또는 구제요청의 유효성 문제를 다시 검토할 필요는 없다. 늦게 도착한 당사자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도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부를 수 있다.

당사자 중 누구도 청문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항의위원회는 청문 시간이나 장소 게시에 오류가 있었는지부터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에게 적절히 공지가 이루어졌다면, 항의위원회는 당사자 없이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면, 항의위원회는 재청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F.1.4 통역

영어를 능숙하지 않은 당사자도 영어로 이해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의위원회 위원들은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해서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영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경우, 일단 통역없이 청문을 시작하되 통역을 참석시킬 준비를 한다. 항의위원회의 위원이 통역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코치나 팀원만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경우, 패널위원장은 그 통역이 해당 당사자에게 부당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통역자에게 그 역할이 질문을 명확히 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역을 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 **F.1.5 항의 또는 구제요청의 철회, RRS 63.2(a)**

일단 청문 요청이 접수된 이후, 항의 또는 구제요청을 철회하려는 당사자의 요청은 항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항의위원회는 철회를 요청하는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의자가 강요를 받고 있거나, 항의자 자신이 RRS 2 공정한 범주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의 철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 **F.2 항의, RRS 60**

### **F.2.1 항의서의 내용, RRS 60.3(a)**

항의는 범주지시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항의서에는 항의자와 피항의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이는 세일 번호 또는 보트의 이름이다. 항의자가 보트를 잘못 명시한 경우, 예를 들어 세일번호 51 을 항의하려고 의도하였지만 15 를 기재한 경우, 사건에 관여되지 않았던 51 을 상대로 한 항의는 인정되기 어렵다. 만약 항의자가 항의마감시간 이후, 15 를 항의하기로 결정하더라도 항의마감시간을 연장할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항의서에는 피항의자가 사건을 파악하고 혐의를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사건이 명시되지 않으면, 그 항의는 무효이다.

### **F.2.2 항의의 유효성, RRS 60.4**

항의위원회는 청문을 진행하기 전에 항의의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항의가 유효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위원들이 패널위원장에게 동의의 뜻으로 간단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항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항의의 유효성에 대하여 상충되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항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동안 당사자들과 옹저버에게 나가 있도록 요청한다. 항의위원회의 결정은 증거의 우월성에 기초한다.

항의가 유효하면, 청문을 진행한다. 항의가 유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항의위원회는 무효를 선언하고 청문을 종결한다. 항의가 무효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사실과 그 판결을 판결문에 기록하여야 한다.

### **F.2.3 경기수역에서 보트의 항의, RRS 60.2**

최초의 적절한 기회에 프로테스트 (Protest)라고 소리지르는 요건에 있어서 '적절한' 이라는 단어를 해석한 월드세일링 판결사례가 현재는 없다. 심판은 상식을 동원하여 '적절한'이 뜻하는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이 RRS 에는 "즉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소리지르기 하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피항의자가 소리지르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할 경우, 이에 대한 증인으로서, 보트에 동승한 승정원에게 증언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단순히 항의자의 의견만으로 항의가 유효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항의자가 즉시 "항의"라고 소리지르기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항의위원회는 이를 좀 더 심도있게 조사해야 할 수도 있다. 소리지르기를 하였지만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항의위원회는 질문을 통하여 소리지르기가 RRS 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실을 확정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소리지르기의 크기, 소리지르기의 시점, 소리지를 때 사용한 용어, 그리고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양측 당사자 모두에게 유효성 요건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요구되는 경우, 보트는 사건 후 최초의 합리적인 기회에 빨간기를 잘 보이게 올린 다음, 더 이상 경기 중이 아닐 때까지 올려두어야 한다. 항의기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깃발로 보여야 한다 (월드세일링 판결사례 72). RRS 86 에서 허용된 것처럼 대회공고 또는 범주지시서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6 미터 미만의 보트에서는 항의기가 필요하지 않다.

항의위원회는 증거를 검토하고, 증거의 우월성에 따라 항의의 유효성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한다.

사건 당시 항의하려는 보트가 소리지르거나 깃발을 게양해야 하는 요건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사건 당시 피항의자가 소리지르기를 들을 수 있는 거리 밖에 있을 경우, 다른 하나는 사건이 코스 범주에 대한 실책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항의자는 여전히 최초의 합리적인 기회에 상대 보트에게 항의 의사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다른 예외는 사건 발생 당시 항의하는 보트 입장에서,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어느 쪽 승정원이든 위험에 처했거나 상해 또는 중대한 손상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이다. 이 경우, 항의하려는 보트는 항의마감시간 이내에 상대 보트에게 항의 의사를 알리는 시도를 하여야 한다.

#### **F.2.4 상해나 손상과 관련된 항의의 유효성**

항의가 무효이더라도 그 사건으로 인해 부상이나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항의위원회는 RRS 60.4(c)(1)에 따라 항의를 제기하고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항의위원회는 보트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해를 입은 선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청문 이후에 항의위원회가 그 손상이 심각하지 않았거나 선수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항의위원회는 해당 항의에 대한 재청문을 하여 해당 항의가 무효였음을 결정함으로써 그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 **F.2.5 경기수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항의의 유효성**

경기수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항의인 경우, 항의자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요건은 최초의 합리적인 기회에 자신의 항의 의사를 피항의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 **F.2.6 항의 제출 마감시간**

RRS 60.3 은 항의접수처에 항의를 제출하는데 두 가지 다른 마감시간을 규정한다.

- 경기수역에서 목격한 사건에 대한 항의의 경우, 항의마감시간은 그 경기의 마지막 보트가 피니시한 후 두 시간;
- 경기수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항의의 경우, 항의마감시간은 항의자가 관련 정보를 알게된 후 두 시간.

범주지시서에 이와 다른 항의마감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항의서는 대회 본부 (또는 범주지시서에 명시된 다른 방법)로 제출되어야 한다. 항의서는 경기위원회 또는 항의위원회를 대리하는 운영요원이 이를 접수하였을 때, 또는 온라인 플랫폼이 이를 접수하였을 때 제출된 것으로 본다. 항의가 항의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되었더라도 항의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서면 항의서의 경우에는 첫 페이지에 접수 시간을 기록한다.

항의가 늦게 제출된 경우, 항의위원회는 청문에서 항의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이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항의위원회는 항의마감시간을 연장하고,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판결문에 기록하여야 한다.

### **F.2.7 경기위원회, 기술위원회 또는 항의위원회에 의한 항의**

경기위원회, 기술위원회 또는 항의위원회가 제기하는 항의는 모든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경기종료 후 항의마감시간 이내에 해당 보트에게 항의할 의사를 알려야 한다. 이는 구두로 알리거나 공식게시판에 항의 공지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항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항의자, 피항의자, 그리고 사건을 명시하여 항의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제요청 또는 무효가 된 항의 또는 이해 상충에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신고를 근거로 한 위원회의 항의는 무효이다. 경기수역에서 목격한 사건 또는 기타 사건에 대한 항의는 해당 마감시간 이내에 대회본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경기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의 대표자는 항의하는 보트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한다. 청문의 당사자로서 대표자는 증거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하고, 증인을 부를 수 있다. 그런 다음 그 대표자는 항의위원회가 판결을 내리는 동안 청문실 밖에서 기다린다.

클래스규칙과 관련된 항의는 보트, 경기위원회, 항의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다. 클래스협회, 국가협회 또는 계측을 담당한 계측관은 항의할 권리가 없다.

기술위원회는 대회 전 검사 또는 경기 후 장비검사에서 발생한 계측 문제에 근거하여 항의할 수 있다.

클래스규칙은 보트를 계측하거나 레이팅 선정 방법, 또는 그 둘 모두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조항, 선주의 책임, 그리고 경기 중 금지사항이

포함되고, 그 외에 보트의 계측에 대한 세부사항도 포함된다. 클래스협회의 규칙과 해당 대회 규칙이 해당 클래스를 통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이 대회 중 발생한 공차에 대하여 청문 없이 해당 보트를 실격시키거나 다른 벌칙을 부과할 권한을 클래스협회에 부여한 것은 아니다.

항의자가 항의위원회인 경우, 항의위원회 위원 중 1 명이 증거를 제시하고, 해당 항의 청문의 패널 위원으로는 참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의위원회 위원이 사건을 목격한 경우, RRS 63.4(d)에 따라 해당 청문에 참석한 당사자들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 위원은 증인으로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 증거는 목격한 것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규칙위반 여부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이해 상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제시한 항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판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은 판결로 얻거나 잃을 것이 없는 독립적인 기구의 구성원이다. 그러나, 그들은 해당 청문의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RRS 부칙 N1.6 은 3 명의 위원이 남아있고, 그 3 명의 항의위원 중 최소 2 명이 국제심판이라면, 그 항의위원회는 국제심판단으로 적법하게 구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F.3 구제, RRS 61**

### **F.3.1 누가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가?**

보트는 자신 또는 다른 보트에 대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위원회와 기술위원회는 보트 또는 보트들에 대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항의위원회는 보트 또는 보트들에 대한 구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청문을 소집할 수 있다. 이는 무효가 된 항의나 구제요청을 포함하여 이해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당사자로부터든 또는 어떤 출처로부터든 받은 보고나 정보를 근거로 할 수 있다.

### **F.3.2 구제청문 당사자**

정의에서 <당사자>는, 구제를 요청하는 보트, 경기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에 의하여 구제가 요청된 보트, 또는 항의위원회에 의하여 구제가 고려되고 있는 보트가 포함된다. 이 경우, 구제가 고려되고 있는 모든 보트는 청문의 모든 과정에 대표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이처럼 많은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문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모든 당사자가 참석할 수 있는 충분히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것은 보트 계류장의 넓고 조용한 구석자리 같은 야외 공간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항의위원회 위원장은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이미 제시된 증거를 반복하지는 말아달라고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을 하면 그 결과로 보통 처음 몇 명의 당사자가 구제를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후 대부분의 다른 당사자들은 “나도 같은 증거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다.

항의위원회가 구제를 주기로 결정하고, 어떤 구제를 줄 것인지 결정한 후, 구제를 요청한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보트들도 구제받을 자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청문을 중지하고, 구제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보트에게 이를 통보한 다음, 새로운 청문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제 청문에서는 구제 청문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만큼 적절한 공지사항을 공식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청문일정을 게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라면, 모든 당사자들에게 전화, 이메일 또는 SMS 를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 청문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은 모든 증거를 들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청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 **F.3.3 경기 시작 전 구제요청**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된 모든 구제요청은 첫 번째 합리적인 기회에 청문하여야 한다. 이런 구제요청은 조직위원회나 경기위원회에 의한 부적절한 조치 또는 부적절한 임무의 누락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예로는 대회공고 또는 범주지시서에서 제기된 쟁점, 계측 절차, 선수의 자격 또는 선수의 배제 등이 있다.

### **F.3.4 구제요청의 유효성, RRS 61.2**

유효한 구제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작성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항의기는 필요하지 않으며, 구제를 요청하는 보트가 경기위원회에 이를 알릴 의무도 없다.

조직위원회, 경기위원회, 항의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에 대한 보트의 항의는, RRS 61.2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제요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RRS 61.2(b)는 구제요청을 제출할 때 세 가지 다른 제출 마감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 경기수역에서의 사건을 근거한 경우, 항의마감시간 이내 또는 사건 후 2 시간 이내 (그 중 낮은 시간을 기준으로);
- 예정된 경기일정의 마지막 날, 항의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구제요청의 경우, 판결이 게시된 후 30 분 이내, 또는;
- 그 외 모든 다른 구제요청이라면,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사건의 시점은 각 구제요청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성적에 대한 오류, 또는 보트가 OCS 또는 이와 유사한 성적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결과가 게시된 때가 사건의 시점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이때 관련 정보가 당사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구제요청이 마감시간을 넘겨 접수된 경우, 항의위원회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마감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F.4 청문의 진행, RRS 63**

### **F.4.1 청문 시작**

이제 청문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청문은 정중하면서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증거가 진지하게 고려되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항의위원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되, 항상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RRS 부칙 T가 적용되는 경우, 지금이 <경기-후 벌칙>을 받을 수 있는 최종시간이라는 것을 당사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다음 패널위원장은 청문이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RRS 부칙 M <항의위원회에 대한 권고>는 청문을 위한 표준 절차와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유효성이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청문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RRS 63.4(a)에 따라 청문이 종료되어야 한다.

### **F.4.2**

월드세일링의 방침은 가능하다면 옹저버들에게 청문을 개방하는 것이다. 항의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옹저버들에게 청문을 개방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공개 청문은 청문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항의위원회 위원 중 누구라도 옹저버가 참관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면, 청문을 옹저버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사건과 관련없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감동시키거나 수용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집중해서) 당사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옹저버가 없는 비공개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의위원회는 그 사유가 제시된 후, 그 요청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옹저버에는 다른 선수, 부모, 코치, 클럽 회원, 언론 혹은 미디어와 같이 그 청문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다.

옹저버는 증인으로 나서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린다. 옹저버는 침묵을 유지하여야 하며, 청문의 어떠한 부분도 녹음하거나 촬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항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에는 청문실 밖으로 나가 있어야 한다.

#### **F.4.3 이해 상충, RRS 63.3**

항의위원들을 소개할 때, 항의위원회 위원인 심판은 발생 가능한 모든 이해 상충을 당사자들에게 표명하여야 한다. 국적, 클럽 회원, 또는 과거 항의청문 결과는 이해 상충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후, 패널위원장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항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묻는다.

심판이 이해 상충을 선언하였고, 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당사자들 모두 그 심판이 항의위원회에 남는 것에 동의할 경우, 해당 위원은 항의위원회에 남을 수 있다.

청문 당사자가 이해 상충을 이유로 특정 심판의 참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패널위원장은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

일단 그 이유가 제시되면, 청문 당사자들과 해당 심판은 청문실에서 나가도록 요청한다. 항의위원회는 다음 내용을 검토한다:

- (1) 이의 제기가 이해 상충의 정의에 부합하는가?

(2) 이해 상충이 중대한가?

항의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면:

(1) 이의 제기의 사유가 이해 상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2) 이해 상충이 중대하지 않다면,

해당 심판은 항의위원회 위원으로 남는다.

항의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면

(1) 이해 상충의 정도가 중대하고,

(2) 청문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심판은 그 청문의 항의위원회에 남을 수 없다. (항의위원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제요청이 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 또는 부적절한 임무의 누락을 주장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청문의 항의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월드세일링의 주요 대회 또는 대회 개최지의 국가협회가 규정하는 기타 대회에 대해서는 RRS 63.3(c)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의>의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항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F.4.4 증거 수집, RRS 63.4**

항의 또는 구제요청이 유효하다고 확인되면, 항의위원회는 각 당사자와 증인들로부터 증거를 수집한다. RRS 부칙 M에는 청문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순서가 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그 권장된 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패널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각 당사자가 요청을 받았을 때에만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서로의 진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당사자나 항의위원회 위원이 잘못 들었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리는 경우에만 진술을 중단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각 항의위원회 위원은 사건의 전개 양상, 적용되는 규칙과, 결론에 근거가 되는 사실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개별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항의위원회가 질문할

차례가 되면, 위원들은 앞선 증언에서 이미 질의, 답변되지 않은 사실에 한정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항의서에 나열된 규칙 목록에 RRS 12, 11 과 15 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심판은 언제 오버랩이 성립되었는지, 보트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보트가 코스를 변경하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등 이를 보완하는 질문을 한다.

#### **F.4.5 증인, RRS 63.4(b)**

항의위원회는 청문에 참석한 당사자, 그들의 증인, 그리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다른 증거로부터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청문 당사자는 청문 준비, 증인 소재 파악, 청문 전 증거 수집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문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증인 또는 다른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문시간까지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이다. 기록담당 심판은 그러한 요청을 기록한다.

증인을 불러야 할 경우, 항의위원회 위원 또는 항의위원회 간사가 증인을 청문실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청문이 시작된 다음에는 당사자들이 증인에게 어떠한 조언도 할 수 없도록 한다. 당사자가 증인이 더 필요한지 묻는다면, 패널위원장은 "해당 증인이 관련된 추가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귀하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고 답변하여야 한다. RRS 63.4(b)는 관련이 없거나 지나치게 반복되는 증거를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대 편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항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증인들이 모형 보트를 사용하여 자신이 목격한 각도에서 사건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사람이 공간 지각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므로, 항의위원회 위원들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청문이 진행되는 동안 보트들을 정확히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당사자와 증인에게 항의와 관련된 자신들의 보트에 할당된 모형 보트의 색상을 유지하도록 요청한다. 각 증인이 청문실에 들어오기 전에, 모형 보트의 배치를 흐트러놓고, 각 당사자에게 할당된 색깔의 모형 보트를 당사자 앞에 배치해 둔다.

사건을 목격한 항의위원회 위원은 당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와 증인의 증거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위원은 당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출처에서 나온 새로운 증거도 제시해서는 안 된다.

#### **F.4.6 제 3 의 보트가 RRS 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RRS 63.2(d)**

가끔은 청문에서 증언을 들은 후, 증인이나 다른 보트가 RRS 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분명해져서, 그들을 청문의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패널위원장은 청문을 중단하고, 항의위원회는 해당 보트에 대하여 즉시 항의를 제기한다.

그렇게 할 경우, RRS 에 따른 절차와 항의의 유효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항의위원회는 해당 보트에게 항의를 받게 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한 항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게시하여야 하며, 항의받은 보트에게 청문을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후 모든 당사자에게 이해 상충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준 다음, 원래의 항의와 새로운 항의를 통합하여 새로운 청문이 시작된다. 유효성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유효한 항의에서 얻어졌고, 즉시 제기되었으므로 항의위원회는 자신의 항의를 제출하기 위하여, 항의마감시간을 연장한다. 제 3 의 보트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에 들었던 모든 증거들을 다시 청문되어야 한다.

#### **F.4.7 유도 심문**

유도 심문은 동의를 구하는 진술 형식의 질문이다. 심판은 유도 심문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답변에 부여할 가중치를 판단하여야 한다. 유도 심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직선코스 조종하는 것 보았지요?, 그렇지요?

내가 마크를 향하여 범주하고 있을 때, 반 정신 오버랩되었던 것에 동의하십니까?

오버랩이 성립되었을 때 보트가 구역에 도달하였나요?

위 질문은 오버랩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더 나은 질문은: "앞선 보트가 구역에 들어갔을 때, 두 보트의 상대적인 위치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묻는 것이다.

선택형의 질문은 피하도록 한다. 몇 척 ?, 1, 2 척 또는 3 척?이 아니라 간단하게, 몇 척 길이였습니까?

라고 질문하여야 한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은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증인이 더 큰 수치를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은 질문은, 두 보트의 상대적인 위치를 배치하게 하여, 두 보트 사이의 거리를 추산하는 것이다.

패널위원장은 유도 심문을 자제하게 하고, 올바르게 질문하는 방법을 당사자들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 **F.4.8 전해들은 증거 및 서면 증거, RRS 63.4(b)**

'전해들은 증거'란 용어는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당사자로부터 듣거나 전달받은 증거를 의미하는 전문 법률용어이다. 전해들은 증거는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것을 증인이 말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청문에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은 사람이 작성한 서면보고서나 진술서, 또는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오디오, 비디오 또는 트래킹 정보일 수 있다.

종종 사건을 목격하였거나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문에 참석하여 증언을 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경우, 청문의 당사자는 그 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서 또는 문서로 작성한다. 전해들은 증거는 그 타당성 또는 신뢰성에 대하여 검증하거나 반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능한 경우, 서면진술서를 제공한 사람을 전화나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도 참석시키도록 시도한다.

전해들은 증거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항의위원회는 그 증거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하며, 거의 또는 전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해들은 증거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크고 작은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문에 직접 부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기운영요원이 작성한 마크 돌기 기록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가중치가 부여된다. 마찬가지로, 트래킹 정보나 사진 또는 비디오 증거는,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더라도,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다. 정보의 신뢰성과 정보에 부여될 가중치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술위원회 혹은 클래스협회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서신이나 이메일은 상당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하나, 결론을 좌우할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경기 중의 사건에 대하여 기술한 전해들은 증거는, 거의 또는 전혀 가중치가 없다.

#### F.4.9 사진 및 비디오 증거, RRS 부칙 M8

사진 및 비디오 녹화물은 청문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때로는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항의위원회는 그것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비디오 증거의 한계점은 어떤 카메라든 원근감이 떨어지며, 특히 망원렌즈는 원근감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카메라의 시야가 오버랩된 두 척의 보트를 직각으로 보고 있다면, 두 보트 사이의 거리를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카메라가 선수나 선미를 바라보고 있을 경우, 상당히 오버랩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 오버랩되었는지 또는 심지어 오버랩이 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보통 당사자들의 증언을 들은 다음에, 비디오 증거물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디오 증거를 처음으로 볼 때는, 그 장면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카메라는 보트와 관련하여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가? 카메라와 보트 사이의 카메라의 각도와 거리는 얼마였는가? 카메라가 있는 곳은 움직이고 있었는가? 그렇다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가? 보트들이 중요 지점, 특히 사건 발생 지점에 접근함에 따라 카메라 각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빠른 카메라의 움직임은 극단적인 시각적 변화를 유발 (영상의 왜곡)한다는 것을 유념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의 시야가 제한된 적이 없었는가? 만약 촬영 중 시야에 제한이 있었다면, 그것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얼마나 감소시키는가? 전체 장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번 되돌려 보기의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할애한다.

먼저 아무런 설명없이 비디오를 시청한다. 그 다음, 각 당사자에게 자신의 설명을 덧붙여 해당 영상을 보여줄 기회를 준다. 각 당사자와 항의위원회는 비디오와 비디오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건은 짧은 순간에 일어나므로, 각 항의위원회 위원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반복하여 시청한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심의하는 동안, 청문실에 장비를 남겨 두거나 비디오 파일의 디지털 사본을 받아 두어서, 해당 영상이 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비디오 파일을 한 프레임씩 단계별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때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원 중 한 명이 다른 위원들이 파악하지 못한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녹화물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카메라 각도가 운 좋게 잘 맞았을 경우에만 영상이 사건의 핵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영상이 비록 하나의 쟁점만 해결해 준다 하더라도,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 항의위원회가 해당 청문에 앞서 비디오 증거를 열람했다면, 그 비디오는 반드시 청문 중에 제시되어야 한다. 모든 당사자는 증거와 관련된 청문 전반에 걸쳐 대표자를 참석시킬 수 있으며,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 **F.4.10 GPS 및 인터넷 트래킹 증거**

GPS와 인터넷 위치 및 트래킹은 흔한 것이 되었고, 그 사용이 거의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보트의 항적 이력 또는 인터넷 트래킹과 같은 GPS 정보가 항의 청문에서 증거로 제시될 경우, 적절한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 **단일 GPS 위치 이력 (항적)**

모든 보트 내비게이션 GPS 시스템은 나중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항행 이력을 저장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단일 출처 정보가 청문에서 유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루는 쟁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비록 GPS가 정확하더라도, 보트의 위치만으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다른 보트들의 위치, 마크의 위치, 출발선의 양 끝 위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트 속도에 대한 정보는 풍속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항의가, 수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는 특정되지 않은 해안선과 항의하는 보트 사이의 안쪽으로 오버랩하여 범주한 보트에 대하여 RRS 19.2(c)에 따라 제기된 경우라면, GPS 항적은 범주하기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수심과 해안과의 거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인터넷 트래킹 및 정보 표시 프로그램**

더 많은 방문객들을 대회 웹사이트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대회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데 상업적인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된다. 작은 GPS 위치 송신기는 마크와 스타트라인 뿐만 아니라, 보트 위나 승정원의 몸에도 장착된다. 지역 대회에서는, 이 정보가 육상 기지로 전송된다. 외양경기에서는, 이 정보가 위성을 통하여 대회본부로 전송된다. 두

경우 모두, 원래의 자료는 디스플레이 애플리케이션에 입력되며, 대회의 웹사이트에 표시된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경기와 개별 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픽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항적이 언제나 정확한 위치의 지점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송수신기로부터 전달되어야 할 항적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소프트웨어가 예상 지점을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한 경우, 트래킹 소프트웨어는 누락된 항적을 추산하고, 위치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항적을 제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래픽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추정 항적은 실제 범주한 항적과 다를 수 있다.

육상에 있는 동안, 선수와 코치들이 트래킹 시스템을 사용하여 경기를 검토한다. 보트는 항의 청문회에서 수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로 트래킹 정보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때때로 경기운영요원들은, 순위를 매기지 못한 보트의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또는 구제요청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성적에 대한 질의에 답하기 위하여, 그들이 작성한 피니시 기록지와 트래킹 정보를 비교한다.

서로 다른 트래킹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하는 핵심 기술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트래킹 시스템 제품의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 모든 트래킹 서비스 제공자는 GNSS 수신기를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기본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수집한다. 각 보트의 항적에 대하여 저장한 원래의 자료에는 적어도 위도, 경도, 그 시간 및 트래킹 식별기호가 포함된다. 지리적 위치는 GNSS 수신기 내에서 초당 최대 10 회까지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되지만, 트래킹 시스템에서 실제로 제공되거나 게시되는 위치 고정값의 빈도는 초당 1~2 회부터, 대양 경기에서는 1 시간에 1 회이거나 더 느릴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보트의 위치는 얼마나 자주 샘플링되는가? 답변: 비록 GPS 가 초당 10 번 샘플링할 수 있지만, 표시는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다. 메모리 칩의 저장 공간을 절약하거나 위성 데이터 전송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모든 위치가 전송되거나 표시되지는 않는다. 30 분 정도 걸리는 댕기 경기에서는, 1 초에 한 번 정도일 것이며, 대양횡단 경기에서는, 10 분 혹은 30 분에 한 번 정도일 것이다.

위치는 얼마나 정확한가? 답변: GPS 장비의 성능이나 기상 조건과 같이 위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은 95% 정도 정확하며, 그 위치에 대한 정확도는 2~8 미터이다.

코스의 마크들도 추적되나? 답변: 대부분 표시된다. 경기위원회는 스타트라인과 피니시라인의 양쪽 끝을 포함한 코스의 마크들에 트래커를 설치한다. 이것은 대회 트래킹 담당 팀이 확인하여야 한다. 경기위원회는 보통 고정식 또는 정부의 공공 부표에는 트래커를 설치하지 않는다.

트래킹 시스템이 오버랩과 충돌을 보여줄 수 있나? 답변: 선수들은 때때로 충돌 또는 구역에서 오버랩이 되었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청문회에서 트래킹 정보를 제시한다. 대부분의 경우, 트래킹 시스템의 정보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래픽으로 표시된 보트는, 거의 축척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확대·축소 수준을 달리하여 보트 아이콘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 청문에서의 기타 고려 사항

선수들은 자신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트래킹 시스템에서 본 해당 사건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재현한 동영상 클립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제시는 파생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므로, 심판은 무엇이 실제 데이터이고 무엇이 가상 표현인지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시각적으로 더 강조된 그래픽은 오히려 선수와 심판을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문회에서 트래킹 자료 프레젠테이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항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경기에 앞서, 항의위원회는 사용 예정인 트래킹 시스템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선수들이 보트에 트래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는 지침을 검토한다. 보트에 트래커가 설치되어야 하는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위치 정보의 샘플링 빈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트래커 응용프로그램을 검토한다. 확대 및 축소, 스케일링 관찰, 경기 시작과 멈춤, 그리고 보트와 식별표식을 제거하여 화면을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트래킹 장치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정보에 어떤 평균화 (averaging) 또는 평활화 (smoothing)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 주 1) Averaging: 측정되지 않은 시각의 정보를 얻기 위해 (또는 측정값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앞뒤의 몇 개 정보를 함께 사용하여 계산된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방법.

주 1) Smoothing: 데이터의 작은 흔들림이나 잡음 (noise)을 줄여서 더 부드러운 흐름을 보이도록 만드는 처리 방법. 위치점들끼리 단순하게 연결하면 직선과 직선의 연결로 보이기 때문에, 주변의 3 점 (또는 5 점) 데이터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곡선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이 과정에서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데이터는 원시 데이터 (raw data) 자체를 변경하기도 함.

트래킹 장비 공급자에게 세 척 길이 구역 (zone)이 표시되도록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트래커가 마크와 경기위원회 보트에 설치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경기위원회에 문의한다.

트래킹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청문 동안, 해당 트래킹 영상 클립을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당사자들로부터 구두 진술을 받는다. 당사자들이 서로의 구두 진술에 질문하도록 한다. 항의위원회는 당사자들의 구두 진술로부터 사건에 대한 사실을 이해하도록 한다. 트래킹 데이터는 언제나,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될 때, 그 정보를 평가하기가 더 용이하다.

통상적으로 심판은 청문 전에 트래킹 정보를 보지 않는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이 트래킹 정보를 보았다면, 그것을 당사자 또는 항의위원회가 제출한 증거로 포함시켜야 한다.

## **F.5 사실, 결론, 판결, RRS 63.5**

### **F.5.1 증거의 평가**

인간의 인식은 자신의 사전지식에 근거한 예상에서 시작된다. 경기에 대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사건 발생 시점에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주변의 보트들과 그들의 위치 및 그 보트의 속도 그리고 사건의 순서 등 세세한 내용으로 사건을 떠올릴 수 있다. 선수들은 보통 보트 사이의 거리는 잘 판단한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에는 능숙하지 않다. 또한 훌륭한 규칙 지식을 가진 증인은, 적용될 것으로 믿는 규칙의 요건에 부합되는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규칙을 잘 모르는 사람은 사실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트의 위치 관계와 같은 중요한 세부 내용을 놓칠 수 있다.

발표하는 모습에 근거하여 증인과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의견을 자신있게 표현하는 증인의 증거는 종종 덜 자신있어 보이는 증인의 증거보다 더 비중있게 다루어지지만, 그들의 확신은 기억의 정확성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 F.5.2 사실의 판명

항의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증거가 크게 엇갈리는 경우에도, 결론 및 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증거가 서로 다른 경우는 흔하며,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다른 관점을 반영한다. 한 당사자는 보트 사이의 거리가 1미터였다고 진술하고, 다른 당사자는 3미터였다고 진술할 경우, 항의위원회는 어느 쪽 의견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증거의 우월성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에 확정된 거리가 1미터도 아니고 3미터도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결정된 거리는, 판결의 근거가 되는 '판명된 사실'이 된다.

심판들 사이의 의견차이는 증거의 가중치에 따라 해결한다. 세일링 경기규칙은 RRS 18.2(e)에서의 의심을 해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보트 또는 다른 보트에게 입증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포트 택 보트가 스타보드 택 보트를 킵 클리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항의위원회는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판단하기에 누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고, 어떤 증거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그런 다음 증거의 우월성에 입각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 F.5.3 심의

모든 위원이 각자 동일한 사실과 결론에 이미 도달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패널위원장은 각 위원들에게 결론을 물어봄으로써,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사실과 결론을 쓰는 것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위원들이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위원회는 신속히 그 차이점에 집중할 수 있다.

청문을 진행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록담당심판이 사실로 간주되는 요점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각 심판이 결론을 발표하고, 의견을 해결한 후, 기록담당심판이 기록해 둔 판명된 사실을 읽는다. 어떤 위원이 몇 가지 요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낸다. 판명된 사실에 관련 규칙을 적용하고,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그런 다음, 적용 규칙, 결론, 판결을 적는다. 월드세일링 국제심판 문서 라이브러리에 나오는 <선호하는 표준 문구>는 유용한

참고자료이다. 그리고 나서, 최종 검토를 위하여 기록담당심판이 작성한 판명된 사실, 결론 그리고 판결을 읽는다.

규칙이 다른 입증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판결은 증거의 우월성에 따른다.

#### **F.5.4 항의위원회 위원들 사이의 의견차이 해소**

항의위원회의 판결은 전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항의위원들 간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증거의 가중치를 따져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필요한 경우, 누락된 정보나 추가적인 설명을 얻기 위하여 당사자를 다시 부른다. 항의위원회 위원 간의 이견이 해소되면, 앞 문단에서 언급한 절차를 따른다. 토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견이 지속된다면, 투표는 특히 유용할 수 있다. 투표 결과가 동수일 경우, 그 청문의 패널위원장이 추가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RRS 63.5(b)).

모든 위원이 동의하는 것이 아닐 경우,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에게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고, 다른 위원들을 설득해 보도록 요청한다. 위원이 소수의견을 강하게 견지하는 경우에는, 레벨 1 또는 레벨 2로 분류하여 해결할 수 있다:

레벨 1: 통상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던 항의위원이 그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레벨 2: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의 위원이, 그 판결에 자신이 연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발표될 때 반대 의견 심판으로 이름을 명시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사실은 판결문에 반대 의견으로 기재된다.

항의위원회의 최종 판결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항의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그것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 심판은 자신이 그 판결에 참여한 패널의 일원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항의위원회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위원들은 항의위원회가 판결을 재고하거나 재청문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목적, 또는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심판들과 판결에 대한 비공개 토론과 비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 코치 또는 일반 대중과 항의위원회 내부의 의견 차이를 논의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다른 심판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뿐이다. 만약 한 심판이 그 판결에 자신을 연관시키고 싶지 않다면, 판결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으로 이름을 밝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이며, 이후 제기되는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공표된 판결문만을 참고하도록 한다.

패널위원장은 어떤 위원이 반대 의견자로 기록되기를 요청할 경우, 대회심판보고서에 해당 판결사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F.5.5 입증 기준의 적용, RRS 63.5(a)**

규칙이 다른 기준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에 대한 입증의 기준은 '증거의 우월성'이다. RRS 2 에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의 기준은 그 위반이 '확실히 판명된' 것이다. RRS 69 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기준은, 발생한 '부정행위 혐의의 심각성'을 염두에 둔 항의위원회의 '충분한 납득'이다.

RRS 18.2(e)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그 시점에 오버랩이 되었거나 풀렸는지에 관한 사실을 보트와 항의위원회가 추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항의위원회가 단순히 이 규칙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가용한 증거를 이끌어내도록 당사자와 증인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의심을 해소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여전히 의심이 남는다면, RRS 18.2(e)를 사용하여 이 항의를 해결할 수 있다.

#### **F.5.6 당사자와 기타 관련자에게 통보, RRS 63.6**

항의위원회는 청문의 결과를 알리기 위하여 당사자와 옵저버들을 다시 부른다. 패널위원장이나 기록담당심판이 판명된 사실, 결론, 판결, 적용된 규칙, 주어진 벌칙 또는 면책 내용을 읽어 주고, 필요할 경우, 통역사가 통역을 한다.

패널위원장은 판명된 사실, 결론과 판결을 구두로 전달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나중에 판결문 사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 판결문은 당사자들에게 구두로 전달한 정보를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에게 판결을 구두로 전달한 날짜와 시간을 판결문에 기록하여야 한다.

항의위원회는 판명된 사실과 결론을 포함한 판결문을 공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모든 선수들이 해당 판결을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를 요청할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안이 민감하거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항의위원회는 판결만 공표하고, 판명된 사실과 결론은 당사자에게만 제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F.6 항의 판결, RRS 60.5

항의에 대한 판결은 항의를 기각하거나, 보트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 항의를 인용하는 것이다. 보트는 다른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격된다. 보트가 규칙 위반에 대하여 면책되었거나, 적절한 벌칙을 이행하였거나 RRS 36 에 따라 <재스타트 또는 재경기되는 경기>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벌칙이 부과된다.

### F.6.1 항의가 인용된 경우의 벌칙

다음의 세 가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 벌칙은 제외할 수 없는 실격 (DNE)이다.

- 그리고
- rule 30.4 and RRS 30.4 그리고
- P2.2 또는 P2.3 이 적용될 경우의 RRS 42

채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항의위원회의 판결은 채점담당관에게 즉시 알리고, 채점을 변경한 일련의 기록을 모두 남겨둔다.

항의 당사자가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 논의는 간결하게 유지한다. 당사자의 우려를 논의하기 위하여 항의위원회 전체 또는 두 명의 위원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시간을 정해 주겠다고 제안한다. 향후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당사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

판결에 불만족한 당사자가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 <재청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준다. 또한 RRS 70.3 에 따라 상고할 권리가 배제되지 않는 경우, 그 당사자는 항의위원회의 판결에 상고할 권리가 있다..

### F.6.2 클래스규칙 및 장비에 관한 항의 판결, RRS 60.5(d)

클래스규칙이나 레이팅에 대한 항의는 보트의 선주나 책임자가 위반한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반 혐의는 RRS 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대한 단순한 오류나 오해일 수 있다. 때로는 명확하게 허용되는 것과 명백히 금지된 것 사이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규칙 해석에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계측과 관련해서는, RRS 78 이 핵심인데, 이 규칙은 선주나 보트의 책임자에게 해당 보트가 클래스규칙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계측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책임을 부과한다. 클래스규칙과 절차를 잘 알고 있는 항의위원회 위원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항의위원회가 그 클래스에 정통한 한 명 이상의 전문가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서는, 클래스규칙과 관련된 항의를 해결할 수 없다. 항의위원회는 해당 클래스의 기술위원회를 포함하여 클래스 전문가인 증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해 상충이 없을 경우, 보트 디자이너가 그 클래스의 전문가로 증인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증인은 단지 증인일 뿐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항의위원회가 최종 판결을 내린다.

기술위원회의 협조가 가능하고, 항의에서 복합적인 위반이 제기된 경우, 항의위원회는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기타 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의무에 따라 계측 확인 또는 재계측까지 지시할 수 있다.

규칙은 보트에게 다른 보트의 재계측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재계측을 명하거나 요청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항의위원회의 권한 사항이고, 대회공고나 범주지시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조직위원회의 권한 사항이다. 항의위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계측과 그에 따른 경비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기술위원회의 위원은 사건의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 계측의 정확성과 규칙의 해석에 관한 증거는 선수와 그 대회 기술위원회가 제시한다. 월드세일링의 <세일링 장비 규칙>은 계측 절차에 대한 질의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항의위원회가 클래스규칙의 해석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경우, RRS 63.5(d)는 항의위원회가 질문과 관련 사실을 클래스규칙의 해석에 관하여 권위있는 기관에 문의하도록 요구한다. 이 기관은 일반적으로 해당 클래스협회의 기술위원회, 월드세일링, 또는 국가협회이다. 핸디캡 또는 레이팅 시스템의 규칙에 대한 질문은, 보트가 위치해 있는 수역에서 핸디캡 또는 레이팅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기술위원장이 답변할 수도 있다. 이 기관은, 기술위원회 위원이 클래스협회의 기술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회의 기술위원회가 아니다. 일단 항의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질문하면, 항의위원회는 그 기관의 답변에 따라야 한다.

RRS 60.5(d)는 클래스규칙을 위반한 보트에게 벌칙을 부과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트는 클래스규칙에서 규정한 공차를 초과하는 차이에 대해, 그 차이가 손상이나 통상적인 마모에 의해 생겼으며 보트의 성능을 향상시키지 않았다면 벌칙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보트가 그 차이를 수정할 합리적인 기회가 있다면, 해당 보트는 그 차이가 수정될 때까지 다시 경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해당 보트에 벌칙이 부과된다면, 추가적인 항의없이 같은 대회와 앞 경기에서 동일한 규칙을 위반한 모든 경기에 동일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항의위원회가 클래스규칙에 따라 보트에 벌칙을 부과하는 경우, 이를 관련된 클래스규칙 기관에 보내야 한다. (RRS 63.6(e))

RRS 70.3 에 의하여 상고가 거부되지 않는 경우, 계측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보트는 보트를 수정하지 않고도 이후의 경기들에 계속 참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경기에 참가하려는 보트는 상고할 의사가 있음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그 보트가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가 그 보트에 불리하게 판결될 경우, RRS 60.5(d)(4)에 따라 모든 경기에서 실격된다.

### **F.6.3 RRS 61.4(b)(5)에 따른 항의위원회의 벌칙에 대한 조치**

RRS 2 에 따른 벌칙 또는 RRS 69 에 따른 벌칙이나 경고를 받은 보트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보트의 성적이 크게 나빠졌다면, 그 다른 보트는 구제받을 자격이 있다. 일단 그런 벌칙이 부과되면, 항의위원회는 구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의 소집을 고려할 수 있다.

## **F.7 구제 판결, RRS 61.4**

### **F.7.1 구제 요건**

항의위원회는 구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RRS 63.2 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구제요청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제 항의위원회는 해당 요청이 RRS 61.4 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음의 다섯 가지 이유 중 하나로 인하여 경기 또는 시리즈의 득점 또는 순위가, 크게 나빠졌거나 나빠질 수 있는 경우, 보트는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1. 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 또는 부적절한 임무누락. 그러나 그 보트가 청문의 당사자였던 청문에서 항의위원회가 내린 판결에 의한 것은 제외,

제 2 장의 RRS 을 위반한 후, 적절한 벌칙을 이행하였거나 벌칙을 받은 보트의 행위에 의한 손해 또는 물리적 손상,

킵 클리어할 의무가 있었던 경기-중이 아닌 배 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IRPCAS) 또는 국가항로권규칙에 따라 잘못이 판명된 배의 행위에 의한 손해 또는 물리적 손상,

RRS 1.1 을 준수하는 도움 주기 (자기 보트 또는 승정원에 대한 구조는 제외), 또는

RRS 2 에 따른 벌칙 또는 RRS 69 에 따른 벌칙이나 경고를 받은 상대 보트, 또는 그 보트의 승정원 또는 지원인력의 행동.

#### **F.7.2 득점 또는 순위가 크게 나빠졌거나 나빠질 수 있는 경우**

보트는, 주로 해당 경기에서, 자신들의 점수에 영향을 미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 사건은 결과적으로 시리즈 점수에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경기위원회가 채점 오류를 규칙에 따라 해당 보트가 받아야 했던 득점으로 수정한 경우, 이는 해당 보트의 득점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경기위원회가 모든 보트들을 피니시 순위에 따라 채점해야 하는 의무를 따른 것이므로, 경기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보트의 성적이 크게 나빠질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아직 보트의 성적이 영향을 받지 않는 않지만, 판명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될 때 적용된다. 이 가능성은, 관련된 경기에서 보트가 이미 피니시 순위나 점수 (비록 DNF 라 하더라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제를 받으려면, 경기 또는 시리즈에서 보트의 점수나 순위는 '크게 (significantly)' 나빠져야 한다. '크게 (significantly)' 라는 용어는 주관적이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항의위원회가 판단한다.

득점 또는 순위가 1 점 나빠지는 것이 시리즈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분명히 '크게 (significantly)'라는 용어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단 1 점의 차이가 대회에서 16 위와 17 위 차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이것 역시 '크게 (significantly)'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보트의 점수가 '크게 (significantly)' 나빠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구제를 요청한 당사자의 책임이다. '크게 (significant)'라는 용어는, 특히 다른 보트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 **F.7.3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우**

보트는 자신의 잘못 없이 점수가 크게 나빠졌을 경우, 구제받을 자격이 있다. 나빠진 득점에 대하여 보트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

한 예로, 경기위원회가 경기일정의 예정된 시간대로 경기를 스타트시켰는데, 어떤 보트가 육상계류장으로부터 늦게 출발하여 스타트를 하지 못한 경우, 이는 보트의 잘못이지, 경기위원회의 잘못이 아니다.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 31 은 경기위원회에서, 어떤 보트가 OCS 인 것을 확인한 다음 'X'기는 올렸지만, 소리신호를 발하지 못한 사례를 제시한다. 그 보트는 스타트할 때 자신이 OCS 임을 알았지만, 경기위원회의 임무의 누락 (소리신호 불발)때문에 스타트라인으로 복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경기위원회의 실책은 인정하지만, <정의> - <스타트>에 따르지 않은 보트에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 사례이다. 그 보트는 자신이 OCS 임을 알고 있었고, <정의>의 <스타트> 또는 RRS 28.1 을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구제받을 자격이 없다.

### **F.7.4 부적절한 조치 또는 부적절한 임무누락, RRS 61.4(b)(1)**

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 또는 부적절한 임무누락으로 인하여, 보트 자신의 잘못이 없이 그 보트의 득점이 크게 나빠진 경우, 그 보트는 구제받을 자격이 있다. 보트가 청문의 당사자였던 경우, 항의위원회가 내린 판결이 그 보트에 미친 영향은 예외로 한다.

경기운영 방침, 심판 방침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조언은 <RRS>의 정의에 따라 경기를 통제하는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위원회 또는 항의위원회의 조치가 이러한 방침이나 조언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구제요청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 129 는, 비록 경기위원회가 좋은 경기운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경기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는 아니었던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 예로, 범주지시서에 코스 1 과 2 만 명시되어 있는데, 경기위원회가 코스 3 을 신호한 경우, 이는 범주지시서에 없는 코스를 신호한 것이므로 부적절한 조치에 해당된다.

또 다른 예로, 만약 경기위원회가 코스 2 로 신호하였고, 이후 첫 번째 보트가 제한시간 이내에 피니시하지 못하였는데도 코스를 단축하지 않은 경우, 이는 경기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나 부적절한 임무누락이 아니다. 왜냐하면 범주지시서에 따라 코스 2 를 신호하였고, 코스를 단축하는 것은 경기위원회의 재량이므로, 코스단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경기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나 부적절한 임무누락이 아니다.

보트들은 때때로 OCS, ZFP, UFD, BFD, SCP, NSC 또는 DNF 로 채점한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구제를 요청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한다. 이 경우, 보트는 경기위원회가 오류를 범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비디오 증거 또는 다르게 채점된 두 보트의 상대적 위치만으로, 경기위원회의 오류가 입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을 찾아내는데 있어서, 항의위원회는 증거의 우월성을 입증 기준으로 삼아, 증거의 가중치에 따라 판단한다. 판결 사례 136 을 참조할 것.

#### **F.7.5 물리적 손상과 상해, RRS 61.4(b)(2), 61.4(b)(3)**

이 규칙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보트가 상해 또는 물리적 손상을 입었고;
- 이는 관련 규칙을 위반한 보트의 행위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 제 2 장의 규칙을 위반한 다른 보트가 적절한 벌칙을 이행하였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

물리적 손상이란 보트의 일부 또는 전체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기능이 저하된 것을 말한다.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 19 를 참조할 것. 물리적 손상에 캡사이즈; 리그 또는 라이프라인의 얽힘; 승정원이 물에 빠짐; 순위의 하락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해는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승정원들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모든 상태를 말한다. 경미한 자상이나 찰과상은 이 규칙의 목적상 상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 135 는 RRS 61.4(b)(2)가 제 2 장의 RRS 을 위반한 보트에 의하여 물리적 손상이나 상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는 발생한 물리적 손상이나 상해가 규칙을 위반한 보트의 행위와 개연성이 있는 결과였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항의위원회는 제 2 장의 RRS 를 위반한 보트가 적절한 벌칙을 이행하였거나 벌칙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트가 리타이어 또는 적절한 벌칙이행을 하였는지 그 기록을 확인한다. 구제를 요청하는 보트가 해당 보트에 대해서 항의도 한 경우, 구제요청과 함께 그 항의를 청문한다.

#### **F.7.6 도움 주기, RRS 61.4(b)(4)**

다른 보트가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도움을 준 보트는, 그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거나 실제로 위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구제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 20 참조.

#### **F.7.7 RRS 2 또는 또는 RRS 69, RRS 61.4 (b)(5)에 따른 벌칙받은 보트의 행동**

이 규칙은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상대보트 또는 그 보트의 승정원 또는 지원인력에 의한 행동이 있었으며;
-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RRS 2 에 따른 벌칙 또는 RRS 69 에 따른 벌칙이나 경고를 받은 경우.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 34 에서, 보트 A 는 스타트라인을 일찍 통과한 후, 보트 B 를 만날 때까지 스타트라인을 향하여 방향을 되돌렸다. 이후 보트 A 는 재스타트를 하지 않고, 방향을 돌려 보트 B 에 바짝 따라붙으며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항의위원회는 OCS 로 채점되었던 보트 A 가 RRS 2 를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보트 A 의 성적을 DNE 로 변경하였다. 이 사례에서, 보트 A 의 방해로 두 보트는 풍상마크에서 각각 끝에서 두 번째와 마지막 순위였고, 최종적으로 보트 B 는 22 번째로 피니시하였다. 따라서 보트 B 는 이 규칙에 따라 구제를 요청할 수 있었고,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 **F.7.8 구제 판결, RRS 61.4(c)**

항의위원회가 구제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영향을 받는 모든 보트들에 대하여 가능한 한 공정한 조정을 취하여야 한다. 항의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모든 보트에 대하여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조정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으나, 요청된 대로 구제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특히 경기를 취소하기 전, 경기 또는 시리즈에 대한 사실 또는 이러한 조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항의위원회는 적절한 출처로부터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 구제요청과 관련이 없는 다른 보트들의 증거와 경기위원회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다. RRS 61.4(c)는 주어질 수 있는 구제의 사례를 제공한다.

보트가 구제를 요청한 경기를 피니시할 수 없었던 경우, 평균점수 (RRS 부칙 A9의 방법을 사용)로 보상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구제를 요청한 경기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버리는 성적을 제외하고 시리즈 성적을 계산할 때 사용하게 될 경기 수의 절반 미만의 (상황에 따라 더 적은 개수의) 경기에 대해서만 그 평균점수로 구제할 수 있다.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 116 참조.

만약 절반이 넘는 시리즈 경기를 이미 완료하였다면, 문제가 된 경기 이전에 완료된 모든 경기의 점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평균점수로 구제해 줄 수 있다.

중요 대회에서는, 평균점수 계산에서 마지막 경기 또는 시리즈 마지막 날을 제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선수들은 마지막 경기 또는 마지막 날 경기에 나가는 모든 보트들의 정확한 점수를 알 수 있어, 그에 따른 자신의 전술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점수는 해당 경기에서 사건 발생 당시의 보트 순위에 근거하여 부여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경기 중 보트들의 순위가 이미 확정된 상태였던 경우, 특히 피니시라인에 근접했을 때 적절하다.

만약 사실 관계를 통해 한 보트가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 본 시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면, 그 보트의 점수는 해당 사건에서 손해 본 시간을 차감할 경우 받았을 피니시 순위와 동등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 110은 보트가 접촉이나 사건 발생 과정에서 손해 본 시간 또는 순위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조언한다. 보트는 물리적 손상 자체 또는 자신의 승정원의 상해로 인하여 보트의 점수나 순위를 크게 나빠지게 한 경우에 대해서만 구제의 대상이 된다.

만약 위에 제시된 방법으로는 보트의 점수를 공정하게 조정할 수 없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보트의 점수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 클래스의 보트 2척이 포함된 혼합 플리트 경기에서는, 해당 보트에게 같은 클래스의 다른 보트와 동일한 점수를 주는 것이 공정하게 여겨질 수 있다.

시리즈가 예선과 결승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주어지는 모든 구제는 사건이 발생한 그 시리즈의 해당 부분의 성적과 연관이 되어야 하고, 그 성적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경기는 영향을 받는 모든 보트들에게 공정한 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취소되어야 한다. 경기의 취소는 자신의 실력으로 승자가 되었거나 경기를 완주한 보트들에게 불공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트가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모든 보트를 위한 가장 공정한 방법이 경기 결과를 그대로 두는 것일 때도 있다. 예를 들어, 킵 클리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트에 의해 마스트가 파손되어 리타이어한 보트는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단일 경기 대회에서는 실제로 부여할 수 있는 구제가 없는 경우가 있다. 판결사례 116 참조.

항의위원회는 구제를 요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트가 구제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항의 청문 판결의 일부로 해당되는 보트를 구제해 줄 수 있다. (RRS 61.4(c))

## **F.8 재청문 요청**

### **F.8.1 재청문, RRS 63.7**

청문의 당사자는 누구든지 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위원회나 기술위원회가 구제를 요청하였거나 항의위원회가 구제를 고려하기 위한 청문을 소집할 경우, 당사자는 구제가 요청된 보트이다. 그 밖의 모든 보트는 '영향'을 받은 보트이지는 않지만, 해당 청문의 당사자는 아니다.

당사자가 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항의위원회는 그 요청이 유효한지 결정하여야 한다.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마감시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 (1) 재청문을 요청한 청문의 판결을 통보받은 후 24 시간 이내

그러나, 예정된 경기일정의 마지막 날의 요청은 다음과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 (1) 요청하는 당사자가 이전 날에 판결을 통보받았을 경우, 항의마감시간 이내;
- (2) 요청하는 당사자가 대회 마지막 날 판결을 통보받은 경우, 그 후 30 분 이내.

재청문요청이 해당 마감시간 이내에 제출되었을 경우, 항의위원회는 요청 당사자가 제시한 사유에 근거해서 그 당사자가 재청문을 위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재청문을 요청한 당사자의 최초 진술은 재청문의 사유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되어야 한다. 그 어떤 새로운 증거도, 그것이 '새로운 (new)'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서만 진술을 듣는다.

### F.8.2 재청문 요건

항의위원회는 청문을 재개할 의무가 없다. 이미 검토된 주장이나 증거를 재차 진술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재청문을 허용하는 것은 대회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청문은 항의위원회와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에게 불합리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이 된다.

항의위원회는 RRS 63.7 의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될 경우, 재청문할 수 있다.

- (1) 당사자가 불가피하게 청문에 불참한 경우.

청문의 모든 당사자는 대표자를 참석시킬 권리가 있다. 다른 자격이 있는 대표자가 출석할 수 있었음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보트가 지정한 대표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재청문의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2) 항의위원회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청문 요건에 해당되는 항의위원회에 의한 실책은 부적절한 절차나 규칙의 잘못된 적용을 포함한다. 항의위원회는 결론의 핵심이 판명된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적용 규칙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3) 합리적인 시간 내에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얻은 경우.

새로운 증거를 고려하기 위한 재청문의 경우, 해당 증거는 새롭고 중요해야 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RRS 부칙 M4.2 와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 115 는 RRS 63.7 에서 사용된 '새로운'이라는 단어의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증거는 다음의 경우에 '새로운 (new)' 것으로 본다.

- 재청문을 요청한 당사자가 원래의 청문 전에 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경우;
- 재청문을 요청한 당사자가 원래의 청문 전에 성실하게 증거를 찾았으나 증거를 찾는데 실패하였다는 점을 항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또는
- 항의위원회가 원래의 청문 당시 당사자 또는 위원회가 해당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된 경우.

중요한 증거란, 심의 중인 특정 사안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증거를 말한다. 이러한 증거는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유사한 증거로 확립된 사실을 반복적으로 입증하는 누적적 증거여서는 안 되며, 사안 판단에 불필요한, 즉 중복되는 증거가 아니어야 한다. 중요한 증거는 판결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증거의 맥락에서 볼 때 사건의 결과가 바뀔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청문이 종료된 후 제시된 새로운 증인은, 원래의 청문 전 또는 청문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가 항의위원회에 그 증인의 존재를 알렸거나 당사자가 원래의 청문이 진행될 때까지 그 증인과 그의 증거를 알지 못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새로운 증거'로 간주되지 않는다. 원래의 청문에서 당사자가 증인을 찾지 않았거나 항의위원회에 청문의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새로운' 증인을 내세워서 재청문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 당사자가 청문에 출석하여 증인을 찾기 위하여 청문의 연기나 시간 연장을 요청하였다면, 이후의 재청문 요청은 RRS 63.7 의 요건에 부합될 수 있으며, 항의위원회는 재청문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new)'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진과 동영상 증거는 그 증거가 누적적이지 않은 새로운 자료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판의 일부 또는 전체 위원들이 검토하여야 한다. 패널위원장은 통상적으로 한 명 이상의 심판위원이 그 증거를 검토한 후, 항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명한다. 그 증거가 새롭고 중요하거나 그 증거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그 배정된 위원들은 그 증거를 전체 항의위원회에 회부한다.

또한 항의위원회는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스스로 입수하여 재청문을 결정할 수도 있다. 새로운 증거로 고려된다면, 원래 청문의 당사자들은 출석하여 새로운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다.

(4) 국가협회가 요구하는 경우.

상고에 대한 국가협회의 판결은 추가적인 사실을 제공하기 위한 재청문 또는 RRS 71.3 또는 RRS 부칙 R5 에 따라 새로운 청문을 지시하는 것일 수 있다.

### F.8.3 재청문 절차

항의위원회가 청문을 재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재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피하게 불참하였을 경우, 그 청문은 이미 제시되었던 모든 증거들을 다시 심의하면서 새롭게 시작한다.

재청문이 단지 새로운 증거에 근거한 경우, 가능하다면, 항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원래의 항의위원회 위원이어야 한다.

재청문이 항의위원회의 중대한 잘못에 근거한 경우, 실행 가능하다면, 항의위원회는 최소 1 명의 새로운 위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항의위원회의 동일 위원이 같은 시각으로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인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 위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위원을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국가협회가 청문을 재개하라고 지시하였을 경우, 국가협회는 동일한 항의위원회 또는 국가협회가 임명하는 새로운 항의위원회가 새로운 청문을 개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협회는 재청문의 범위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쟁점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그리고 항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증거를 바탕으로 재청문이 진행된다.

재청문에서는 RRS 제 5 장에 명시된 절차가 적용되며, 모든 당사자는 대표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 항의위원회는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들과 증인들로부터의 증거,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당사자도 역시 질문할 수 있다. 항의위원회는 다른 모든 청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청문을 진행한다.

항의위원회가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 RRS 63.6(a)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수정된 판결을 게시하거나 청문 당사자에게 판결문 사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F.9 지원인력이 포함된 청문**

### **F.9.1 지원인력이 포함된 청문의 당사자**

지원인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다음의 사람을 지원인력이라 한다.

- 대회에 참가 중이거나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신체적 또는 자문형태의 지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팀 스태프, 의료진, 의료 보조인 또는 선수와 같이 일하거나 선수를 치료하거나 돕는 인력;
- 선수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지원인력은 RRS 4.1(b)에 따라 대회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F.9.2 지원인력과 관련된 청문 절차, RRS 62**

항의위원회는 지원인력이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청문을 소집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지원인력이 대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주지시서, 대회공고 또는 지원인력 규정을 위반한 혐의이다. 항의위원회가 직접 목격하였거나 어떤 출처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에 근거하여 이 청문을 소집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른 청문 중에 입수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그 혐의는 이 절의 뒷부분에서 논의되는 RRS 69 에 따른 부정행위일 수도 있다.

청문을 시작하려면, 규칙 위반에 대한 혐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건의 발생 장소, 시간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규칙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당 지원인력에게는 규칙위반 혐의에 대한 세부 내용이 통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청문요청서에 기재되어 제공된다.

지원인력에 대한 청문은 RRS 63 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항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상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당사자들로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증인의 증언을 듣고, 당사자와 그들의 증인에게 질문한다. 통상적인 항의 절차와 다른 점은, 유효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원인력은 청문의 당사자이다. 게다가, 정의에 따르면, 해당 지원인력이 지원하는 모든 보트 또한 청문의 당사자이다. 청문요청서에는 지원인력과 관련된 모든 보트가 청문의 당사자로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위반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청문요청서의 사본을 지원인력에게 제공한다. 지원인력과 관련된 보트들을 위하여 항의 접수처에 그 사본을 준비해 둔다.

항의위원회는 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지원인력 및 해당 지원인력과 관련된 모든 보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항의위원회가 위반 혐의를 인지한 즉시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통지는 공식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지원인력에 대한 청문은 항의 및 구제를 위한 청문 일정에 포함될 수 있다.

지원인력과 그 지원인력이 지원하는 모든 보트는 당사자로서 청문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규칙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이 청문과 관련된 일부 또는 모든 보트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문은 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 항의위원회는 모든 당사자에게 청문을 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항의위원회는 그들이 직접 목격한 것에 근거한 경우, 청문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위원이 청문에서 혐의를 제기하는 발표자 역할을 맡고 그 판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항의위원회가 해당 청문에서 그 혐의를 제기할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항의위원회가 해당 청문에서 혐의를 제기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 **F.9.3 지원인력에 대한 벌칙, RRS 62.3**

항의위원회는 증거의 우월성에 근거하여 지원인력의 규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규칙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벌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항의위원회는 경고를 주거나, 또는 좀 더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인력에 대하여 대회나 경기수역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대회나 경기수역에서의 모든 특권이나 혜택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한 경기 또는 하루와 같이 제한된 기간일 수 있고, 대회가 끝날 때까지의 더 긴 기간일 수도 있다. 또한 대회기간 중,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사교 행사에서 배제할 것인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대회가 종료된 후에, 지원인력이 장비를 챙기기 위하여 경기수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결정하여야 한다. 항의위원회는 지원인력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도록 조직위원회에 권고하기 전에, 지원인력이 이미 지불한 식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또는 잠자기 위하여 선수촌의 숙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항의위원회는 RRS 에 따른 심판 관할권 내에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월드세일링의 <지원인력과 보트에 대한 임의재량 벌칙에 대한 지침>은 적용되는 규칙과 관련된 벌칙에 대하여 항의위원회에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의 논리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항의위원회는 대회 전반에 걸쳐 유사한 위반에 대하여 일관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침에 있는 모든 규칙이 모든 대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항의위원회는 규칙을 적용하고 벌칙을 부과할 때 자신의 관할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F.9.4 지원인력의 규칙 위반에 대하여 보트에게 부과되는 벌칙, RRS 62.4**

청문에서 지원인력에게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 항의위원회는 해당 지원인력과 관련된 보트들에 대한 경고 조치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청문 과정에서 해당되는 보트들을 불러 경고 조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보트에 대한 경고의 이점은, 그 보트들이 지원인력의 행위와 관련된 벌칙에 노출되어 (=벌칙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경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지원인력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고가 주어질 경우, 이는 청문에 대한 서면 판결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인력과 관련된 보트에 대한 판결문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문구는 다음과 같다:

지원인력 Chris Black 는 세일넘버 1572, 1539, 1600 그리고 1602 를 지원한다.

지원인력 Chris Black 이 추가로 규칙을 위반할 경우, 보트 1572, 1539, 1600 그리고 1602 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지원인력이 지원하는 보트들에 대한 경고를 포함한 판결문을 공식게시판에 게시한다. 이는 해당 보트들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한 경고가 된다.

항의위원회는 규칙 안에서의 특정 조건에 따라, 지원인력의 위반에 대한 청문 당사자인 보트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보트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지원인력의 규칙 위반으로 인하여, 보트가 경기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보트들에 대해서도 항의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된다. 이 항의에서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규칙은

지원인력이 위반한 것과 같은 규칙이다. 만약 같은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항의위원회는 관련된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외부의 도움으로 해당 보트를 항의하는 것, 또는 보트를 변형시켰다고 클래스규칙 위반으로 보트를 항의하는 것, 또는 지원인력이 경기 중인 다른 보트를 방해하였다고 보트를 항의하는 것 등이 있다.

항의와 지원인력에 대한 조치가 같은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합동으로 청문할 수 있다.

지원인력의 위반에 따라 보트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항의위원회가 보트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경고했음에도, 지원인력이 추가적인 위반을 한 경우이다. 이러한 추가 위반은, 동일한 규칙의 위반 일수도 있고, 다른 규칙의 위반 일수도 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항의위원회는 청문 당사자인 보트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RRS 62.4(b)는 DSQ 이외의 다른 벌칙도 허용한다. 보트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벌칙은 부과될 수 있다.

#### **F.9.5 지원인력 또는 그가 지원하는 보트에 의한 상고**

해당 지원인력이 지원하는 모든 보트는 청문의 당사자이며, 상고의 권리가 거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 모두는 항의위원회의 판결에 대해서 상고할 권리가 있다. 항의위원회는 그것을 요청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된 판결문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F.9.6 지원인력에 대한 부정행위 혐의**

또한 항의위원회는 RRS 69.1 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원인력에 대한 청문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항의위원회는 RRS 69.2 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월드세일링의 <부정행위 지침> 문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청문을 진행하는 항의위원회에 좋은 자료이다. 이 매뉴얼의 RRS 2 와 RRS 69 에 관한 절 (G 절)은 항의위원회의 절차와 책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지원인력에 대한 혐의가 부정행위일 경우, 해당 지원인력이 지원하는 모든 보트들 또한 청문의 당사자이다. 비록 이 보트들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벌칙의 대상이 된다.

## G. Rule 2 and Rule 69

### G.1 공정한 범주와 부정행위

#### G.1.1 RRS 2 공정한 범주

RRS 2 는 보트와 그 선주가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의 원칙을 준수하며 경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이 규칙은 세일링의 여섯 가지 기본 규칙 중 하나이다. 보트, 항의위원회, 기술위원회 또는 경기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항의할 수 있다.

판결 사례집은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 138 은 대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하여 RRS 69 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트는 RRS 2 (공정한 범주)를 위반했다는 것이 확실히 판명된 경우에만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의 입증 기준은 증거의 우월성보다 높으며, 그 벌칙은 보트의 시리즈 성적에서 제외할 수 없는 실격 (DNE)이다.

항의위원회는 항의서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RRS 2 를 위반한 보트를 실격시킬 수 있다. RRS 2 는 RRS 69 와 같은 절차적, 형식적 보호장치가 없다. 선수의 행동이 RRS 2 의 위반일 수도 있다고 항의위원회가 판단한다면,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해당 보트에게 스포츠맨십 위반일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G.1.2 부정행위

**좋은 매너의 위반:** 좋은 매너의 위반인지 아닌지는, 다른 선수들, 운영요원, 또는 일반 대중이 그 행위로 인하여 불쾌함을 느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상황 A 에서는 괜찮았던 행위가, 상황 B 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상 생활에서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는 일부 젊은선수들에게는 그러한 말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불쾌하게 만드는지 깨닫기 힘들 수 있다. 또한, 대회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경우,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일관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특정 개인을 향한 욕설은, 혼잣말로 욕설을 섞어 자신에게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좋은 스포츠맨십의 위반:** 이는 RRS 2 를 위반하여 이득을 얻기 위하여 속임수 (cheating)를 쓰는 것, 예를 들어 청문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규칙 위반을 고의가 아닌 것으로 가정하는 일반적인 항의와 달리, 그 행위가 무모했는지 여부를 포함한 당사자의 의도나 태도는 스포츠맨십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 138 에는 부정행위로 판단되어야 할 행동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그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 청문에서의 거짓말;
  -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고의적인 규칙의 위반;
- 위협적인 행위 또는 신체적 접촉;
- 계측 서류 위조;
  - 운영요원의 합당한 요청의 불이행;
- 고의로 다른 보트를 파손하는 행위;
- 운영요원에 대한 욕설;
- 절도;
- 불쾌감을 주는 음주 행태;
- 폭력 행위.

항의위원회는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RRS 69 에 따른 청문을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청문 개최는 세일링 스포츠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 선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청문보다 가볍고 더 적절한 형태의 조정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RRS 69 에 따른 청문을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질 것이다.

## G.2 절차

월드세일링 부정행위 지침은 모든 운영요원들 - 특히 심판과 항의위원회를 위한 월드세일링의 세일링 경기규칙에 근거한 완전한 참고 자료이다. 이 자료는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misconduct” (부정행위)를 검색하고, submit (제출)을 클릭한 다음, “Documents” (문서)를 선택한다).

RRS 69 청문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른 청문들과 구분되며 차이점이 있다:

- RRS 69 에 따른 조치는 항의가 아니다;
- RRS 69 에 따른 조치는 보트가 아닌 선수, 선주 또는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 RRS 69 에 따른 조치는 오직 항의위원회만이 제기할 수 있다;
- 관련 보고를 받은 항의위원회는, 청문 개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항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대회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누군가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 다음, RRS 69 에 따른 청문을 제기한다.

### **G.2.1 항의위원회가 RRS 69 에 따른 조치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윤리적 행동에 대한 기준은 전 세계 선수들 사이에서 매우 다르며, 개인의 도덕성을 교육하는 것은 심판의 책임이 아니다. RRS 69.1(a)에 따라, 선수, 선주 및 지원인력은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여기서 부정행위란 좋은 매너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 또는 세일링 스포츠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RRS 2 와 RRS 69 에 의해 다루어진다. RRS 2 는 보트, 선주 및 승정원이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의 공인된 원칙을 준수하면서 경기하도록 요구한다. RRS 69 는 개인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며, 선수, 선주 또는 지원인력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항의위원회가 취해야 할 절차를 설명한다.

경기규칙을 고의로 위반한 선수, 선주 또는 지원인력에게 엄중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세일링 스포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항의위원회는 선수가 그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고의로 규칙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인 규칙 위반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선수가 속임수를 쓰거나, 청문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세일링 스포츠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RRS 69 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항의위원회는 지원인력의 행동이 대회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람들의 세일링 스포츠에 대한 즐거움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경우, RRS 69 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G.2.2 RRS 69 청문의 적용 대상?

RRS 69 는 모든 선수, 승정원, 선주 그리고 지원인력에게 적용된다.

선수가 지원인력을 대신하여 규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모든 규칙은 지원인력에게도 적용된다 (RRS 4.2). 또한, 자녀를 대회에 참가시키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규칙을 따를 것에 동의한 것이다 (RRS 4.1(b)).

부모 또는 기타 지원인력은 선수가 그들 (부모나 기타 지원인력)에게 RRS 을 따르게 할 권한이 없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도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RRS 69 에 따른 청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이의가 제기되고,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수가 RRS 4.2 를 위반하게 되어 실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원인력에게 조언한다. 이러한 조언은 지원인력이 자신들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이 점을 예비적인 사안으로 염두에 두고, 지원인력이 사실상 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지원인력이 실제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항의위원회가 확신 (예를 들어, RRS 4.1 과 4.2 를 포함하여 규칙을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치의 경우)할 경우, RRS 69 에 따른 청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항의위원회가 해당 지원인력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예를 들어, 규칙상 지원인력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그 지원인력을 상대로 RRS 69 에 따른 청문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며, 선수의 RRS 4.2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로 전환하여야 한다.

### G.2.3 부정행위의 시기 및 장소

부정행위는 반드시 해당 대회와 관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 행위는 대회를 목적으로 당사자가 대회장에 도착한 시점부터 대회 직전 또는 대회 기간 중에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대회장을 떠난 이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대회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면, 항의위원회는 대회가 시작 되기 전에 발생한 선수의 부정행위 혐의를 다루기 위한 RRS 69 청문을 임의대로 개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대회 이전에 선수가 대회 중 무언가를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다른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그 선수의 보트를 손상시키는 경우와 같이, 비록 행위 자체는 대회 이전에 발생하였더라도 대회와 충분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수로서 RRS 69 의 적용 대상이 된다.

부정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회장과 관계없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선수가 연루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대중들은 선수를 해당 대회와 연관지을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세일링 스포츠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고, 따라서 그 선수는 RRS 69 에 따른 청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그 싸움이 사적 또는 공공장소에서 선수와 대회에 관련 없는 일반인 사이에 발생하였고, 대중이 그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항의위원회가 RRS 69 에 따른 청문을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 **G.2.4 항의위원회의 준비**

항의위원회는 RRS 69 청문을 소집하기 전에 먼저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RRS 69 의 의미와 준수해야 할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RRS 69 를 주의깊게 읽고, 그 의미와 적용 결과를 논의하며, 잠재적인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RRS 부칙 M6 와 <월드세일링 부정행위 지침>을 다시 읽고, 준수해야 할 절차에 대하여 미리 고려한다. 항의위원회 내에서 절차를 계획하고, 위원들 간의 업무를 분담할 것; 한 명이 청문의 패널위원장을 맡고, 위원 중 한 명은 기록을 담당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청문일 경우, 가능하다면, 청소년의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코치가 청소년의 대표자 또는 조연자로서 청문에 참석하도록 주선한다. 또한 이 매뉴얼의 <심판과 청소년 선수>에 대한 절도 참조한다.

#### **G.2.5 조사관 임명, RRS 69.2(c) 및 (d)**

항의위원회는 청문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조사관 임명의 목적은 항의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항의위원회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가능하다면, 조사관은 RRS 69 의 절차에 익숙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항의위원회 위원일 수도 있고, 다른 경기운영요원이나 조직위원회의 관계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사관이 항의위원회 위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항의위원회의 이후 판결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조사관은 당사자들, 사건을 보고한 사람 또는 사람들, 증인, 그리고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각각 인터뷰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모든 출처로부터 얻은 모든 증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 기록은 서면 또는 인터뷰의 음성 녹음 형태일 수 있다.

공정성과 RRS 69.2(d)에 따라, 조사관이 수집한 모든 증거는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불문하고 항의위원회에 공개되어야 하며, 항의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청문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청문이 소집될 경우, 조사관의 조사 결과는 당사자들이 청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제공된다.

조사관은 RRS 69.2(c)에 따라 항의위원회에 의해 임명되어 해당 청문에서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조사관은 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참고: 주요 국제대회들은 월드세일링 윤리 강령 (World Sailing Code of Ethics)에 의하여 규정된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이 강령은 조사관 (이벤트 징계 조사관, Event Disciplinary Investigation Officer 으로 알려짐)의 임명과 역할에 대해 다룬다. 또한 항의위원회가 월드세일링에 보고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 매뉴얼은 이러한 절차를 다루지 않으므로, 이러한 중요 대회에서, 부정행위의 혐의를 처리할 경우, 윤리 강령 (Code of Ethics)을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 **G.2.6 당사자 서면 통보**

항의위원회가 항의 청문 중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청문에서 RRS 69 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항의위원회는 해당 청문이 종료된 다음, 혐의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비록 당사자가 기존의 청문에서 관련 혐의에 대하여 즉시 다루고 싶어 하더라도, 일단은 새로운 청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답변을 준비할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혐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증인을 확보하며, 청문이 진행되는 동안 도움을 줄 조연자 및 대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정을 잡아야 한다. 이는 종종 다음 날이 되는 경우가 많다.

RRS 69 위반 혐의가 제기된 사람에게 전달할 서면 혐의 진술서를 준비한다. 그 혐의 진술서에는 RRS 69.2 에 따른, 부정행위의 혐의가 제기된 특정 행동 또는 행동들이 가능한 한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거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좋은 매너를

위반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정행위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여야 한다. 또한 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선수가 항의위원회의 판결이 틀렸다고 말했다.'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그 대신, "판결문을 들은 다음 즉시, 선수가 큰 소리로 항의위원회의 판결이 틀렸다고 말하며, 항의위원회 위원들을 '멍청이들'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다.'라고 말했다"라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비속어가 사용되었을 경우, 통지서에는 해당 언어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세한 설명 없이 이를 의역하여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 함'이라고 하기보다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상스러운 단어를 사용함' 이라고 하여야 한다.

훌륭한 통지서의 기준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제 3 자가 통지서를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혐의가 분명한 부정행위라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지서에는, 가능한 경우,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 그리고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신원도 명시하여야 한다.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선수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청문의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은 통지서에 제기된 내용 외의 다른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내려질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청문 중 제시된 증거가 통지서의 혐의와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 추가 서면 혐의서를 제공하고 준비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청문을 연기하여야 한다. 대안으로,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추가 부정행위에 대해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리고, 이를 준비할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지 여부를 당사자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이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RRS 69.2(j)에 따른 보고서의 일부로 기록하여야 한다.

통지서의 예시는 월드세일링 문서인 부정행위 지침 부칙 K (Misconduct Guidance Appendix K)에서 찾을 수 있다.

### **G.3 RRS 69 청문**

청문하는 동안,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올바른 절차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공정성을 위하여 선수 또는 지원인력에게 최대한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RRS 69 청문에서는 격식을 갖춘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당사자에게 반드시 혐의들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며,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기록한다. 부정행위 청문은 반드시 RRS 69.2(e)에 의해 수정된 대로, RRS 63 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항의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녹음하거나 비디오로 녹화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청문에서 생긴 일이나 제기된 증거들에 대하여 추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매우 유용할 경우가 많다. 특히 월드세일링이나 국가협회가 윤리 강령에 따른 추가 절차를 밟을 경우, 또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 (CAS)로 이관되어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녹취나 녹화를 할 경우, 청문을 시작하기 전에, 선수와 선주 또는 지원인력과 증인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또한 녹취 기간과 녹취 자료가 공유될 기관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녹취할 수 없다. 당사자의 동의만 있고, 증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청문 자체는 녹취할 수 있으나 해당 증인의 증언은 녹취할 수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취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적으로 사법기관 (검찰과 경찰)에게만 주어진다. 항의위원회는 법률집행기관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전자기록에 대한 개인적 동의가 없을 경우, 항의위원회는 진술서에 대한 구두 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 기록만을 남길 수 있다.

상고 또는 추가 절차에 필요할 경우, 당사자는 녹취 기록의 사본을 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그 녹취 기록은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기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에 먼저 동의하여야 한다. 녹취 기록 보관 기간의 만료 후, 특히 상고 또는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녹취된 모든 사람은 그 녹취 기록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녹취 기록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 상업적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여 그 녹취록을 제공할 수도 있다.

부정행위란 규칙, 좋은 매너 또는 스포츠맨십의 위반 또는 세일링 스포츠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행위일 수 있다. RRS 69.2(g)는 주장된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유념하여 해당 당사자가 RRS 69.1(a)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항의위원회가 "충분한 납득" 수준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입증 기준에 대한 아래의 설명은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 122 에 기초한 것이다.

### **G.3.1 충분한 납득**

입증 기준인 충분한 납득은 증거의 우월성보다 높은 기준이다. RRS 69 청문에서, 항의위원회는 RRS 69.2(h)와 69.2(i)에 따라 선수, 선주, 지원인력에게 벌칙을 부과하기 전에 아래 두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 위원회는 판명된 사실들이, 혐의가 제기된 행위가 발생했음을 입증한다고 충분히 납득하는가?
- 위원회는 발생한 행위가 부정행위였다는 것에 충분히 납득하는가?

항의위원회가 충분한 납득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위원 전원이 납득할 필요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과반수가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입증 기준은 월드세일링의 동의하에 국가협회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충분한 납득은 스포츠 중재재판소 (CAS)가 도핑사건에서 사용하는 기준이다.

### **G.3.2 벌칙의 감경과 가중**

항의위원회가 청문의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결정하였다면, 벌칙부과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벌칙을 부과한다면, 항의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전형적인 사례와 비교하여, 벌칙을 낮출 수 있는 감경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유사한 부정행위의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엄격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가중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 반성이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는 RRS 69 청문에 회부된 것이나 벌칙을 받을 것에 대한 뉘우침과는 다르다. 해당 행위가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이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정성 있고 자발적인 사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고려한다.

### **G.3.3 당사자의 불참**

당사자가 청문에 참석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RRS 69.2(f)에 따라 항의위원회는 청문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청문에 참석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 항의위원회가 당사자 없이 청문을 진행 할 수 있다. 만약 항의위원회가 당사자 없이 청문을 진행하였고, 당사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기로 하였다면, RRS 69.2(j)에 따른 보고서에 판명된 사실과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RRS 69.2(k)에 따라, 항의위원회가 당사자 없이 청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당사자가 참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청문일정을 잡을 수 없다면, 항의위원회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혐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당사자의 국가협회에 보고하거나 또는 월드세일링 윤리 강령에 기재되어 있는 국제 대회인 경우, 월드세일링에 보고하여야 한다.

RRS 69.2(k)는 항의위원회가 대회를 마치고 떠난 뒤 RRS 69.1(a)에 따른 위반 혐의가 접수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경기위원회나 조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새로운 항의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 **G.3.4 혐의 기각**

항의위원회가 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판결을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RRS 69 청문에 대한 소식은 대회 전체에 알려지므로,, 해당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 **G.3.5 벌칙**

부정행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벌칙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부정행위 이후에 그 행위에 대하여 진솔한 사과를 하였다면, 경고를 주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한 개의 DNE 또는 그보다 가벼운 벌칙은 일반적으로 국가협회에 보고하지 않는다 (아래 RRS 69.2(j)(3) 관련 내용 참조). 만약 부과된 벌칙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대회 또는 대회장에서 배제되었다면, 항의위원회는 해당 국가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의위원회는, 적절할 경우, 선수와 그 보트가 대회 또는 시리즈에 더 이상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항의위원회는 관할권이 미치는 대회 현장 외에는 벌칙을 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항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칙은 해당 대회 전체에서의 실격이다.

또한, 항의위원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권 이내에서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항의위원회는 그들의 관할권 이내에서, 정의의 <규칙>에 명시된 대회를 통제하는 규칙, 그리고 대회공고 또는 범주지시서에 명시된 규칙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식게시판에 게시되는 일반적인 청문결과 외에, 통상적으로 다른 내용들은 공표하지 않는다. (월드세일링 문서 부정행위 지침에서 제안한 문구 참조).

## G.4 청문 이후

판결의 당사자는 자신의 국가협회나 월드세일링과 같이 본인에게 추가적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또는 상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청문절차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 G.4.1 판결에 대한 상고

당사자는, 항의위원회가 RRS 부칙 N 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국제심판단이 아니거나, RRS 70.3 에 따라 상고의 권리가 거부되지 않는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

### G.4.2 국가협회 또는 월드세일링에 보고

한 개의 DNE 또는 그보다 가벼운 벌칙이 부과되었을 경우, 국가협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한 개의 DNE 보다 무거운 벌칙을 부과한 경우, 해당 사건은 당사자의 국가협회, 또는 월드세일링 윤리 강령에 기재되어 있는 국제대회인 경우, 월드세일링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협회는 이 사건의 추가적인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 보고서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항의위원회가 추가적인 벌칙이 적절한지 여부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보고서는 가능한 한 빨리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지나친 보고 지연은, 스포츠에서의 징계 행정을 불명예스럽게 만든다. 그 보고서의 사본은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RRS 69.2(j)(3)은 항의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안의 경우, 국가협회에 그 판결을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한 개의 DNE 또는 그보다 가벼운 벌칙을 부과하였을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항의위원회는 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당사자에게 보내는 통지서에도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항의위원회가 그의 권한 내에 있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국가협회에 임의로 보고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예를 들어, 많은 승정원이 있는 킬 보트에서, 한 승정원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보트와 승정원 전부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대회의 항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국가협회나 월드세일링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항의위원회는 단지 어려운 부정행위 문제 처리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RRS 69 청문을 개최하지도 않은 채 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G.4.3 국가협회의 조치

항의위원회가 국가협회에 보고해야 할 경우, 증인들의 머릿속에 해당 사건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동안, 최대한 많은 증거와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항의위원회가 받은 녹취된 증거가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추후 다른 징계기관이 최선의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 **G.4.4 소송**

과거에, 몇몇 선수들이 항의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적이 있다. 사전에서는 명예훼손을 “서면 또는 영구적인 진술서, 사진 등과 같이 영구적인 형태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공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신의 업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보험에 (조직위원회나 국가협회 등에 의해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운영요원의 개인적인 책임이다. 월드세일링은 월드세일링 운영요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항의위원회 위원들이 민사재판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그들이 패소할 수도 있지만, 소송 방어비용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RRS 4 에 따라, 선수, 선주 그리고 지원인력은 규칙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과 상고 및 재심 절차에 따라 부과된 벌칙이나 취해진 기타의 조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법원은 RRS 69 에 따라 항의위원회가 판결을 결정하는 규칙보다 그들이 더 우선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 H. RRS 부칙 T 중재

### H.1 머리말

RRS 부칙 T <중재>는 대회공고나 범주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경기-후 벌칙'과 '중재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후 벌칙: RRS 44.1(b)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트는 제 2 장의 규칙 또는 RRS 31 위반에 대해서 경기-후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보트가 자신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30% 득점벌칙>을 받게다고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경기를 마친 후, 중재회의 전 또는 중재회의 중, 그리고 항의청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중재회의: 두 번째는 항의자와 피항의자가 숙련된 심판인 중재자와 함께 중재회의를 하는 것이다. 선수들은 각각 수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심판은 해당 항의가 유효한지, 보트가 규칙을 위반하였다면 어느 보트가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경기-후 벌칙의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항의자는 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를 담당할 심판은 항의위원회를 대신하여 철회를 승인할 수 있다.

### H.2 중재자

중재회의를 진행할 심판은 경험이 매우 많고 규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야 한다. 또한 신속하게 사고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해당 심판은 RRS 부칙 T, 항의의 유효성, 제 2 장의 규칙, RRS 31, 그리고 RRS 44.1(b)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훌륭하고 사려가 깊지만 판결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심판은 중재를 담당할 심판으로는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복잡한 사건을 판결하는 청문에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제심판단이 임명되어 있을 경우, 중재회의를 진행할 심판은 항의위원회의 위원이어야 한다.

항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중재를 진행했던 심판은 해당 항의를 청문하는 항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H.3 경기-후 벌칙

경기-후 벌칙과 중재회의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회공고나 범주지시서에 RRS 부칙 T <중재>가 규칙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경기-후 벌칙 시스템과 중재회의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기-후 벌칙이, 이후의 항의청문에서 보트가 받을 실격보다는 가볍고, 사건 당시 수상에서 그 보트가 이행할 수 있었던 어떠한 벌칙보다는 무거워야 한다.

벌칙이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 선수는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항의청문에서 실격(DSQ)을 피할 수 있을 가능성에 기대어 청문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리적으로 따져보면, 해당 보트의 순위가 나쁠수록, 청문에서 받게 될 실격(DSQ)과 대비해서 경기-후 벌칙이 주는 이점이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벌칙이 너무 가벼운 경우에는, 항의를 제기한 보트가 항의를 철회할 것이라는 기대로, 수상에서 '돌기 벌칙'을 이행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RRS 부칙 T <경기-후 벌칙>은 DNF 점수의 30%이며, 소수점 이하 한 자리 점수로 반올림한다(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조직위원회는 범주지시서에서 RRS 부칙 T1(b)를 수정하여, 백분율(%)을 변경하거나, 또는 일정 점수 벌칙을 주는 것으로 경기-후 벌칙을 변경할 수 있다.

다른 득점벌칙들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보트들의 피니시순위는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보트가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합당할 경우, RRS 부칙 T <경기-후 벌칙>은 모든 보트가 선택할 수 있다. 상해 또는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였거나, 또는 규칙 위반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그 보트는 리타이어하는 것 이외의 다른 벌칙을 선택할 수 없다. RRS T1(a)와 44.1(b) 참조할 것.

경기-후 벌칙은 경기 종료 후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항의청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즉 중재회의 전, 중재회의 중, 중재회의 이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청문이 재청문되는 경우에는 경기-후 벌칙을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항의위원회의 판결이 국가협회에 상고되어, 국가협회가 재청문을 결정한 경우에도 경기-후 벌칙은 선택할 수 없다. 이러한 선택 권한은 최초의 청문이 시작된 시점에 종료된다. RRS T1(a) 참조.

항의위원회에서 보트가 고의로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그 보트는 RRS 2 를 위반한 것이다. RRS 2 는 제 1 장에 속한 규칙이므로, 이 경우 경기-후 벌칙은 그 보트에게 적용할 수 없다.

RRS 부칙 T 에 명시된 경기-후 벌칙의 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 보트가 (경기를 마치고) 육상으로 돌아온 다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 2 장의 규칙 또는 RRS 31 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경우, 그 보트는 리타이어 (RET)하는 대신 경기-후 벌칙을 선택할 수 있다.
- 경기-후 벌칙을 선택한 보트는, 해당 사건에서의 규칙 위반으로 상해 또는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였거나, 또는 규칙 위반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것을 항의위원회가 밝혀낸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로 벌칙받지 않는다.

#### H.4 중재의 원칙

중재는 항의서가 접수되고 난 다음, 그리고 청문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루어진다. 중재회의에서 중재심판의 역할은 항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비록 그 과정이 비공식적이고 보트들이 중재심판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RRS <제 5 장>의 규칙에 명시된 항의청문과 판결에 대한 모든 절차적 보호 장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경기-후 벌칙을 선택하였더라도, 항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RRS 60.5(a)에 따라 항의위원회는 이를 청문하여야 한다. 항의자가 항의의 철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사건을 중재한 심판은 항의위원회를 대신하여 철회를 허용할 수 있다.

중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절하다:

- 위원회가 아닌 보트에 의한 항의인 경우.
- RRS 44.1(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보트도 해당 사건으로 상해나 중대한 손상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벌칙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경기 또는 시리즈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

- (중재를 할 수 있는) 사건은 <제 2 장>의 규칙 또는 RRS 31 에 국한된다. <제 2 장>의 규칙 또는 RRS 31 이 아닌 다른 규칙이 적용되거나 또는 다른 보트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재심판은 중재회의를 종료하고 항의위원회로 사건을 이관한다.
- 두 척의 보트만 관련된 사건인 경우, 세 척 이상의 보트가 관련된 항의는 15 분 이내에 중재하기에는 너무 복잡할 수 있다.
- 중재회의는 항의자가 항의의 철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며, 여전히 항의위원회가 청문할 수 있다. 중재심판은 항의가 철회되기 전에는, 적용 규칙이나 규칙 해석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거나 어떠한 결론에 관한 질문에도 답변해서는 안 된다.

## H.5 중재 절차

항의가 대회본부에 접수되면 심판이 해당 항의가 중재에 적합한 경우인지 검토한다. 청문은 일정을 잡아야 하며, 그리고 당사자들이 도착하면 중재회의가 열린다. 청문 일정은 일부 항의가 청문 이전의 중재 과정에서 철회될 수 있음을 예상하여 계획할 수 있다. 대규모 대회에서는 둘 이상의 심판을 중재 담당으로 대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중재회의가 진행되지 않으며, 항의청문은 예정된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 피항의자에게는 중재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청문요청서를 열람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중재회의는 다른 선수와 옹저버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공간에서 개최한다. 앉아서 진행하기보다 일어서서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회의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오직 항의의 당사자들만이 진술할 수 있으며, 증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재가 실패하여, 이 사건이 청문으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잠재적 증인도 중재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의 증언을 엿듣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중재회의의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수습 심판 또는 심판 평가관이 중재회의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중재회의에서 옹저버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옹저버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 대회에서 당사자의 부모에게 중재회의 참관을 허락할 경우, 그들에게 단지 참관만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RRS 63.4(e)는 중재회의의 옵저버가 청문에서 증인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첫 단계는 심판에게 이해 상충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심판은 중재회의의 절차와 15 분 정도의 소요 시간, 그리고 당사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다음 단계는 해당 보트가 상해나 중대한 손상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RRS 44.1(b)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RRS 부칙 T1(a) 및 T2 에 따라 해당 보트는 경기-후 벌칙을 수락할 수 없다. 이 경우, 중재회의는 열리지 않으며,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종료된다.

심판은 중재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해당 항의가 중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규칙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경기-후 벌칙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재회의는 종료되며,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항의청문이 진행된다.

그 다음 단계는, 항의의 유효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항의위원회가 해당 항의를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항의서와 항의자의 진술이 명백히 RRS 60.2 및 60.3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경우, 심판은 항의위원회가 해당 항의를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준다. 그 내용을 들은 다음, 항의자는 항의 철회를 요청하거나 항의위원회의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중재회의는 종료된다.

항의자의 최초 진술 이후, 항의가 명백하게 유효하거나 무효일 경우, 유효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 중재심판의 업무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항의가 명백히 유효하지도, 무효하지도 않은 경우가 훨씬 더 흔하다. 이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중재회의에서 유효성을 판단하는 작업은 방대한 조사의 성격을 가질 수 없으며, 주어진 증거 내에서 신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증인을 소환할 수 없으며, 광범위한 질문을 통하여 유효성이 해결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 두 당사자 모두 중재심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가 침해될 위험은 없다.

- 항의자가 소리지르고 빨간기를 올렸었다는 진술과 피항의자가 이를 듣거나 보지 못했다는 (서로 상충되는) 진술이,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심판은 증거의 우월성에 근거하여, 해당 항의가 규칙에서 요구하는 유효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사건이 중재에 적합한지 의구심이 든다면, 중재를 종료하고, 항의청문을 진행한다.

중재심판이 판단하기에 해당 항의가 유효하며 RRS 44.1(b)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중재회의를 계속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심판은 모형 보트를 사용하여 당사자들의 증거를 수집한다. 심판은 필요한 질문을 하되, 당사자들의 증언이 핵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한다.

심판은 RRS 부칙 T3 에 따라, 항의위원회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판결에 대해 다음 의견 중 하나를 제시한다:

- 항의는 무효이다;
- 규칙 위반으로 벌칙을 받는 보트는 없다; 또는
- 하나 이상의 보트가 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을 받을 것이며, 벌칙을 받을 보트와 해당 벌칙을 알려준다.

심판은 다른 보트의 규칙위반으로 어쩔 수 없이 규칙을 위반하게 된 보트에 대하여 면책의 원칙을 적용한다.

중재회의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RRS 부칙 T 에 따라 중재심판은 항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말하며 답변을 피하는 것은 중재심판의 선택지가 아니다.

심판이 제시하는 의견으로는 '이 사건이 청문으로 넘어갈 경우, 항의위원회는 아마 ○○○ 라고 판결할 것이다...'와 같은 것이다.

중재심판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당사자는 청문이 시작되기 전 언제든지 경기-후 벌칙을 받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중재회의에서 규칙 위반으로 벌칙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들은 당사자가, 중재회의가 종료된 후 코치나 다른 사람들과 상의한 다음, 항의청문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와 경기-후

벌칙을 수락하는 경우도 흔하다. 보트는 항의청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경기-후 벌칙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한, <경기-후 벌칙>을 받아들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의자는 항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심판은 철회를 허용할 수 있다.

항의가 철회되면, 항의위원회에 해당 항의가 청문으로 진행되지 않음을 알리고, 채점담당관에게 이번 항의로 인한 성적 변경이 없음을 통보한다. 이후 시간이 허락할 경우, 중재심판은 당사자들과 해당 사건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다. 시간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나중에 만나도록 일정을 조정한다.

항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은 반드시 항의위원회에서 청문되어야 한다.

때때로 항의자는 중재가 실패하였을 경우에 열릴 항의청문에서, 피항의자가 실격 (DSQ)될 것이라고 오해하여 항의를 철회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심판은 보트가 경기-후 벌칙과 같은 적절한 벌칙을 받았을 경우, RRS 60.5(c)(2)가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RRS 44.1(b) 또는 RRS 2가 적용되기 때문에, 항의위원회가 경기-후 벌칙이 적용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후 벌칙을 받은 보트에게 추가 벌칙을 부과할 수 없다.

(중재가 실패하여) 청문으로 진행될 경우, 중재를 담당했던 심판은 해당 청문의 패널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심판은 청문 전 또는 청문 중, 항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중재회의에서 얻은 정보에 대하여 거론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청문의 당사자들은 중재회의에서 제시하였던 진술과 증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항의청문에서 제시된 정보가 중재회의에서 제시되었던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와 항의위원회는 질문할 수 있다.

## **H.6 상고 불가**

중재회의에서 심판이 제시한 의견과, 그에 따라 당사자들이 내린 결정은 재청문 또는 상고의 대상이 아니다. 항의가 철회된 경우에는, 항의위원회의 판결이 없으므로 상고할 수 없다.

## **H.7 장점과 단점**

모든 대회에서 중재가 적합한 것은 아니다. 참가자 및 클래스협회는 자신들의 대회에서 RRS 부칙 T 또는 그 일부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대회에서는 중재회의 없이 RRS T1, 경기-후 벌칙만을 적용할 수도 있다.

RRS 부칙 T에 따른 중재의 장점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도 항의 당사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이다. 이는 규칙을 위반한 보트가 실격보다 가벼운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경기-후 벌칙 30%는 상위 2/3에 해당하는 보트에게만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 하위 순위의 보트가 30%의 경기-후 벌칙을 부과받는다 하더라도 실격 점수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 또한, 수준높은 대회에서는 일부 보트가 분쟁을 해결할 의도가 없이 중재회의에 참석하여, 단지 상대방의 증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중재와 이후의 청문을 모두 진행하게 되어, 중재없이 처음부터 청문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I. RRS 42 와 RRS 부칙 P 를 포함한 수상에서의 판결

## I.1 머리말

이 장에서는 심판이 수상에서 경기를 관찰할 때의 활동을 다루며, RRS 부칙 P 가 적용되어 RRS 42 에 관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포함된다.

## I.2 규칙 준수 관찰하기 - 일반

식별하기 쉬운 심판 보트를 탄 심판들이 수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규칙 준수 향상과 경기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심판이 가까이에서 관찰할수록, 선수들은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심판이 지켜보고 있는데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보트는 벌칙을 받거나 항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평소에 규칙을 잘 지키던 대부분의 선수들은, 규칙을 위반하는 선수들을 따라잡기 위하여 RRS 42 를 위반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덜 느끼게 된다. 심판이 그 사건을 보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선수들은 규칙을 준수하거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벌칙을 이행하거나 항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고성능 클래스, 포일링 클래스 및 카이트 클래스에서 심판 보트를 적절히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보트나 보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최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해당 클래스에 대한 심도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클래스에 경험이 없는 심판은 그 클래스에 대한 지식을 갖춘 심판과 짝을 이루어야 한다.

다른 우선 고려 사항이 없을 경우, 심판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할 경우, 심판은 항의청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인이 될 수 있다.

세일링 스포츠의 기본 원칙은 규칙 준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심판이 아니라 선수 자신과 동료 선수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이 수상에서 목격한 모든 사건이 항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심판들은 RRS 2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의 명백한 위반을 목격한 경우를 제외하고, RRS <제 2 장>의 규칙 위반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는다.

또한 심판은 구제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위원회의 실책 또는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I.3 경기위원회와의 연락

많은 클래스들은 RRS 42 조의 금지된 동작에 대하여, 일정 풍속을 넘을 경우 이를 허용하고, 일정 풍속을 넘지 않을 경우 이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된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풍속이 규정치를 초과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경기위원회는 스타트 때 또는 마크에서 "O 기" 또는 "R 기"를 올리는 것으로 펌핑, 로킹 및 우칭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클래스의 경우, 심판이 RRS 42 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위원회와 심판들은 이러한 신호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선 통신이 어려울 경우, 심판은, 클래스규칙의 적용 (RRS 42 관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신호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선두 그룹들과 함께 마크 근처에 위치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 **1.4 준비해야 할 장비**

대회에 앞서, 항의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에서 RRS 42 를 판결하는데 적합한 보트를 섭외하여야 한다. 해당 구역의 수상 조건에 적합한 보트란, 현지 상황에서 심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수역에서 경쟁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트를 말한다. 해당 구역의 수상 조건에 적합한 보트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심판은 수상에서 RRS 42 를 판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심판 보트는 심판이 판결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종류여야 한다. 심판 보트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바닥이 단단해야 하며, 심판이 보트를 따라갈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두 명의 심판이 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심판은 선수들 가까이에서 보트를 조종하게 되므로, 바람을 가로막거나 파도를 일으키는 것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으로 설계된 보트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Rigid Inflatable Boat (RIB)가 사용된다.

경험이 풍부한 심판이 심판 보트를 운전하고, 추가 인원은 탑승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심판들이 대여받은 보트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항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조직위원회와 이 문제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른 심판은 깃발을 담당한다.

심판 보트는 관람정, 일반 보트 및 지원 보트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심판 보트에 양방향 무전기를 갖추면, 심판들 간 그리고 경기위원회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수상에 나갈 경우, 심판은 최소한, 방수 노트, 음성녹음기, 범주지시서, RRS 42 와 관련된 해당 클래스규칙, 그리고 <RRS 42 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RRS 부칙 P 에 따라 RRS 42 를 즉결판결하여야 할 경우, 심판은 선수에게 벌칙을 신호할 노란기와 호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 **I.5 RRS 부칙 P – RRS 42 를 위한 특별 절차**

RRS 부칙 P 는 수상에서 RRS 42 를 위반한 보트에 대한 벌칙 부과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관련된 벌칙 유형도 명시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올림픽 클래스와 기타 센터보드 클래스 대회에서, RRS 42 의 준수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RRS 42 위반에 대하여 수상에서 즉각적인 벌칙을 부과하는 판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절차는 1992 년 올림픽 경기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RRS 부칙 P 에 따른 RRS 42 에 대한 수상에서의 판결은 이제 완전히 확립되었다. 선수와 코치들도 심판이 수상에서 규칙 위반을 억제하고, 규칙 위반을 목격하였을 때 다른 선수들을 대신하여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유의할 점은, 불법 추진 (RRS 42 위반)에 대한 보트 간 항의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판이 RRS 부칙 P 에 따라 RRS 42 에 대한 즉결판결을 해야 하는 대회의 심판 임명을 수락하는 경우, 해당 심판은 기존의 RRS 42 와 월드세일링에서 출판한 <RRS 42 에 대한 해석>을 숙지한 다음, 최선을 다하여 이를 집행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수상에서 RRS 부칙 P 에 따른 즉결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심판이 RRS 42 의 위반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심판은 수상에 없는 것이 더 낫다. 또한, RRS 42 위반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심판은 선수와 코치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심판은 RRS 42 와 수상에서 어떤 경우에 RRS 42 의 위반으로 벌칙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심판은 규칙서에 있는 RRS 42 와 <RRS 42 에 대한 해석>을 따라야 한다. 만약 심판이 해당 규칙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월드세일링이 문서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규칙 변경을 위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 **I.6 선수에 대한 브리핑**

청소년 대회에서, 심판은 경기수역에서 선수들이 RRS 42 를 잘 지키는지 관찰할 것이며, RRS 42 를 명백히 위반한 선수를 발견한다면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규칙을 준수하는 정직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판들이 수상에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판들은 불법 추진을 예방하고, 필요할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브리핑에 참석한 부모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의 적이 아니라 아군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비록 심판이 수상에 있더라도, 선수들은 여전히 RRS 42 를 위반한 보트를 항의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 I.7 RRS 42 추진

는 RRS 42.1 <기본 규칙>, RRS 42.2 <금지된 동작>과 RRS 42.3 <예외 조항>으로 구성된다.

월드세일링은 <RRS 42 에 대한 해석>을 발행하고, 이를 RRS 42 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으로 인정하며, 월드세일링은 이를 수시로 검토하고 개정한다. 이 해석은 선수들이 자신의 보트를 어떻게 범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며, 동시에 심판들이 수상에서 RRS 42 를 판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일부 클래스들은 클래스규칙에서 RRS 42 를 변경하였으며, 이는 수상에서의 즉결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수상에서 RRS 42 에 대한 즉결벌칙을 시행하는 목적은 모든 선수가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을 지키면서 범주하는 선수를 보호하는 것이다. 심판은 일관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히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누구라도 규칙을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여야 한다. 전체 심판단의 판단이 모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점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심판들 간에 각자의 관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심판은 대회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대회에 임하여야 한다. 대회 기간 중 워밍업 하는 날은 없다. 연습 경기 역시 실제 경기와 동일하게 판결되어야 하며, 그래야 선수들은 심판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각 클래스 내에서, 그리고 여러 클래스가 함께 진행되는 대회에서는 클래스 간에도 RRS 42 판결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각 심판 보트에 두 명의 심판이 탑승하게 되는데, 그 중 한 명의 심판은 대회 기간 내내 하나의 클래스만 맡아서 심판을 하고, 다른 한 명의 심판은 다른 날에 교대로 다른 클래스 심판을 담당함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올림픽과 월드세일링 대회에서 심판을 배치하는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 방식은 특정 종목에 전담하기를 선호하는 심판과 그렇지 않은 심판 모두를 수용할 수 있어, 심판진 운영에 매우 효과적이다.

<RRS 42 에 대한 해석>과 다양한 클래스에 적용되는 RRS 42 판결을 위한 지침은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rule 42”를 검색한 후, 제출 (submit)을 클릭하고 “Documents”를 선택한다.)

## 1.8 벌칙 부과 여부 결정

첫 번째 경기에 앞서, 심판은 특정 클래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RRS 42 위반 유형과 어떤 경우에 심판이 보트에게 벌칙을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심판은 최근 참가했던 대회에서 목격한 동향과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여야 한다. 대회 기간 중에는 부과된 벌칙과 심판이 목격한 선수들의 특이한 몸 동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 특정 선수를 지목하여 논의해서는 안 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 심판은 선수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위반이 확실한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반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공정하게 범주하고 있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심판은 모든 보트가 비슷한 정도로 규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각 클래스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금지된 동작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심판들은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규칙을 위반하는 보트에게 벌칙을 부과하여야 한다.

심판은 RRS 42 의 위반을 확실하게 목격하였고, 규칙 및 월드세일링의 해석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규칙 위반을 선수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에만 벌칙을 부과하여야 한다. 즉결판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보트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벌칙 역시 첫 번째 벌칙과 동일한 기준으로 벌칙이 부과되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심판은 매일 수상에서 관찰한 사항과 몸 동작이 월드세일링의 <RRS 42 에 대한 해석>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심판은 대회 성적이나 노란기 벌칙의 횟수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보트가 RRS 42 를 위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징후 중 하나는 그 보트, 리그 또는 세일, 또는 선수의 몸 움직임이 다른 보트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심판은 보트가

RRS 42 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해당 행동과 그 행동으로 인한 영향을 모두 관찰하여야 한다.

벌칙을 부과하기 전에 심판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판결을 할 수 있다.

- 규칙 위반 가능성을 관찰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에 있을 것.
- 자신이 본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 선수의 움직임이 보트나 세일에 미치는 영향과 연결할 것.
- 해당 움직임이 금지된 동작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

심판이 자신과 동료 심판에게 던져야 할 질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펌핑의 가능성**

- 서핑, 포일링 또는 플레이닝 조건이 존재하는가?
- 선수가 서핑, 포일링 또는 플레이닝을 하는 동안 세일을 펌핑하고 있는가?
- 세일을 당겼다 늦추었다 하는 동작이 상황에 따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가?
- 반복적으로 세일을 당겼다 늦추었다 하는 동작이 세일에 바람을 일으키는가?
- 인위적으로 펌핑을 하지 않았는데, 리치의 펄럭임 (flick)이 생겼는가? (Pump 4 에 의하여 허용됨)
- Pump 4 : 시트를 풀었다가 갑자기 멈추면서 생기는 세일의 펄럭임 (flick)은 허용된다.
- 리치의 펄럭임이 몸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가?

#### **로킹의 가능성**

- 선수가 인위적으로 보트의 롤링을 일으키고 있는가?
- 선수가 인위적으로 백그라운드 롤링을 증폭시키고 있는가?

- 선수가 유발한 롤링이 보트 조종에 도움이 되는가?
- 롤링의 정도와 보트의 방향전환 정도가 일치하는가?
- 보트의 롤링이 파도의 패턴과 일치하는가?

### 우칭의 가능성

풍하코스에서:

- 선수가 몸을 급격하게 앞으로 움직였다가 갑자기 멈추는가?

풍상코스에서:

- 파도가 있는가?
- 선수의 움직임이 파도와 일치하는가?
- 세일이 펄럭이는가?
- 리치의 펄럭임은 파도에 의한 것인가?
- 다른 보트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

### 스컬링의 가능성

- 킬러의 움직임이 강력한가?
- 보트를 어떤 방향으로든 추진시키거나 보트가 후진되는 것을 막고 있는가?
- 보트가 클로스-홀드보다 위쪽에 있다가 명백히 클로스-홀드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고 있는가?
- 스컬링이 이전 스컬링을 상쇄시키고 있는가?
- 선수가 역세일 중일 때, 스컬링으로 보트의 침로 변경을 막고 있는가?

### 반복적인 태킹과 자이빙

- 태킹과 자이빙을 얼마나 짧은 간격으로 자주 하는가?

- 자이빙을 하여 보트의 진행 방향을 변경하였는가?
- 반복적인 태킹이나 자이빙이 전술적인 이유나 바람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 일반적인 사항

심판은 위에서 언급된 것 외에도, 모든 RRS 42 위반 행위를 관찰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른 보트를 밀치면서 보트를 추진시키거나, 발 또는 몸을 물에 넣어 보트의 속도를 줄이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 1.9 즉결판결 절차

심판은 RRS 42, <RRS 42 에 대한 해석>, RRS 부칙 P <RRS 42 를 위한 특별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RRS 부칙 P 는 RRS 42 에 대한 수상에서의 즉결판결과 그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매일 수상에 나가기 전, 심판들은 자신의 지식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RRS 42 와 그 해석, 그리고 클래스규칙의 모든 변경 사항을 다시 숙지하여야 한다.

경기 중 수상에 있는 심판은 플리트 전체를 관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주된 초점은 플리트의 선두 3 분의 1 에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위 선수들이 플리트 전체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RRS 42 위반은 전술 및 기술적 측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전술적 위반은 짧은 시간동안 즉각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행하여 진다. 이러한 위반은 전형적으로, 스타트 때, 항로권 보트와 교차하는 동안, 마크의 구역 근처, 또는 피니시 때 발생한다.
- RRS 42 의 기술적 위반은 코스를 범주하는 동안 발생하며, 선수의 통상적인 세일링 스타일의 일부이다.

기술적 위반일 경우, 통상적으로 심판 보트에 있는 두 심판은 보트에게 벌칙을 부과하기 전에 그 동작이 기술적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위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보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되, 심판이 위반을 확신하면 즉시 벌칙을 부과하여, 규칙을 준수하는 다른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여야 한다.

명백한 전술적 위반을 목격한 심판은, 독립적으로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야 한다.

### 1.9.1 벌칙 신호

심판들이 보트에 벌칙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한 명의 심판은 벌칙의 모든 신호와 기록을 책임지고, 다른 한 명은 운전 집중하여야 한다.

신호를 담당하는 심판은 즉시 노란기를 높이 들어 올리고, 심판 보트가 보트에게 벌칙을 소리지르기 위한 위치로 이동하는 동안 노란기를 수직으로 들고 유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심판 보트가 벌칙을 부과할 보트에게 소리지르기를 할 위치로 이동하기 위하여 종종 평상시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노란기를 들어올리고 있음으로써, 심판 보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RRS 42 벌칙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른 보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선수가 듣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심판 보트가 가까이 갔을 때, 심판은 호각을 강하게 불고, 벌칙받을 보트를 노란기로 가리키며 크게 소리쳐야 한다. 만약 선수가 심판 보트가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 반복해서 신호를 보내고, 가능하면 눈을 마주친다. 심판은 선수가 호각신호와 소리지른 것을 듣고, 깃발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는지 확실히 확인하여야 한다. 심판의 벌칙 신호가 명확히 전달되었고, 선수가 이를 인지하였다고 확신한다면, 즉시 노란기를 내려야 한다. 보트가 벌칙을 이행할 때까지 노란기를 올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

신호는 명확하여야 하며, 소리지르기가 크고 분명하게 이루어져, 위반한 보트 주변의 모든 보트들 또한 누가 벌칙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판이 안전하게 벌칙을 줄 위치로 이동하기 위하여 벌칙신호를 지연시켜야 할 경우, 승정원이 벌칙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벌칙을 신호하면서 해당 위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타트 직전 스컬링, 또는 마크에서 바디 펌핑" 등이다.

심판은 벌칙받은 보트가 벌칙을 이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위반 내용을 기록할 때에도, 주변의 플리트를 계속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심판이 벌칙 이행을 지켜보느라 주의가 분산된 것처럼 보일 때, 다른 보트들이 RRS 42 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 심판이 벌칙 이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위반사항을 기록하는 동안, 보트를 운전하는 심판은 주변의 플리트를 계속 관찰하여야 한다.

### 1.9.2 벌칙 기록

벌칙을 기록하는 심판은 보트의 세일 번호; 몇 번째 경기인지와 몇 번째 렉인지; 날짜와 시간; 위반 사항, 위반한 규칙과 해석; 보트의 벌칙 이행 여부; 그리고 스타트 전체 리콜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기타 특별한 상황들도 기록하여야 한다.

보트가 <두-바퀴 돌기 벌칙>을 하는 것을 관찰할 때, 벌칙을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 보트가 어느 택에 있었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벌칙받는 보트가 두 번의 태킹과 두 번의 자이빙을 포함한 완전한 <두-바퀴 돌기 벌칙>을 이행하였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 스킵프, 보드 그리고 카이트 등 일부 클래스에서는 범주지시서에 RRS 44 를 변경하여 <한-바퀴 돌기 벌칙>이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심판이 동시에 두 보트에게 벌칙을 부과하였다면, 각각 한 척씩을 맡아서 관찰하며, 각 보트가 제대로 벌칙을 이행하는지 살펴본다.

벌칙이 보트의 피니시 직전이나 직후에 신호된 경우, 심판은 벌칙받은 보트가 원래 피니시했을 때의 그 앞과 뒤에 피니시한 보트의 순위를 기록하고, 또한 그 보트가 돌기 벌칙을 이행한 다음의 두 번째 피니시했을 때도 그 앞과 뒤에 피니시한 보트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육상으로 돌아온 다음, 심판은 벌칙받은 보트의 순위가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보트가 벌칙 이행 후에 올바르게 피니시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경기위원회에 전달하여 DNF 로 채점되도록 하여야 한다. 심판은 벌칙이 신호된 이후 보트가 RRS <정의> <피니시>에 맞게 피니시하였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벌칙받은 보트가 벌칙을 이행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하거나 돌기 벌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판은 경기 후에 벌칙 기록을 담당하는 심판에게 그 보트가 실격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첫 번째 벌칙은 DSQ, 두 번째 벌칙과 세 번째 벌칙 그리고 그 이후의 벌칙은 DNE 이다. 벌칙 기록을 담당하는 심판은 <RRS 부칙 P2 벌칙>에 명시된 대로 경기위원회에 이를 알려준다. 또한 성적 확인을 담당하는 심판은 공식게시판에 게시된 성적에 해당 벌칙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선수가 게시된 경기 성적에 대하여 구제를 요청할 경우, 벌칙을 부여한 심판은 청문에 참석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RRS 부칙 P4는 RRS 부칙 P1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경기위원회의 신호 또는 클래스규칙을 고려하지 않아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심판이 보트에게 벌칙을 부과하였는데, 잠시 후에 경기위원회가 스타트를 연기시키거나 전체 리콜을 신호하거나, 또는 경기를 취소할 경우, 벌칙을 받은 보트는 벌칙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첫 번째 위반이면, 보트는 <두-바퀴 돌기 벌칙>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일 경우에는 재스타트할 수 있다 (RRS 부칙 P3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수가 시리즈 동안 벌칙받은 횟수에는 여전히 반영되기 때문에, 심판은 벌칙을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심판이 보트에 세 번째 또는 그 이후 벌칙을 부과하였을 때, 보트가 리타이어 하지 않았다면, 그 보트는 청문 없이 대회 모든 경기에서 실격된다. 이 보트의 점수는 그 대회 모든 경기에서 DNE로 처리되며, 항의위원회는 RRS 69.2에 따른 청문소집을 고려하여야 한다.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도구의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모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장치를 보호하고, 마이크는 바람 소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특히 장치에 녹화 시작과 종료가 동일한 버튼일 경우, 녹화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한다.
- 전술적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 장치를 작동 상태로 둔다. 이는 스타트 전 마지막 90 초, 마크 회항 전 과정, 그리고 피니시를 관찰하는 동안 포함한다.
- 기술적 위반 가능성을 논의할 경우, 보트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심판들 간에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 또는 녹화한다. 이는 추후 선수에게 심판이 관찰한 내용을 설명할 때 유용할 수 있다.
- 보트에 벌칙을 부과할 때는, 벌칙에 대해 소리지르는 것을 녹화 또는 녹음하고, 보트들이 벌칙을 완료할 때까지 녹화를 계속한다.

- 기기가 작동 중일 때는, 항상 목소리와 톤을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세일 번호로만 보트를 호칭하고, 개인적 의견 또는 주관적 평가를 피한다. 벌칙을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여 기록하면, 심판에 대한 선수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 오디오나 비디오 녹화기를 사용하기 전에, 동료 심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두 심판 모두가 기록을 공유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녹음·녹화 자료는 기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 때때로 녹음 내용을 검토하고, 관찰한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점검한다.
- 녹화한 오디오 정보는 가능한 한 빨리 RRS 42 보고서 양식에 옮겨 적는다.

경기 종료 후 육상에서, 심판은 당일 경기가 종료된 시점에 모든 노란기 벌칙과 그 결과로 보트가 취한 행동을 벌칙 기록을 담당하는 심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심판이 노란기 벌칙을 하나도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가 없었다고 알려주는 것도 포함된다.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각 심판은 자신이 부과한 벌칙을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입력한다.

### 1.9.3 선수에게 벌칙 설명하기

매일 경기가 끝난 후, RRS 42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한 누적 목록이 공식 게시판에 게시된다. 각각의 위반에서 심판이 목격한 것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기재한다. 적절한 설명은 모든 선수에게 RRS 42 를 어떻게 위반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며, 심판의 역량(전문성)을 입증하여 준다. 또한 선수가 심판에게 설명을 요청해야 할 필요성을 대체할 수 있다. 설명은 '사실'처럼 읽혀져야 하며, 가능하다면, 규칙 또는 <RRS 42 에 대한 해석>에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심판은 수상에서는 경기 사이에 또는 육상에서는 경기 후에, 벌칙받은 선수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최상위급 대회에서의 선수와 코치들은 대체적으로 RRS 42 벌칙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거의 모든 경우, 선수들은 그들이 왜 벌칙을 받았는지 알고 있지만, 그 정확한 이유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트의 행동에 대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하고 심판의 관점에서 처음 관심을 끈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준다. 선수의 행동이 보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규칙 위반사항과 관련된 월드세일링 해석을 설명해 준다.

선수들은 벌칙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흥분하거나 또는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 일부 선수는 위반을 부인하거나, 벌칙을 자신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암묵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심판은 보트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차분하게 대화하고 선수의 동기나 의도에 대한 암시를 피함으로써 감정적인 대립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해당 벌칙을 부과했던 두 명의 심판이 함께 선수와 대화하여야 한다. 이 때 한 명의 심판이 침착하게 대화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다른 한 명의 심판은 대화가 대립적이거나 논쟁적으로 변하고 있는 징후를 주시하여야 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두 번째 심판은 나중에 대화를 계속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해당 벌칙을 부과했던 두 명의 심판 중 한 명의 심판만 있을 경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수에게 벌칙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심판에게 대화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

심판은 선수가 대화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떤 선수가 자신의 행동이 RRS 42 를 위반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이 먼저 그 선수와의 모임을 요청하여 설명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이는 특히 청소년 대회 또는 세일링 경험이 부족한 선수가 참가하는 낮은 수준의 성인 대회, 또는 어떤 선수가 같은 동작으로 두 번째 벌칙을 받았을 경우에 적절하다. 심판이 규칙 위반을 설명함으로써, 선수가 추가적인 벌칙을 피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RRS 부칙 P 는, 경기위원회의 신호 또는 클래스규칙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RRS 부칙 P1.2 에 따라 심판이 취한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만 구제를 허용한다. 어떤 보트가 RRS 42 벌칙이 심판의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러한 구제의 제한이 있음을 해당 보트에 알려야 한다.

## **I.10 심판 보트 위치 선정**

RRS 42 의 즉결판결에 있어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목표는 심판 보트를 경기 중인 보트가 잘 보이는 위치에 두고, 규칙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 가까이 배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 보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한 플리트 경기 전술에 대한 지식;

- 특정 보트의 설계 특성을 파악하여, 해당 보트 유형에 어떤 형태의 금지된 동작이 가장 효과적인지 판별하는 지식;
- 경기하는 보트의 종류, 심판 보트, 심판 수, 수상 조건, 코스 구성, 경기수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전체 플리트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감당할 심판의 능력;
-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상식과 지속적인 집중력;
- 다른 심판 보트의 위치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

모든 보트를 항상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각 경기에서 모든 보트가 심판 보트를 적어도 한 번은 인식할 수 있도록 코스를 운용하는 것은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트들과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플리트 앞쪽 가까이에 심판 보트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심판은 선두 그룹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되, 넓은 시야를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보트들을 지켜보아야 한다.

여러 플리트가 함께 경기하는 대회에서는, 심판이 모든 플리트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을 해야 한다면, 심판은 스타트, 풍하 렉, 피니시 렉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심판 보트를 운전하는 심판은 엔진 사용으로 인한 파도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바람을 가로막는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보트를 위치시키면서 조종할 책임이 있다.

경기 중인 보트와 가까이 있는 경우, 선수가 예상할 수 있는 침로로 심판 보트를 유지하면서 경기 중인 보트를 직각으로 가로지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판 보트가 경기 중인 보트의 앞쪽으로 가로지를 때는 최소 5 척 길이, 뒤쪽으로 가로지를 때는 최소 한 척 길이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서핑이 가능한 상황의 풍하 렉에서는, 종종 보트들이 파도를 가장 잘 이용하기 위하여, 급격한 침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한다. 만약 심판 보트가 경기 중인 보트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심판 보트를 정지하여, 보트가 심판 보트를 돌아서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이때, 심판 보트를 운전하는 심판은 두 손을 높이 들어, 심판 보트가 멈췄다는 신호를 보트에게 보낼 수 있다.

스타트와 첫 번째 풍상 코스를 제외하고, 심판 보트는 최대한 많은 보트가 심판 보트를 볼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보트에 RRS 42 벌칙을 부과할 때, 심판 보트 조종자는 벌칙 신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트에 충분히 가깝게 접근하여야 하지만, 보트가 벌칙 돌기를 이행할 때는, 벌칙 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 I.10.1 스타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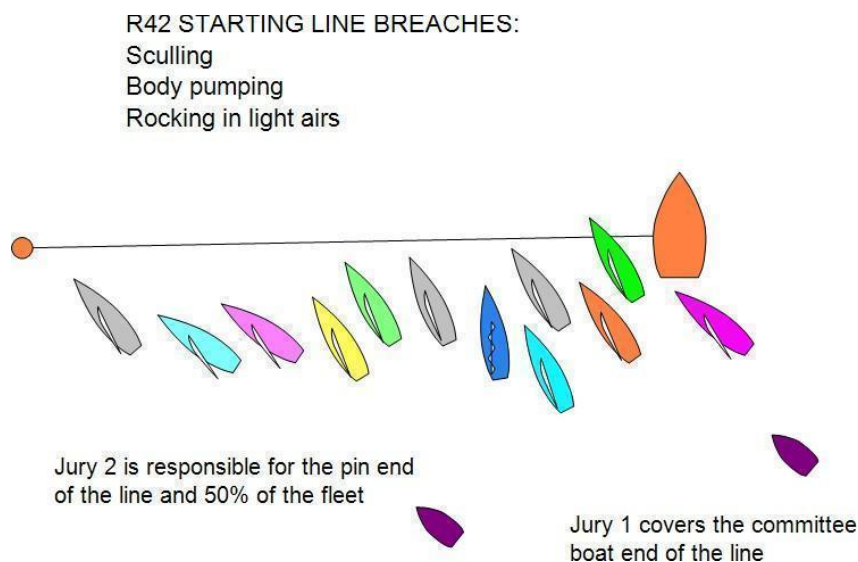
RRS 42 는 준비신호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RRS 42 위반은 스타트 약 1 분 전까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미풍에서, 스타트구역에 도달하기 어려운 보트가 준비신호 이후, 스타트구역에 도착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동작 (코치 보트의 견인 포함)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타트라인의 핀 엔드쪽에서 스타트하려고 시도하는 보트가 스타트라인을 빠르게 가로지르려고 RRS 42 를 위반할 수 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스타트신호를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즉시 벌칙을 신호한다.

벌칙을 받는 보트는, 다른 보트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범주하면서, 신속하게 <돌기 벌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 I.10.2 스타트에서

벌칙 신호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심판 보트는 스타트하려고 준비하는 다른 보트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 일반적인 위반 사항

- 스타트 신호 직전의 스컬링

- 스타트 때, 몸의 움직임으로 보트를 롤링시키거나 세일에 바람을 일으키는 반복적인 로킹/펌핑.
- 스타트 전에 '두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줄'로 나가려고, 보트를 추진시키는 로킹.
- 스타트라인에서, 한 번의 롤링으로 분명하게 보트를 추진시키는 동작 - BASIC 4.

### 심판 보트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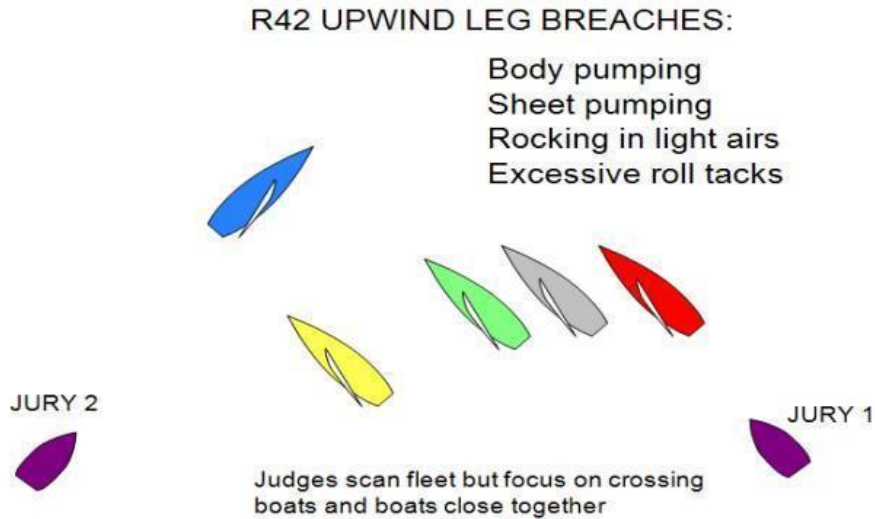
코스를 담당하는 심판은 심판 보트들을 플리트의 뒤쪽에 배치한다. 일반적으로 심판 보트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분산 배치되며, 그 위치는 실제 스타트라인이 아니라 보트들의 분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왼쪽 끝의 핀 엔드 쪽을 맡은 심판 보트는 스타트라인의 핀 엔드에 가장 가까운 보트들을 담당한다.

각 심판 보트는 자신이 담당하는 보트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100 척의 보트와 4 척의 심판 보트가 있다면, 각 심판 보트는 25 척의 보트를 담당한다. 한 심판 보트에 두 명의 심판이 탑승한 경우, 한 심판은 보트의 한 쪽에서 13 척의 보트를 담당하고, 다른 한 명은 반대쪽에서 나머지 보트를 담당하는데,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보트들에 집중하여야 한다. 심판 보트는 자신이 담당하는 모든 보트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플리트 뒤쪽에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하며, 동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적정거리는 플리트의 크기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보트는 스타트 직전 최종 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스타트보드 택에 있기 때문에 심판 보트는 보트들의 선미쪽에 위치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전체 스타트라인의 오른쪽 아래에 자리를 잡고, 오른쪽 끝에서 스타트하는 대규모 보트 그룹을 지켜본다.

### I.10.3 풍상코스에서

심판은 경기 중인 다른 보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벌칙을 신호하기에 좋은 위치로 심판 보트를 이동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풍에서는, 소리지르기와 호각 신호가 먼 거리까지 전달되어 심판 보트의 적은 움직임으로도 신호할 수 있다. 그러나 스타트 직후에는, 다른 보트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는 신속한 신호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보트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신호하는 것을 늦춘다. 벌칙신호를 늦게 할 경우, "스타트 때 로킹" 등과 같은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선수가 벌칙받은 이유를 알 수 있게 한다.



## 일반적인 위반 사항

미풍에서

- 몸의 움직임으로 보트를 로킹시키는 행위.
- 반복적인 롤 태킹.
- 태킹을 마친 다음, 보트의 속도가 증가할 정도로 과도한 롤 태킹.

강풍에서

- 데크 또는 하이킹 스트랩에서 몸에 반동을 주어 세일에 바람을 일으키는 행위.
- 메인시트로 짧고 강하게 반복적으로 펌핑하여 세일에 바람을 일으키는 행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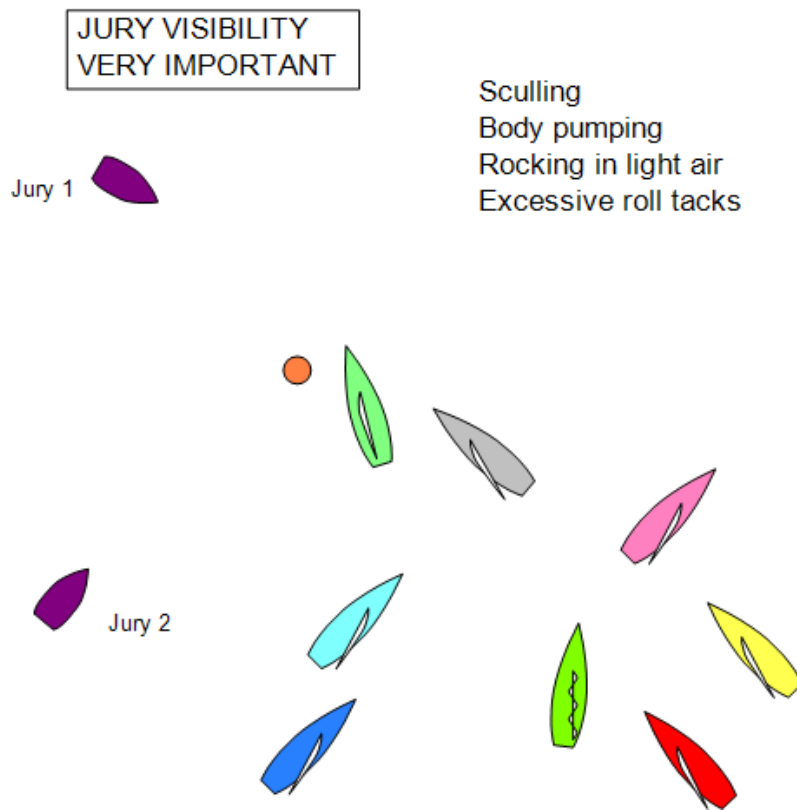
심판 보트는 일반적으로 플리트의 뒤쪽에 위치하며, 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한다. 심판 보트는 플리트를 통과하여 움직일 수 있지만, 파도를 일으키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여야 한다. 심판 보트는 특정 보트와 장시간 나란히 진행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심판 보트의 엔진 소음과 프로펠러에 의해 발생하는 선미파로 인하여 선수의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풍상 렉에서 선두정이 풍상마크에 도착할 무렵, 심판 보트는 다음 렉을 관찰하기 위하여 미리 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플리트의 앞쪽 1/3 을 관찰하고 있던 심판 보트는 선두 그룹이 리칭 또는 런코스 구간을 시작할 때 이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여야 한다. 풍상 렉이 끝나갈

무렵, 플리트의 뒤쪽 2/3 를 관찰하고 있던 심판 보트는, 풍상마크의 풍상쪽으로 이동하여 선수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첫 번째 풍상마크에서는 심판 보트가 눈에 잘 띄어야 한다. 이 때, 코스의 왼쪽 플리트를 담당했던 심판 보트는 선두 그룹이 리칭코스를 범주할 때,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 이 때, 코스의 왼쪽에서 플리트의 두 번째 그룹을 담당하는 심판 보트는 플리트의 풍하 쪽에 자리잡고 있다가, 선두 그룹이 리칭코스를 범주할 때,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 리칭코스에서, 풍하 쪽에서 플리트를 따라가면, 심판 보트로 인한 바람 그늘과 선미파의 영향을 덜 끼치면서 플리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 RULE 42 WINDWARD MARK BREACHES



#### I.10.4 리칭코스에서

리칭 렉을 시작할 때, 심판들은 서핑, 플레이닝 또는 포일링이 가능한 조건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조건이 경계선에 있다면, 바람의 작은 변화로도 서핑이나 플레이닝 또는 포일링 조건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심판들은 이를 자주 검토하여야 한다.

보트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서, 반드시 서핑 (파도의 앞쪽을 급속하게 가속하며 내려가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리칭코스에서는 한 척이 불법적인 펌핑으로 서핑을 시작하여 다른 보트와 격차를 벌리기 시작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 심판은 위반을 확인하는 즉시 벌칙을 주어야 한다. 심판이 너무 오래 기다리면 플리트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으며, 많은 보트가 선두를 따라잡기 위해 RRS 42 를 위반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될 경우, 심판은 플리트가 규칙을 준수하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해서 벌칙을 주어야 한다.

한 파도가 끝나고, 다음 파도가 시작되는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한 파도의 끝은, 보트의 속도가 급상승하는 구간의 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트가 플레이닝이 걸렸을 때, 한 파도에서 다른 파도로 이동하더라도, 펌핑은 허용되지 않는다.

강풍에서는, 종종 빠른 세일 조절과 펌핑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많다. 규칙은 바람, 돌풍 또는 파도의 변화에 따른 세일 조절에 대해서는, 심지어 빠르게 세일을 조절하더라도, 이를 허용한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에 연결되지 않은 반복적인 세일의 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수는 지속적으로 세일을 펌핑해서는 안된다.

### **일반적인 위반 사항**

- 파도나 바람의 변화와 관련없는 반복적인 세일의 조절.
- 한 파도에 두 번 이상의 세일 펌핑.
- 서핑 그리고/또는 플레이닝을 촉진하기 위한 바디 펌핑.
- 이미 서핑 또는 플레이닝인 상태에서의 세일 펌핑.
- 우칭 (일반적으로 강한 바람에서, 서핑을 촉진하기 위한).

### **심판 보트의 위치**

심판 보트 중 한 척은 플리트의 풍하 쪽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풍상마크에 있었던 심판 보트는 플리트의 풍상 쪽에서 지켜본다.

마크 돌기 중에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한 경우, 보트가 마크 돌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렉을 범주할 때 벌칙을 부과한다.

### I.10.5 런코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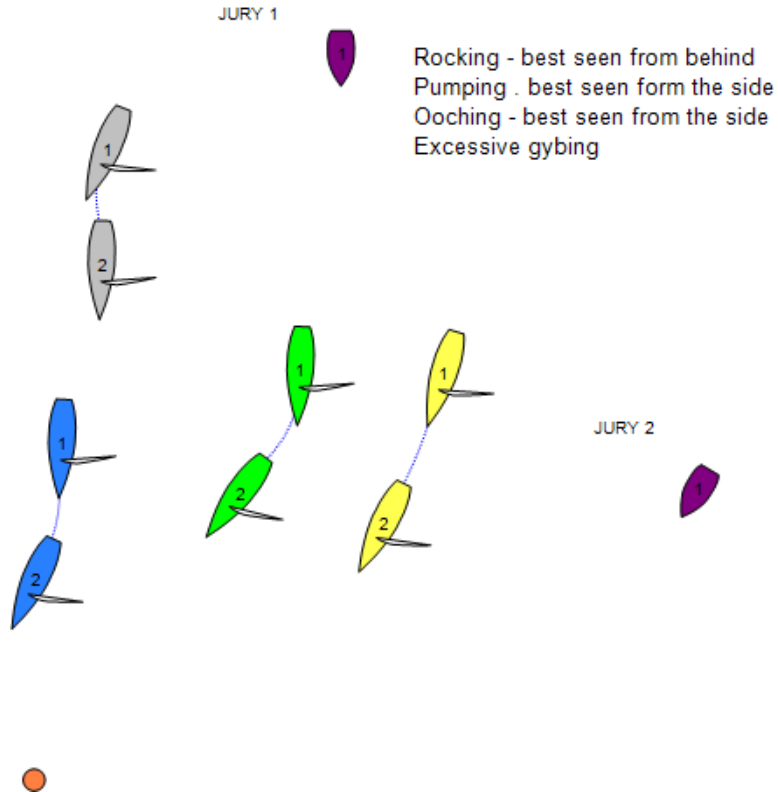
침로의 변경 없이 마스트가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몸을 반복적으로 움직여 보트를 롤링시키는 것이 로킹이다. 포지티브 로킹은, 선수가 먼저 풍상 쪽으로 몸을 움직여서 풍상 롤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네거티브 로킹은, 선수가 먼저 풍하 쪽으로 몸을 움직여서 풍하 롤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선수가 보트의 롤링을 막기 위하여, 보트가 롤링이 되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움직일 경우, 이는 허용된다 (Background Rolling).

불법적으로 로킹하는 보트를 식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넓은 시야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보트들보다 유난히 많이 롤링하는 보트를 구별하게 되는데, 심판들은 그 보트들을 유심히 관찰하여, 무엇이 추가적인 롤링을 발생시키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심판은 예외 (RRS 42.3)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바람이나 파도와 관련이 없는 몸 동작 또는 반복적인 세일의 조절로 인하여 롤링이 유발되고 있다면 벌칙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보트들은 허용된 동작과 금지된 동작을 병행하기 때문에, 심판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신이 관찰한 구체적인 동작에 대하여 동료 심판과 논의하여야 한다. 그것이 허용된 동작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조금 더 지켜본다. 두 명의 심판 모두 그 롤링이 금지된 동작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확신하고, 동시에 어떠한 몸 동작이 문제가 되었는지 선수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때에만 벌칙을 부과하여야 한다.

월드세일링 <RRS 42 에 대한 해석> ROCK 3 은 선수들에게 보트의 백그라운드 롤링을 멈추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트가 불안정하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 한 번의 롤링만으로도 반복적인 로킹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수 있으며, 이는 금지된다 (ROCK 5).

렉의 마지막 100 미터 구간에서, 오버랩을 성립시키거나 깨뜨리기 위하여, 과도한 자이빙 또는 펌핑을 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 R42 DOWNWIND BREACHES



### 일반적인 위반 사항

- 로킹
- 미풍에서, 명백한 바람의 변화 또는 전술적인 이유가 없는 반복적인 자이빙
- 자이빙 시의 과도한 롤링으로 자이빙을 하지 않았을 때 보다 보트를 더 빠르게 전진시키는 것.

### 심판 보트의 위치

심판 보트 중 한 척은 항상 플리트의 앞쪽 가까이 배치되어야 한다. 흔히 동일한 심판 보트가 경기 내내 플리트의 선두 그룹을 따라다닌다. 플리트의 앞쪽에 심판 보트를 두는 것은 선두 그룹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보트들이 공정한 범주를 통하여, 승패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척의 심판 보트는 플리트 내에서 이동을 시도하여야 한다. 만약 심판 보트가 플리트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동할 경우, 가속하기 전에 안전과 선미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플리트에서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가속하여 이동할 경우, 선미파를 가장 적게 일으키는

속도를 찾는다. 많은 소형 파워보트의 경우, 중간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 선미파가 가장 커진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중간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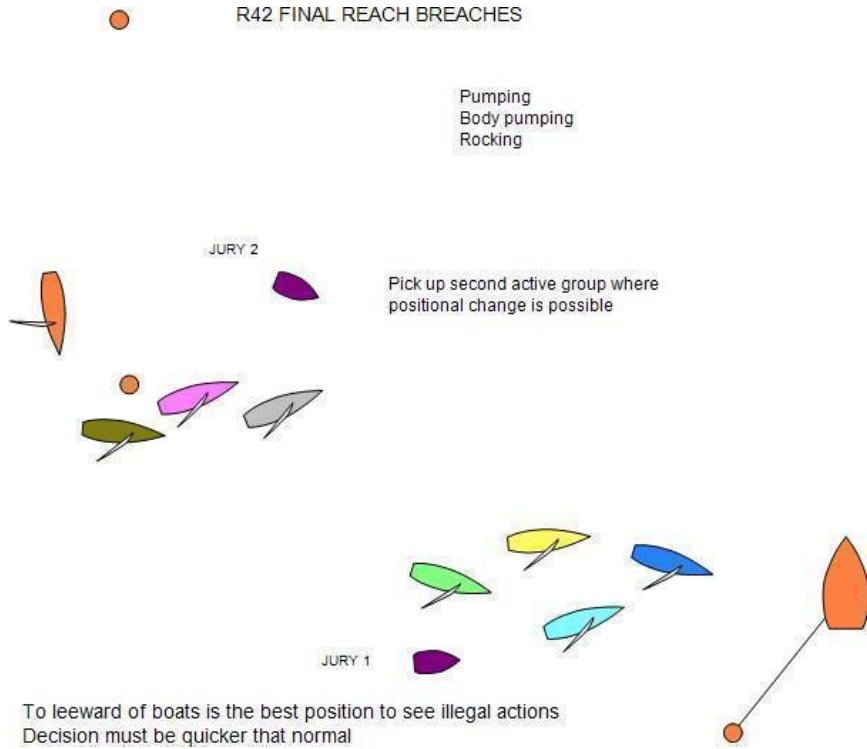
선두 그룹을 담당하는 심판 보트는, 경기위원회와 미디어 보트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게이트의 중앙에 위치하여, 선두정의 게이트 마크 돌기를 관찰하여야 한다.

### **1.10.6 피니시에서**

마지막 렉의 핵심은 보트가 피니시할 때, 심판 보트가 항상 피니시 구역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렉과 동일하다.

심판이 피니시 바로 직전에 규칙 위반을 목격한 경우, 해당 보트가 더 이상 경기 중이 아니더라도 심판은 벌칙을 줄 수 있으며, 벌칙을 부과하여야 한다. 보트가 피니시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벌칙을 신호하여, 선수가 즉시 벌칙 이행을 한 다음, 다시 피니시할 수 있도록 심판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심판이 보트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노란기 벌칙을 부과하였을 경우, 해당 보트는 <두-바퀴 돌기 벌칙>을 하는 대신, 리타이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피니시라인이 혼잡하고, 경기위원회가 바쁜 경우에는, 보트가 리타이어 의사를 경기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얻기 위하여 대기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위반 사항

- 보트가 피니시라인에 근접했을 때, 한두 척의 보트를 추월하기 위한 펌핑.
- 미풍에서 피니시라인을 향하여 범주하는 풍상코스 또는 런코스에서, 바람의 변화나 전술과 무관한 강력하고 반복적인 롤 태킹 또는 롤 자이빙, 또는 태킹이나 자이빙을 한 다음의 속도가 태킹이나 자이빙을 하지 않았을 때 보다 더 빨라지는 경우.
- 종종 두 척의 보트가 근접한 상태로 피니시라인에 접근할 경우, 한 보트가 피니시 직전에 한 번의 큰 롤링이나 펌핑 또는 그 둘을 동시에 시도하여, 앞서 나가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심판은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한 번의 롤링이나 한 번의 펌핑은, 그것이 보트를 명백하게 추진시켜 RRS 42.1 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규칙 위반이 아니다.

## 심판 보트의 위치

심판 보트 한 척은 마지막 풍하마크 가까이 자리를 잡고, 선두 그룹과 함께 피니시라인을 향하여 이동하여야 한다. 심판 보트는 서로 근접하여 경쟁하는 첫 번째 소규모 보트 그룹의 풍하 가까이 위치하여, 선수들이 피니시할 때까지 이를 따라가야 한다. 그런 다음, 피니시 구역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심판 보트는 후미 그룹이 마지막 런코스를 마치는 것을 지켜본 다음, 마지막 리칭코스 수역을 관찰하여야 하며, 특히 보트가 서로 근접해 있어 RRS 42 를 위반함으로써 추월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J. 심판과 청소년 선수

### J.1 머리말

이 절은 심판이 청소년 선수 육성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본 원칙은 모든 청소년 선수들이 세일링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한 최대의 가치를 얻고, 오랜 기간 동안 세일링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데 있다. 청소년 선수들은 우리 스포츠의 미래이다. 이 절에서는 지역 클럽 경기에서 국제대회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대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논의하며, 문화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고유한 (청소년 대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도전 과제와 기회를 제시한다.

청소년 선수들은 다양한 욕구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다른 수준의 능력, 경험 및 규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 선수들 사이에서도 1~2년 정도의 연령 차이만으로 이해력, 자제력, 다수 앞에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스트레스와 압박을 견디는 능력, 그리고 기술 발달 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세일링 선수들은 자신의 안전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대회에 참여하는 경기임원, 코치, 부모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신뢰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선수가 경기에 참여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안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스포츠를 보여줄 책임이 있다. 코치와 부모는 육상이나 수상에서, 청소년 선수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경기 관리, 구조 및 항의 절차 등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 선수가 피해, 상해, 괴롭힘, 따돌림 또는 이와 유사한 부정적인 경험에 노출되면, 세일링의 즐거움이 감소되어, 결국 세일링 스포츠를 그만 둘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의 경기임원은 스포츠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우려되는 사항은 도핑, 아동 학대, 관객 폭력, 성폭력 및 부정행위, 경기임원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존중 결여, 어린 선수에 대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과도한 압박 등이다.

심판은 해당 클래스가 항의 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클래스는 항의하기 전에 보트가 지원인력과 대화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으며, 더 낮은 연령대의 카테고리는 관련된 항의청문에 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

## J.2 청소년 선수의 정의

경기규칙에는 선수들의 연령에 따른 그룹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부 클래스협회는 해당 클래스의 전통과 방침에 따라, 경기 운영 및 항의 절차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그룹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선수는 일반적으로 약 8 세에서 18 세 사이이지만, 일부 클래스는 19 세의 선수도 포함한다. 특히, 아동 보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 법률이 적용된다.

심판들은 청소년 선수들의 개별 행동에 맞추어 의사소통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술적인 나이가 선수들의 성숙도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의존하는 접근법은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이 아닐 수 있다. 보다 적절한 접근법은, '준비 상태' 측면에서 성숙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준비 상태란, 청소년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적된 어느 정도의 경험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준비 상태는 청소년의 다음과 같은 개별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 신체적 준비 상태, 즉, 기본적인 운동 기술의 숙달 정도 및 성장 수준;
- 사회적 준비 상태, 즉, 자아인식, 부모와 친구들로부터의 지지와 격려;
- 동기적 준비 상태, 즉, 참여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에 대한 표현;
- 인지적 준비 상태, 즉, 관련 언어로 지시, 규칙 또는 전술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진술서 작성, 도해, 증인의 증거를 바탕으로 수상에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
- 청문 및 그 절차에 대한 경험;
- 심리-사회적 준비 상태, 즉, 사람에 따라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여, 서로 다른 진술과 증언을 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진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 J.3 청소년 대회에서의 행동 기준

심판은 선수의 장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 대회에서의 행동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세심함이 필요하다. 사소한 규칙 위반이라 하더라도, 선수의 나이를 이유로

눈감아주어서는 안 된다. 선수로서의 경력을 시작하는 시기의 엄격하고 공정한 지도는,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대회에서도 청소년 선수들에게 중요한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심판은 나이가 많은 선수가 나이가 어리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선수를 위협하려는 시도, 또는 영어 원어민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선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위협적인 행위도 제지하여야 한다. 이런 위협적인 행동은, 청소년 선수들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주고, 청문 절차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져서, 청소년들이 세일링 스포츠를 계속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 **J.4 심판의 시인성**

모든 대회에서, 심판은 선수와 지원인력이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선수들이 처음으로 항의위원회나 국제심판단을 접하게 될 수 있는 청소년 대회에서 더욱 중요하다.

심판이 육상에 있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수들에게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 보트 계류장을 방문하여, 선수, 코치 또는 부모들과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 편견, 이해 상충,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두 명 이상의 심판이 선수와의 논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대회 기간 중, 규칙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육상에서 코치들과 함께 규칙 및 특정 상황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

#### **J.5 대회 브리핑**

대회 브리핑은 다른 대회의 선수 브리핑과 다르지 않지만, 항의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항의위원회 위원을 소개하여 대회 기간 동안 선수와 지원인력이 그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경기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들이 육상이나 수상에서 언제든지 항의위원회 위원에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세일링은 스스로 규제하는 스포츠임을 상기시키고, '스포츠맨십과 규칙에 따른 선수의 의무를 상기시킨다; 그리고

- 경기규칙 및 다른 선수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기대되는 행동 기준을 상기시킨다.

공간의 제약, 언어의 다양성, 클래스의 전통 등 현실적인 이유로 대규모 청소년 대회에서의 선수 브리핑은 코치나 팀 리더 브리핑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코치에게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는 것은 선수들의 모범적인 행동과 규칙 준수를 촉진할 수 있다.

## J.6 청소년 선수 및 그들의 지원인력과의 의사소통

선수와 대화할 경우, 선수의 이름을 묻고, 대화 중에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한다. 선수들에게 규칙이나 해석을 설명할 때는, 단어를 바꾸지 말고 규칙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사용한다. 가능하다면, 선수의 코치나 부모를 그 대화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대화를 하는 동안, 다른 경기임원이 당신과 함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J.7 청문

청문에서, 청소년 선수들은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아랫사람 대하듯 하면 안 된다. 청문은 공식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심판은 모든 선수에게 단호하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청소년 선수들은 청문에 참석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다. 청문을 시작할 때, 이것이 첫 청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첫 청문이라면, 패널위원장은 당사자와 그들의 코치 그리고 증인들에게 청문이 진행되는 초기 과정과 진행 과정을 모두 알려주어야 한다.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선수들 사이의 청문일 경우, 사전에 이를 예상하고, 통역을 준비한다. 가능하다면, 선수와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심판위원이 통역을 하도록 한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지원인력을 통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심판은 청문의 전 과정과 판명된 사실, 결론 및 판결을 전달할 때, 규칙서에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 선수는 용어, 규칙 및 절차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질문할 때에는 규칙서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되, 해당 정의를 함께 설명해 주어야 한다.

청문의 마지막에 항의위원회의 판결을 전달하는 동안, 패널위원장은 모든 당사자가 판결의 이유를 이해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J.8 청문의 읍저버

청소년 대회에서는 청문에 읍저버가 참여하는 것이 권장되어야 한다. 공간이 허락할 경우, 코치와 부모 외에도, 다른 선수들이 청문 과정을 참관하는 것이 그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심판 매뉴얼 F 절 <청문> 에 있는 읍저버에 관한 일반 규칙이 적용된다. 청문이 시작되기 전에, 읍저버에게 이러한 규칙을 알려준다.

## J.9 항의기 사용

세일링 경기규칙은, 청소년 선수가 범주하는 많은 덩기 클래스에서 항의기의 사용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심판은 항의기와 관련된 클래스규칙과 해당 클래스에 적용되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J.10 RRS 42 및 RRS 부칙 P

수상에서 RRS 42 의 준수를 관찰하기 위하여 RRS 부칙 P 를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 경기에서 권장되어야 한다. 이는 선수들이 RRS 42 의 적용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른 규칙들도 준수하도록 한다.

일부 청소년 대회에서는, 범주지시서에서 RRS 부칙 P2.1 을 수정하여, RRS 부칙 P 의 모든 벌칙에 대하여 <두-바퀴 돌기 벌칙>이 사용되도록 한다. 그러나 더 나은 접근 방식은 RRS 부칙 P2.2 도 수정하여 그 다음 벌칙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RRS 42 준수 여부는 일관되게 높은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선수들은 RRS 42 에 따른 금지된 동작을 이해하고,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심판은 RRS 44 에 따라 <두-바퀴 돌기 벌칙> 또는 리타이어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보트가 벌칙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심판은 RRS 부칙 P 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매뉴얼의 <I 장: RRS 42 와 RRS 부칙 P 를 포함한 수상에서의 판결>에서는 RRS 부칙 P 에 따라 심판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벌칙을 받은 선수가 육상과 수상에서 벌칙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심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심판들이 그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청소년 선수들이 RRS 42 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 J.11 지원인력 및 지원보트

지원인력은 RRS 4 에 따라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청소년 선수들의 부모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지원인력들에게 육상과 수상에서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상기시키는 것은 유용하다. 이는 부모들이 새로운 청소년 선수를 대회에 데려오면서, 부모 자신도 규칙을 처음 접하는 경우에 더욱 중요하다.

지원보트는 대회 안전관리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원보트의 이동 및 배치는 제한되어야 하지만, 범주지시서나 지원보트 규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포함된 제한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코스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다.

항의위원회가 지원인력의 규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청문을 소집할 경우, 그 사람이 지원하는 모든 보트가 당사자이므로, 청문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원인력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지원인력이 추가로 규칙을 위반할 경우, 나중에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선수들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이 매뉴얼의 <F 장: 청문>에 설명되어 있다.

모든 청소년 선수들이 수상에 지원인력을 동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심판 보트는 코스 구역으로 보트를 예인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특정 보트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심판이 특정 보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경기를 마친 후 육상으로 보트를 예인하는 것은 허용된다.

## **J.12 아동보호 및 RRS 69 부정행위**

월드세일링의 <부정행위 지침> 문서는 아동 보호 문제와 미성년자에 대한 RRS 69 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심판들은 아동학대, 아동보호 또는 따돌림이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을 조사하기에 앞서, 이러한 절차를 숙지하고, 그 지침에 따를 것을 강력히 권고받는다. 현지 아동보호법에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이 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항의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당국에 관련 지침을 요청하여야 한다. 운영이 아무리 올바른 신념과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더라도, 아동을 인터뷰하거나 아동을 면담하거나 심각한 불만을 조사하는 것이 현지 사법절차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괴롭힘, 학대 또는 착취를 신고하는 절차는 월드세일링 괴롭힘 및 학대 방지 보호 정책 (World Sailing Safeguarding Policy Against Harassment and Abuse)에 명시되어 있다.

## K. 대양 및 외양 경기 심판

### 전문

이 장은 외양 및 대양 경기 심판들을 위한 정보와 도움말을 제공한다. 가독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심판단의 임무를 설명하는 RRS 부칙 N 의 개요를 따른다. 대양 및 외양 경기에서는 RRS 86 에 따라 RRS 를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RRS 제 5 장 B 절의 기본 원칙을 가능한 한 충실히 반영하였다. 또한 외양 및 대양 경기에서 적용되는 일부 특별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 K.1 항의위원회 구성 및 조직

가능한 경우, 청문에서 적절한 벌칙 및 구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항법 계산, 트래킹 시스템, 전자 해도, GPS 및 기상 분석에 대한 지식을 갖춘 항의위원회 위원을 포함시킨다. 또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IRPCAS)과 월드세일링 외양특별규정 (OSR)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필요하다. 항의위원회 위원 중 이러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다면, 필요에 따라 독립적인 전문가를 불러 증언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기위원회 또는 경기이사도 정보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종료 전에, 항의위원회 전체 회의가 권장된다. 첫 회의에서는 항의위원회 내부의 의사소통 도구를 정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선택된 도구의 사용법에 익숙하여야 한다. 그 목적은 오해를 줄이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방침을 수립하는 데 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항의위원회는 이메일, 화상 회의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심판은 경기 기간 내내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여러 구간과 기항지를 포함하는 경기에서는, 항의위원회의 구성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구간으로 구성된 경기에서 항의위원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경기 기간 동안 최소한 항의위원회 위원장과 다른 한 명의 위원은 항의위원회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구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청문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중간 기항지의 지역 심판들이 항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항의위원회 위원은 긴급 상황, 중대한 사고 또는 선수와 관련된 모든 위험에 관한 정보를 세심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의 기밀성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월드세일링

경기운영 매뉴얼의 <안전 관리>와 <외양 경기의 조직 및 경기 운영>에 포함된 안전 관련 절은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K.2 항의위원회의 책임

RRS 부칙 N2 에 명시된 국제심판단의 책임은 외양경기에서도 다른 경기와 다르지 않다. 다만 대양 대회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모든 경기임원 간의 원활한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심판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계측 및 안전 장비 또는 클래스의 요건에 대한 경기 전 항의는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항의에는 장비 또는 경기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언론의 관심을 끌 수도 있다. 심판은 이러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직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항의위원회의 책임에는 RRS N2.3 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 범주지시서가 대회공고 및 클래스규칙과 일치하는지, 관련 국가협회 규정의 적용 여부, 그리고 경기규칙 변경을 확인한다;
- 임의재량 벌칙 또는 항행 벌칙 (navigational penalties)의 계산 방법을 정립하고 게시한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 아이스 게이트 이동 (유빙이나 얼음 파편이 밀집된 위험 구역)과 같은 안전 상의 이유 또는 코스를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경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 조직위원회, 경기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의 자문관으로서, 규칙과 관련하여 조언을 제공한다.

경기 종료 후:

- 해당될 경우, 금전적 벌칙 (financial penalties), 부정행위 등

### K.3 범주지시서에서의 특정한 규칙 변경

대회공고 또는 범주지시서는 경기규칙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이 목록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범주지시서에서 변경되는 규칙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

항의 절차 및 항의위원회의 판결 관련

- RRS 86 에 따라, RRS 제 5 장의 항의절차를 변경하여, 청문을 진행하는 다른 방법을 설정한다;
- RRS 60.5 를 변경하여, 항의위원회가 특정 규칙 위반에 대하여 <실격 (DSQ)> 대신 <임의재량 벌칙 (DP)>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인 예는 RRS 28, 29, 30 및 31 이다;
- 항행 관련 규칙 및 RRS 제 2 장의 규칙 위반과 관련된 재량 벌칙은 청문에서 계산되도록 한다;
- 경기 시작 전, 경기 중, 경기 종료 후에 보트가 항의서를 제출하는 각각 다른 항의마감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 RRS 60.2 와 60.3 을 변경하여, 경기위원회, 기술위원회, 항의위원회에 의한 항의에 대하여 각각 다른 항의마감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 정부 또는 공식 기관의 조치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보트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할 수 있다.

RRS 41, 외부의 도움 관련

- 조직위원회는 종종 데이터 라우팅 (routing)의 사용을 금지하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참가자들에게 공용 일기예보 파일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 접근을 제한한다. 해당 사항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경기위원회에 확인한다.
- 보트는 선상 수리를 위하여 육상으로부터 기술 조언을 받을 수 있는가?
- 정비 목적의 입항 (technical stop)이 허용되는가?

- 경기 중,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두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 어떤 종류의 외부 도움이 허용되는가?

#### 안전 관련

- 경기 전 안전 브리핑 참석;
- 안전 상의 이유로, OCS 인 보트에 대한 RRS 30 의 벌칙 변경;
- RRS 제 2 장 및 RRS 31 위반에 대한 RRS 44 의 벌칙 변경;
- 경기 운영 측에서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기 무선 교신 일정.

#### 항행 관련

- 특정 금지 구역, IRPCAS 의 통행분리방식 (TSS);
- 배들 (vessels) 사이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 항상 적용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RRS 제 2 장의 규칙이 적용되는 장소와 시기, 그리고 경기 중인 보트들 사이에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 적용되는 장소와 시기에 대한 상세 내역;
- 스타트 절차를 위한 제한 구역 및 적용 시점 (종종 스타트 전 1 시간 또는 그 이상);
- 가상 마크: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서 <월드세일링 부칙 WP – 웨이포인트 주위에서의 경기규칙 (Rules for Racing Around Waypoints>」을 참조할 것 (검색창에 "racing rules WP"를 입력하고 "submit"을 클릭한 후 "Documents"를 선택);
- 경기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상 상황, 수리 또는 치료를 위한 입항 시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보트의 입항 허가 여부;
- 항구에서 보트의 육상올리기가 허용되는지 여부;
- 기술적 수리를 위한 정박 중에 선원들이 육지에 상륙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
- 경기 중, 의학적 이유로 승정원을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월드세일링 개발 규칙 DR21-01 <대체 스타트 벌칙 (Alternative Starting Penalty)>.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서 Our Sport 로 이동한 후 「Racing Rules of Sailing」을 선택하고, 이어서 「Test Rules and Additions to the Racing Rules of Sailing」을 선택할 것)

대회공고 및 범주지시서의 미디어 요구사항 관련

- 기자회견, 개회식, 시상식, 프롤로그 경기에 참석;
- 광고요건 준수;
- 경기 운영 측에서 언론 취재를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부과한 무전 또는 비디오 교신 일정.

#### K.4 청문 절차

외양 및 대양 대회에 대한 특정한 청문 절차가 존재하더라도, 항의위원회는 어떤 청문 절차가 적용되든 관계없이, 항상 각 당사자의 청문받을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경기 중에 이메일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진행되는 청문의 일정은 선수들의 피로도 또는 기상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문 일정은, 청문의 당사자들인 두 보트가 모두 동의하는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트 전

가능하다면, 전체 항의위원회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 스타트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항의위원회는 어느 당사자도 게시판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수나 지원인력을 청문에 소집하여야 할 경우, 그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대회에 해당되지만, 특히 대양 또는 외양 대회의 경우, 계측 또는 <월드세일링 외양특별규정>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스타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RRS 제 2 장의 규칙과 관련된 항의는, 스타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첫 번째 마크 돌기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수상에 항의위원회 위원이 배치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특히 경기 초반에는, 선수들이 전화 회의를 통한 청문에 시간을 할애하거나

완전한 진술서를 작성하기보다는 경기에 집중하고 혼잡을 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선수들은 기상조건과 경기 진행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이메일이나 다른 서면 통신 방법으로 항의위원회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다.

RRS 제 2 장 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관련된 항의에서 판명된 사실 관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종종 피니시한 후, 청문을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만, 손상이 발생하여 구제가 요청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니시 이전에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및 경기 중

스타트 후, 조직위원회는 종종 보트가 피니시하기 전에 항의 또는 구제요청을 해결하고자 한다. 청문 및 판결을 위한 전화회의의 일정은 항의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대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항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이메일에 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답변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연안 밖 수역

보트 사이의 항의는 드물다. 반면, 경기위원회, 기술위원회 및 항의위원회에 의한 항의가 더 자주 발생한다.

경기위원회의 항의는 종종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위반과 관련되며, 여기에는 <통행분리방식 (TSS)>과 관련된 B 장 규칙 10 조도 포함된다. 일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위반은 국가해양고등법원에 출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항의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적용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판결문의 사본은 모든 위원회로 보내져야 한다.

#### 피니시 후

피니시 후 제기되는 항의의 대부분은, 주로 봉인 파손 또는 장비 분실과 관련하여 경기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에서 제기된다.

## K.5 벌칙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기에서, 규칙 위반으로 보트를 실격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The Ocean Race, Figaro 또는 Vendée Globe 와 같은 대회에서는 <제외할 수 없는 실격 (DNE)>이 사용되지 않는다. 기간이 긴 경기일수록, 조직위원회는 보트가 실격되는 것을 더 꺼릴 수 있으며, 그 결과 <임의재량 벌칙>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임의재량 벌칙>의 사용은 범주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조직위원회의 요구 사항과 해당 경기의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양 및 대양 경기에 적용되는 <임의재량 벌칙>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벌칙을 처리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해 왔다.

#### 일반적인 임의재량 벌칙

- 시간벌칙 - 경과시간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벌칙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외양 경기);
- 시간벌칙 - 경과시간에 일/시간/분을 추가하는 벌칙;
- 정지벌칙 -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한 웨이포인트를 통과하도록 하는 벌칙;
- 항구 대기 벌칙 - 최소 기간 동안, 항구에 머물도록 하는 벌칙;
- 미디어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벌칙 - 조직위원회가 청문 없이 부과하는 <표준 벌칙>일 수도 있음.

## K.6 구제요청

구제요청은 외양 및 대양 경기에서의 항의위원회 업무 중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구제가 주어질 경우,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장 일반적인 구제요청은 다음과 같다:

- 스타트 절차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보트들 사이의 항의;
- 범주지시서에 정의된 안전구역을 제공할 책임이 조직위원회에 있는 가운데, 관람정이 경기 중인 보트를 방해하는 경우 등 조직위원회, 경기위원회, 항의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가 제기되는 경우;

- 보트가 위험에 처한 사람이나 선박에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주려고 시도한 경우.

구제는 일반적으로 보정된 시간이 아니라 경과된 시간을 빼어주는 방식으로 주어진다. 미디어의 관심을 고려하여, 구제요청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트가 피니시하기 전에 판결을 내리고 이를 공표하는 것이 최선이다.

## L. 무선세일링 심판

### 약어

IRSA 국제무선세일링협회

SYRPH 항의청문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 L.1 머리말

무선세일링은 보트를 조종하는 승정원이 보트에 탑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형태의 세일링과 구별된다. 선수와 경기임원이 독 (bank)에 나란히 선다. 그 결과, 무선세일링은 RRS 부칙 E 에 명시된 특정 규칙과 심판 및 엠파이어를 위한 운영 절차를 발전시켜 왔다.

수상에서는 한 번에 최대 24 척의 보트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최대 84 명의 참가자로 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히트 시스템이 사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된 한 명 이상의 선수가 다음 히트에 출전 예정일 수 있으므로, 다음 히트가 스타트하기 전에 항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히트 시스템은 다른 요소들과 함께 RRS 부칙 A <채점>을 수정한다. 특히, 이런 변경은 리타이어 또는 실격에 대한 채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대부분의 경기는 엠파이어 없이 진행된다. 그러나, 무선세일링에서는 옵저버 (observer) 제도가 발전되어 왔으며, 옵저버는 해당 히트에 출전하지 않는 선수가 맡을 수도 있다. 옵저버는 보트 간의 접촉, 그리고 보트와 마크 간의 접촉을 소리지르고 이를 기록한다.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경기위원회에 보고되며, 경기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항의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청문이 열리기 전에, 모든 청문 당사자들에게 제공된다. 이후 청문당사자는 리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절차는 IRSA 의 <항의청문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SYRPH)>에 규정되어 있다.

소수의 대회는 엠파이어 방식으로 운영되며, 여기에는 국제심판단이 임명되는 세계선수권 및 일부 대륙선수권대회가 포함된다. 경기가 엠파이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옵저버들은 엠파이어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일반적으로 옵저버는 보트를 빠르게 식별하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옵저버는 엠파이어보다 경미한 접촉을 더 쉽게 인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엠파이어와 옵저버 간의 상호 존중을 구축하는 것은, 원활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무선 세일링에서의 엠파이어 방식은 약 20 년에 걸쳐 발전해 왔다. 기본 원칙은 이제 명확히 확립되었으며, 그 발전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엠파이어 방식에 대한 절차는 월드세일링 개발 규칙 DR21-02 <엠파이어 방식 무선 세일링을 위한 개발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색어 "radio sailing" 입력 → "submit" 클릭 → "Documents" 선택)

이 규칙들은 엠파이어들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엠파이어가 즉결판결하지 않았을 경우, 선수는 여전히 청문받을 권리가 있다.

엠파이어 방식은 일반적인 절차를 가능한 한 적게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엠파이어 방식 무선세일링 개발 규칙은 엠파이어와 긴밀히 협력하는 선수 옵저버의 활용을 유지한다.

두 가지 추가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속화된 항의 절차는 청문 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SYRPH 를 통합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엠파이어 또는 옵저버의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청문이 시작되기 전에 리타이어할 기회가 주어진다.
- 월드세일링 무선세일링 즉결판결 지침서는 무선세일링에 특화된 규칙과 상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L.1.1 대회공고에 대한 추가 사항

무선세일링 (Radio Sailing)은 일반 요트 경기와 다른 변경 규칙이 다수 존재하므로, 대회공고에는 이 경기가 RRS 부칙 E 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대회를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문서들도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경기가 엠파이어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의 <엠파이어 방식 무선세일링을 위한 개발 규칙>, SYRPH, 그리고 가속화된 항의 절차가 포함된다. 대회공고에는 사용할 히트 운영 시스템 (heat management system)도 명시하여야 한다. IRSA 는 대회공고 지침서를 발행하였다.

### L.1.2 범주지시서에 대한 추가 사항

RRS 부칙 E 는 범주지시서에 특정 세부사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조종구역과 론칭영역이 지정되는지 여부와 그 사용 방법을 포함한다. 또한, 범주지시서는 각 히트마다 오퍼버를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와 오퍼버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벌칙도 명시하여야 한다. IRSA 는 범주지시서 지침서를 발행하였다.

## L.2 오퍼이어 방식

주요 대회에서는, 7 명의 심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중 네 명의 심판은 각 히트를 오퍼이어방식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세 명은 RRS 부칙 N1.4(b)에 따라 패널을 구성하여 접수된 항의를 청문한다. 심판들은 히트 오퍼이어 업무와 청문 업무를 교대로 수행한다. 이러한 경우, 항의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해당 사건의 일부를 직접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청문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히트를 연기하는 것은, 선수와 심판들 사이의 관계에 부담을 준다. 하지만 언제라도 청문을 진행할 패널을 구성해 두면, 다음 히트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문만 경기 진행을 지연시키게 된다.

더 적은 수의 오퍼이어로도 경기를 오퍼이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한 명의 오퍼이어가 관찰, 추적하여야 하는 보트의 수가 많아질수록, 관찰되지 않는 사건의 수도 또한 많아진다. 오퍼이어 팀은 각 오퍼이어가 최대 6 척의 보트를 담당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된다.

각 오퍼이어는 선수 오퍼버와 긴밀히 협력하여 활동한다. 오퍼이어는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보지 못하였던 경우라도, 오퍼버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즉결판결을 내릴 수 있다.

RRS 부칙 E1.1 은 오퍼버가 선수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해 상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드문 경우지만 오퍼버가 이해 상충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오퍼버 배정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오퍼버의 행동은 해당 히트에 출전 중인 선수들, 다른 오퍼버, 경기위원회, 오퍼이어, 해당 히트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 그리고 관중들에 의해 면밀히 관찰되므로,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도 거의 즉시 인지된다. 이는 RS Call O2 에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오퍼버의 역할은 세일링 경기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무선세일링 대회의 조직에 있어 핵심적이다. 다른 보트가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여 그 보트가 벌칙받도록 하는

행위, 또는 보트가 명백히 접촉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 행위는 스포츠맨십과 공정한 경기의 명백한 위반이며, 동시에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어떤 이유로든 대회 조직위원회 (Event Organizer)가 참가 선수 중에서 옹저버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임무를 수행할 별도의 인원을 선임할 수 있다.

### L.3 장비

필요한 장비는 많지 않다. 옹파이어는 하루에 최대 15 킬로미터까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운동화가 필수적이다. 옹저버에게는 사건을 기록할 수 있도록 종이와 클립보드가 제공된다. 심판들 역시 사건을 기록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보트를 조종하는 선수들과 옹파이어가 매우 가까이 위치하므로, 벌칙 신호는 구두로 한다. 모든 선수가 옹파이어의 소리지르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강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소리쳐야 한다. 일부 대회에서는, 옹파이어에게 마이크가 제공되어, 옹파이어의 소리지르기가 확성 장치를 통하여 방송되기도 한다. 국제대회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옹파이어는 최소한의 표준화된 소리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특히, RRS 부칙 E2.1(c)에 따라, 세일번호는 한 자리씩 구분하여 소리질러야 한다 (예를 들어, 15 는 '피프틴'이 아닌 '원 파이브').

### L.4 무선세일링 옹파이어 방식의 기본 원칙

무선세일링에서의 옹파이어 방식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은, 옹파이어, 옹저버, 증인이 보트를 조종하는 선수들과 동일한 구역에서 활동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판결은 선수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되는 정보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또한 옹파이어 방식은 옹파이어, 옹저버, 선수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에 의존한다. 즉, 접촉, 항의, 장애물에서 태킹하기 위한 자리 요구 (Room to Tack), 벌칙에 대한 소리지르기는 모든 당사자와 관계자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옹파이어가 선수들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운영되도록 한 실험에서는, 선수가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을 위반에도 벌칙이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옹파이어와 선수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실험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옹파이어들은 예고신호부터 마지막 보트가 피니시할 때까지 전체 플리트를 관찰하기 위하여 팀으로 운영된다. 각 옹파이어당 한 명의 옹저버를 배정하여, 옹저버와 협력하여 옹파이어

업무를 수행한다. 즉결판결을 내릴 때, umpire들은 umpire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있다.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umpire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발생 중, 그리고 발생한 후까지 계속 보트를 따라서 이동한다. 이를 위하여, 각 umpire는 감당할 수 있는 소수의 보트를 따라서 이동한다.

코스의 핵심 포인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umpire들은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예를 들어, 네 명의 umpire는 자신의 umpire와 함께 첫 번째 풍상 마크 근처로 범주하는 보트들을 따라 이동한다.

umpire가 자신의 umpire 파트너가 관찰하는 그룹에 속하지 않은 보트들 사이에서 발생한 '접촉 (contact)'에 대하여 소리쳤을 때, umpire는 해당 umpire가 그 사건 (접촉)을 보지 못하였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관련된 umpire는 해당 umpire에게 사건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umpire는 해당 umpire가 규칙 위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만, 해당 보트에 벌칙을 부과한다.

umpire가 즉결판결을 내릴만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umpire는 침묵을 지키거나 또는 '판결 없음 (No Decision)'이라고 선수들에게 소리쳐 알린다. umpire 또는 umpire가 '접촉 (contact)'이라고 소리쳤지만, umpire가 침묵을 지키거나 또는 '판결 없음 (No Decision)'이라고 선수들에게 소리쳐 알렸다면, 그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경기위원회에 보고된다. '항의 (protest)'라고 유효한 소리지르기를 하였음에도 umpire가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항의자는 그 히트를 마친 다음, 그 사건에 대한 항의를 진행할 수 있다.

umpire들은 확실한 마지막 시점의 원칙을 적용한다: umpire들은 보트의 상태 또는 상대 보트와의 관계가 변경되었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umpire들은 자신이 담당한 보트들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관측 지점을 찾기 위하여 조종구역 안에서 이동한다. 이 관측 지점은, 일부 선수들이 그들의 보트를 조종하기 위하여 선택한 위치가 아닐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맡은 그룹의 선두 보트와 나란히 서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자신이 맡은 그룹에 대한 최상의 시야를 확보해 준다.

엠파이어방식의 성공 여부는 코스를 설치하는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크게 좌우된다. 거리 측정기를 사용한 반복적인 시험 결과, 70 미터를 초과하는 거리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세일 번호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 정도의 거리에서도 거리감, 각도, 레이라인, 침로가 겹치는 코스 (converging courses)뿐만 아니라, 보트 간의 간격 또는 보트와 마크 사이의 거리에 대한 입체적 원근감 (depth perception)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경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경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엠파이어와 옴저버가 신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조종영역 (control area)으로부터 70 미터 이내에 마크를 설치한다.
- 특히 첫 번째 풍상 마크에서의 혼잡을 최소화하는 코스를 사용한다. 쌍둥이 풍상 마크 (twin windward marks)의 사용이 일반적이다. 일부 클래스는 바깥쪽에서 마크를 돈 후 게이트를 통해 되돌아오는 방식을 선호하고, 다른 클래스는 그 반대를 선호한다. 바람이 강해질수록 이 마크들 사이의 간격을 더 넓게 배치한다.

엠파이어 방식은 항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즉결판결 절차는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엠파이어들은 때때로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사과하여야 한다. 접촉이 있었지만, 어느 보트도 벌칙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엠파이어는 누가 규칙을 위반했는지 결정한다; 선수가 항상 그 판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엠파이어가 즉결판결을 소리칠 때, 몇 마디 설명을 덧붙일 수도 있다. 요청이 있을 경우, 엠파이어는 해당 히트가 끝난 후, 보다 상세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항의가 있을 경우, 선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엠파이어를 도울 수 있다:

-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알려줌.
- 항의하는 이유를 설명함.
- 벌칙을 이행할 의사가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밝힌다.
- 신속하게 벌칙을 이행함.
- 규칙을 위반한 보트가 벌칙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점을 명확히 알린다.

## L.5 엠파이어 위치

엠파이어들은 옹저버와 함께 보트들을 따라 코스를 돌 때, 이 절의 말미에 있는 엠파이어 위치 프레임워크에 제시된 계획을 따른다. 엠파이어들은 선수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종구역 내에 머물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엠파이어는 드론이나 확대 장비의 도움 없이, 보트를 조종하는 선수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즉결판결을 내린다. 이러한 원칙은 현재 대다수의 무선 세일러가 강하게 지지하는 기본 원칙이지만, 향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엠파이어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엠파이어 위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 각 엠파이어가 자신이 감당할 만한 수의 보트 그룹을 따라 움직이게 한다;
- 경기의 핵심 순간들을 효과적으로 포착·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 엠파이어의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조종구역의 길이가 150 미터 정도로 길고, 특히 풍하 코스에서 엠파이어들이 보트를 따라잡기 위해 달려야 할 때 중요함).

이 프레임워크는 보트 그룹을 따라가는 방식과 특정 구역을 관찰하는 방식을 결합한다. 예를 들어, 네 명의 엠파이어 모두가 스타트를 관찰한 후, 각 엠파이어는 소규모 보트 그룹을 맡아 풍상 마크를 돌아 첫 번째 풍하코스를 따라 이동한다. 이후 두 명의 엠파이어는 게이트마크 통과를 담당하고, 나머지 두 명의 엠파이어는 풍하구간의 후미 보트들을 따라가며, 이 보트들이 게이트마크를 돌아 풍상 범주를 하는 선두 그룹 보트들과 교차할 때의 상황을 관찰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선수가 옹저버로 임명되었을 경우, 엠파이어를 따라서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서 <무선 조종 엠파이어 방식: 엠파이어 위치 프레임워크>에 설명되어 있으며, 해당 문서는 선수들에게 제공된다. 이 문서는 본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두 개의 도해와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하나는 바람이 독의 왼쪽에서 불어오는 경우, 다른 하나는 오른쪽에서 불어오는 경우를 각각 나타낸다.

## L.6 해결되지 않은 사건

즉시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은, 해당 히트가 종료된 후 처리된다. 10 분의 항의마감시간이 포함된 표준 항의절차의 대안으로, 심판들은 항의자가 서면 항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가속화된 항의절차를 개발하였다. 대신에, 사건 발생 후 '프로테스트'라고 소리친 항의자는 피니시하거나 또는 리타이어한 즉시 엠파이어에게 항의할 의사를 알린다. 엠파이어는 핵심적인 세부 사항들을 기록하고, 항의에 관련된 다른 모든 당사자들을 부른다. 항의에 관련된 모든 선수들은 보트를 회수하고, 항의 접수처에 보고한다. 항의에 배정된 심판들은 청문-전 절차를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항의 청문을 시작한다. 많은 경우, 선수는 청문을 진행하기 보다는 리타이어를 선택한다.

## L.7 요약

엠파이어 방식 무선세일링 개발 규칙에 따른 엠파이어 방식의 경기는 RRS 제 2 장의 규칙, RRS 31 과 RRS 42 와 관련된 항의에 대하여, 심판들이 수상에서 즉결판결을 내림으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된다. 그와 동시에, 이 시스템은 다른 모든 규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선수들이 항의를 하고 청문을 받을 권리를 유지한다.

가속화된 항의절차는 엠파이어의 즉결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청문을 보장하여, 각 히트의 결과가 그 직후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절차는 IRSA 웹사이트의 'Document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선세일링 보트의 범주 속도와 조종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사건이 순식간에 발생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무선세일링은 모든 경기임원들에게 진정한 도전을 제공한다.

## Radio Controlled Umpring: A Positioning Framework.

### Notes:

- Each umpire takes 1/4 fleet plus 1. With 20 boat heats, umpires watch groups of 6 boats (so umpires overlap).
- If only 3 umpires, delete U4 on 1<sup>st</sup> lap and U2 for remainder. If only 2, delete U2 & U4.
- If more than 2 laps then repeat positions 6 through to 8 as many times as needed.

Right to Left Course

Left to Right Course Overleaf

### FIRST LAP

**Position 1: Pre-start and start** U1 takes the boats nearest to the shore (near), U2 those in the middle (middle) and U3 those furthest (far). U4 is left with the boats that are further back from the line (back).  
At the start U1 will umpire the group of boats on the line nearest to the shore, U2 the group in the middle of the line and U3 the group on the line furthest from shore. U4 will take those boats in the second row at the start.

**Position 2: The first beat.** As boats leave the starting line the umpires remain in the same configuration monitoring the progress of the fleet. While umpiring their areas U1 and U2 need to think about advancing their positions ahead of U3 in preparation to take over the first and second groups respectively in preparation for the first mark rounding. U4 takes the back group for Lap 1.

**Positions 3 and 4: Rounding the windward marks** Approaching Mark 1, U1 switches to the first group, U2 to the second and U3 to the third. U4 will remain with the last group.  
Umpires should be close enough so that U1 can tell U2 the last boat he is watching. Likewise U2 tells U3.  
As boats begin to round, all umpires advance to be level with Mark 1 to watch their boats round Marks 1 & 2, then promptly start walking downward as their boats leave Mark 2. From P4 onwards, umpires should walk level with the leading boat of their group.

**Position 5: Approaching and rounding the gate** As the boats do the final approach to the gate, U1 & 2 watch all boats' approach and round the Gate. U1 will usually choose the starboard hand gate mark and U2 will pick the other one (umpires should collaborate when most boats choose one mark to make sure they can keep up with the fast pace rounding). U3 and U4 switch to take the leaders on the beat from when they pass through the turning boats.

### REMAINDER OF RACE

**Position 6: The second beat** As boats finish the rounding, U3 takes front far, U4 front near. U1 & U2 take the back, same side as at the leeward gate.

**Position 7: The second windward rounding** As boats approach to round the windward mark for the second time U3 & U4 watch the windward mark rounding. U1 watches the first group as they leave Mark 1 and round Mark 2. U2 does the same with the second group, and then U3 & U4 revert to following their groups around Marks 1 and 2. All follow their groups on the downwind leg.

**Position 8: Second leeward gate rounding and final beat** The second rounding of the leeward gate is a repetition of Position 5, but as they start the final beat 2 boats are well-spread, U4 takes the 1<sup>st</sup> group, U3 the 2<sup>nd</sup>, U2 the 3<sup>rd</sup> and U1 the 4<sup>th</sup> until each group finishes.

Repeat X laps and then to finish

무선 조종 임파이어 방식: 임파이어 위치 프레임워크

주의:

- 각 엄파이어는 전체 플리트의 1/4 + 1 을 담당한다. 20 척의 보트가 참가한 히트에서, 엄파이어는 6 척의 보트 그룹을 담당한다 (그래서 엄파이어들은 서로 오버랩된다.)
- 엄파이어가 3 명만 있을 경우, 프레임워크의 도표에서의 1 번째 랩에서는 U4 를 삭제하고, 나머지 랩에서는 U2 를 삭제한다. 2 명만 있을 경우, U2 및 U4 를 삭제한다.
- 랩이 2 바퀴 이상일 경우, 필요한 만큼 6~8 번 위치를 반복한다.

### 1 번 위치: 프리-스타트와 스타트

U1 은 육상에 가장 가까운 보트 (가까운 쪽), U2 는 중간 (중간), U3 는 가장 멀리 있는 보트 (먼 쪽)를 담당한다. U4 는 스타트라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뒤쪽) 보트를 담당한다. 스타트 때 스타트라인에서, U1 은 육상에 가장 가까운 보트 그룹을, U2 는 중간에 있는 그룹을, U3 는 육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보트 그룹을 즉결판결한다. U4 는 스타트라인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보트들을 담당한다.

### 2 번 위치: 첫 번째 비팅코스

보트가 스타트라인을 벗어날 때, 엄파이어들은 1 번 위치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플리트의 진행을 관찰한다. 각자 자신이 맡은 구역을 즉결판결하는 동안, U1 과 U2 는 첫 번째 마크 돌기에 대비하여, 각자 선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을 담당할 준비를 하면서, U3 보다 앞선 위치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U4 는 첫 번째 랩에서 후미 그룹을 맡는다.

### 3 번과 4 번 위치: 풍상마크 돌기

보트들이 1 마크를 돌기 위하여 접근할 때, U1 은 첫 번째 그룹, U2 는 두 번째 그룹, 그리고 U3 는 세 번째 그룹 담당으로 전환된다. U4 는 후미 그룹을 담당한다. 엄파이어들은 충분히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여, U1 은 U2 에게 자신이 관찰하는 마지막 보트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U2 도 U3 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보트가 1 마크 돌기를 시작하면, 모든 엄파이어들은 마크 1 과 나란한 위치로 이동하여, 자기가 담당하는 보트들이 1 마크와 2 마크를 도는 것을 관찰한 다음, 그들이 담당하는 보트가 2 마크를 돌고 풍하마크로 향할 때, 그들을 따라 움직인다. 4 번 위치부터, 엄파이어들은 그들이 담당하는 그룹의 선두 보트와 나란히 이동하여야 한다.

### 5 번 위치: 게이트 마크에 접근하고 돌기

보트들이 게이트 마크로 최종 접근하여 게이트 마크를 돌 때, U1 과 U2 는 모든 보트의 게이트 마크 접근과 돌기를 관찰한다. 일반적으로 U1 은 오른쪽 (starboard hand) 게이트 마크를 담당하고, U2 는 왼쪽 (port hand) 게이트 마크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보트가 한쪽 게이트 마크를 선택한다면, 엄파이어들은 서로 협력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게이트 마크 돌기를 제대로 관찰하여야 한다). U3 와 U4 는 선두 보트들이 풍하 구간의 보트들 사이를 통과하여 비팅코스로 진입하는 시점부터, 해당 보트들을 담당하도록 전환한다.

### **6 번 위치: 두 번째 비팅코스**

게이트 마크 돌기를 마치고 범주하는 두 번째 비팅코스에서, U3 는 선두의 먼 쪽에 있는 보트들을 담당하고, U4 는 선두의 가까운 쪽에 있는 보트들을 담당한다. U1 과 U2 는 후미 그룹을 담당하는데, 풍하 게이트에서 담당했던 것과 같은 쪽을 맡는다.

### **7 번 위치: 두 번째 풍상마크 돌기**

보트들이 풍상마크를 두 번째로 돌기위하여 접근할 때, U3 와 U4 는 보트들의 풍상마크 돌기를 관찰한다. U1 은 선두 그룹이 1 마크를 떠나 2 마크를 도는 동안 그 그룹을 관찰한다. U2 는 두 번째 그룹에 대하여 동일하게 담당한다. 그 다음 U3 와 U4 가 1 마크와 2 마크 주변에 있다가 다시 각자 맡은 그룹을 따라간다. 모든 엄파이어는 풍하 렉에서는 자기가 맡은 그룹을 따라 움직인다.

### **8 번 위치: 두 번째 풍하 게이트 마크 돌기와 마지막 비팅코스**

두 번째 풍하 게이트 마크 돌기는, 5 번 위치의 반복이지만, 마지막 비팅코스에서 보트들이 넓게 흩어져 있으면, U4 가 선두 그룹을 담당하고, U3 가 두 번째 그룹, U2 가 세 번째 그룹, 그리고 U1 이 네 번째 그룹을 맡아서, 각 그룹이 피니시할 때까지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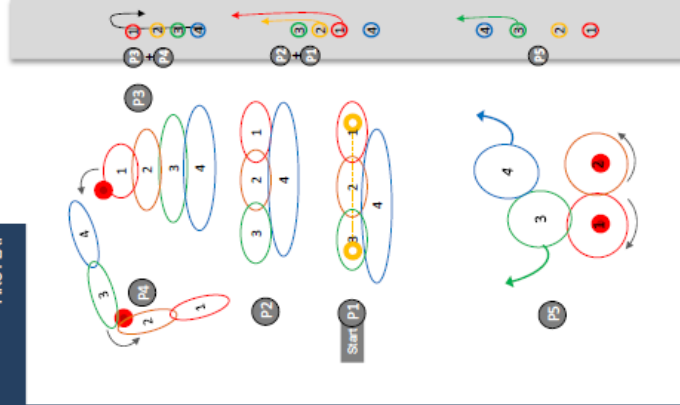
Left to Right Course  
Right to Left Course  
Overlap

### Radio Controlled Umprising: A Positioning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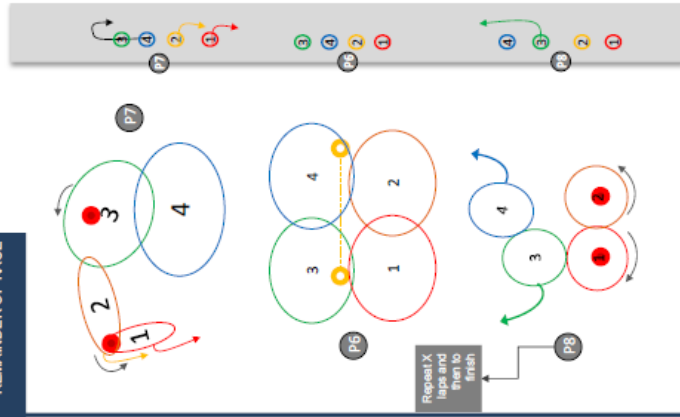
**Notes:**

- Each umpire takes 1/4 feet plus 1. With 20 boat heels, umpires watch groups of 6 boats (so umpires overlap).
- If only 3 umpires, delete U4 on 1<sup>st</sup> lap and U2 for remainder. If only 2, delete U2 & U4.
- If more than 2, laps then repeat positions 6 through to 8 as many times as needed.

**FIRST LAP**



**REMAINDER OF RACE**



**Position 1: Prestart and start.** U1 takes the boat nearest to the shore (lead), U2 those in the middle (middle) and U3 those furthest (flot), U4 is left with the boats that are furthest back from the line (back).  
At the start, U1 will umpire the group of boats on the line nearest to the shore, U2 the group in the middle of the line and U3 the group on the line furthest from shore. U4 will take those boats in the second row at the start.

**Position 2:** The first boat to leave the starting line the umpires remain in the same configuration monitoring the progress of the fleet. While umprising their areas U1 and U2 need to think about advancing their positions ahead of U3 in preparation to take over the first and second groups respectively in preparation for the first mark rounding. U4 take the back group for Lap 1.

**Positions 3 and 4: Rounding the windward marks.** Approaching Mark 1, U1 switches to the first group, U2 to the second and U3 to the third. U4 will remain with the last group.  
Umpires should be close enough so that U1 can call U2 the last boat he is watching. Likewise U2 tells U3.  
As boats begin to round, all umpires advance to be level with Mark 1 to watch their boats round. Marks 1 & 2, then promptly start walking downwind as their boats leave Mark 2. From P4 onwards, umpires should walk level with the leading boat of their group.

**Position 5: Approaching and rounding the gate.** As the boats do the final approach to the gate, U1 & 2 watch all boats' approach and round the Gate. U1 will usually choose the starboard hand gate mark and U2 will pick the other one. Umpires should collaborate when most boats choose one mark to make sure they can keep up with the last (pace rounding). U3 and U4 twin to take the leavers on the boat from when they pass through the rounding boat.

**Position 6:** The second boat to leave finish the rounding, U3 takes front flt, U4 front rear. U1 & U2 take the back, same side as at the leeward gate.

**Position 7: The second windward rounding.** As boats approach to round the windward mark for the second time, U3 & U4 watch the windward mark rounding. U1 watches the first group as they leave Mark 1 and round Mark 2. U2 does the same with the second group, and then U3 & U4 revert to following their groups around Marks 1 and 2. All follow their groups on the downwind leg.

**Position 8: Second leeward gate rounding and final beat.** The second rounding of the leeward gate is a repetition of Position 5, but as they start the final beat (boats are well-spread, U4 takes the 1<sup>st</sup> group, U3 the 2<sup>nd</sup>, U2 the 3<sup>rd</sup> and U1 the 4<sup>th</sup> until each group finishes).

무선 조종 옴파이어 방식: 옴파이어 위치 프레임워크

주의:

- 각 옴파이어는 전체 플리트의 1/4 + 1 을 담당한다. 20 척의 보트가 참가한 히트에서, 옴파 이어는 6 척의 보트 그룹을 담당한다(그래서 옴파이어들이 오버랩된다).

- 옴파이어가 3 명만 있을 경우, 프레임워크의 도표에서의 1 번째 랩에서는 U4 를 삭제하고, 나 머지 랩에서는 U2 를 삭제한다. 2 명만 있을 경우, U2 및 U4 를 삭제한다.
- 랩이 2 바퀴 이상일 경우, 필요한 만큼 6~8 번 위치를 반복한다.

### 1 번 위치: 프리-스타트와 스타트

U1 은 육상에 가장 가까운 보트 (가까운 쪽), U2 는 중간 (중간), U3 는 가장 멀리 있는 보트 (먼 쪽)를 담당한다. U4 는 스타트라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뒤쪽) 보트를 담당한다. 스타트 때 스타트라인에서, U1 은 육상에 가장 가까운 보트 그룹을, U2 는 중간에 있는 그룹을, U3 는 육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보트 그룹을 즉결판결한다. U4 는 스타트라인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보트들을 담당한다.

### 2 번 위치: 첫 번째 비팅-코스

보트가 스타트라인을 벗어날 때, 옴파이어들은 1 번 위치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플리트의 진행을 관찰한다. 각자 자신이 맡은 구역을 즉결판결하는 동안, U1 과 U2 는 첫 번째 마크 돌기에 대비하여, 각자 선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을 담당할 준비를 하면서, U3 보다 앞선 위치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U4 는 첫 번째 랩에서 후미 그룹을 맡는다.

### 3 번과 4 번 위치: 풍상마크 돌기

보트들이 1 마크를 돌기 위하여 접근할 때, U1 은 첫 번째 그룹, U2 는 두 번째 그룹, 그리고 U3 은 세 번째 그룹 담당으로 전환된다. U4 는 후미 그룹에 담당한다.

옴파이어들은 충분히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여, U1 은 U2 에게 자신이 관찰하는 마지막 보트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U2 도 U3 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보트가 1 마크 돌기를 시작하면, 모든 옴파이어들은 마크 1 과 나란한 위치로 이동하여, 자기가 담당하는 보트들이 1 마크와 2 마크를 도는 것을 관찰한 다음, 해당 보트가 2 마크를 돌고 풍하마크로 향할 때, 그들을 따라 움직인다. 4 번 위치부터, 옴파이어들은 그들이 담당 그룹의 선두 보트와 나란히 이동하여야 한다.

### 5 번 위치: 게이트 마크에 접근하고 돌기

보트들이 게이트 마크로 최종 접근하여 게이트 마크를 돌 때, U1 과 U2 는 모든 보트의 게이트 마크 접근과 돌기를 관찰한다. 일반적으로 U1 은 오른쪽 (starboard hand) 게이트 마크를 담당하고, U2 는 왼쪽 (port hand) 게이트 마크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보트가 한쪽 게이트 마크를 선택한다면, 엄파이어들은 서로 협력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게이트 마크 돌기를 제대로 관찰하여야 한다). U3 와 U4 는 선두 보트들이 풍하 구간의 보트들 사이를 통과하여 비팅 코스로 진입하는 시점부터, 해당 보트들을 담당하도록 전환한다.

### **6 번 위치: 두 번째 비팅코스**

게이트 마크 돌기를 마치고 범주하는 두 번째 비팅코스에서, U3 는 선두의 먼 쪽에 있는 보트들을 담당하고, U4 는 선두의 가까운 쪽에 있는 보트들을 담당한다. U1 과 U2 는 후미 그룹을 담당하는데, 풍하 게이트에서 담당했던 것과 같은 쪽을 맡는다.

### **7 번 위치: 두 번째 풍상마크 돌기**

보트들이 풍상마크를 두 번째로 돌기 위하여 접근할 때, U3 와 U4 는 보트들의 풍상마크 돌기를 관찰한다. U1 은 선두 그룹이 1 마크를 떠나 2 마크를 도는 동안 그 그룹을 관찰한다. U2 는 두 번째 그룹에 대하여 동일하게 담당한다. 그 다음 U3 와 U4 가 1 마크와 2 마크 주변에 있다가 다시 각자 맡은 그룹을 따라간다. 모든 엄파이어는 풍하 렉에서는 자기가 맡은 그룹을 따라 움직인다.

### **8 번 위치: 두 번째 풍하 게이트 마크 돌기와 마지막 비팅코스**

두 번째 풍하 게이트 마크 돌기는, 5 번 위치의 반복이지만, 마지막 비팅-코스에서 보트들이 넓 게 흩어져 있으면, U4 가 선두 그룹을 담당하고, U3 가 두 번째 그룹, U2 가 세 번째 그룹, 그 리고 U1 이 네 번째 그룹을 맡아서, 각 그룹이 피니시할 때까지 담당한다.

## M. 선수분류

### M.1 머리말

이 장에서는 선수분류를 사용하는 대회에서 항의위원회의 역할과 참여(involve)에 대하여 설명한다. 만약 분류 제한이 적용되는 대회의 항의위원으로 임명되었다면, 항의위원은 규정 (Code)에서 정한 분류 요건을 숙지하여야 한다.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서 "Code"를 검색하고, "submit"을 클릭한 후 "Documents"를 선택.)

월드세일링 선수분류 규정 (Code)은 선수를 아마추어 또는 프로로 분류하기 위한 국제적인 분류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규정 (Code)은 선수를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그룹 1의 선수들은 단지 취미로 경기에 참가하는 반면, 그룹 3의 선수들은 세일링 업무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선수분류 위원회 (categorization Commission)는 경기임원들에게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며, 다음 이메일을 통해 월드세일링 사무국에 문의할 수 있다.

대회나 클래스협회가 선수분류 시스템을 사용할 의무는 없으나 선수분류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RRS 79에 따라 <월드세일링 규정 (Code)>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수분류위원회는 월드세일링을 대신하여 분류 시스템을 관리한다. 이 위원회는 선수들의 분류를 검토하고 확인하거나 수정한다. 또한 분류가 잘못된 경우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회 중에 선수의 분류를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분류의 변경은, 대회 직전에 승정원 명단의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는 보트의 훈련 및 경기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수는 자신의 분류가 재조정된 결정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선수분류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진다. 선수분류위원회는 RRS 61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요청 절차도 없기 때문에, 선수는 이 결정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없다.

### M.2 대회공고와 범주지시서

클래스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회공고에 선수분류 규정 (Code)에 대한 승정원 제한 규칙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보트에 승선할 수 있는 그룹 3 선수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스키퍼는 반드시 그룹 1이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건은

모호함 없이 명확하게 작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유형의 개인을 그룹 1 또는 그룹 3 이라고 규정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정은 오직 월드세일링만이 할 수 있다.

### M.3 항의

보트는 승정원 명단 제출 마감일 (규정 (코드)에서 정의된 용어)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항의받을 수 있다

- 선수가 분류 신청을 할 당시, 상위 분류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 선수가 분류된 이후, 자신의 분류와 양립할 수 없는 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그리고 선수분류가 정정될 경우, 해당 보트는 대회공고, 범주지시서 또는 클래스규칙에 규정된 승정원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물론, 규칙에 따른 항의는 보트가 단순히 대회공고 또는 클래스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제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그룹 3 선수를 승선시키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승정원이 보트를 조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항의에서, 항의위원회는 항의마감시간, 유효성, 벌칙 등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 게시된 해당 선수의 분류가 최종적으로 적용된다.

보트의 항의마감시간은 규정 (Code)에서 정의된 용어인 '분류 항의마감시간'과 변경된 승정원 명단이 게시된 후 24 시간 중 늦은 시점으로 한다. 다만, 범주지시서에서 다른 마감시간을 정할 수 있다.

항의위원회는 또한 선수분류 규정 (Code)에 명시된 그룹 3 활동의 유형과, 선수가 이러한 유형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최선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항의는 대체로 복잡하며, 선수분류위원회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할 수 있다. 선수분류위원회가 발행한 자주 묻는 질문 (FAQs)은 다양한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측에 대한 항의와 마찬가지로, 항의위원회가 특정 선수의 분류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청문회에서 선수분류위원회 위원 1 인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해당 위원이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음성 또는 화상으로 청문에 참석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항의위원회가 판명된 사실을 선수분류위원회에 전달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의위원회는 선수분류위원회의 답변에 따라야 한다.

RRS 63.1(a)(4)를 변경하는 선수분류 규정 (Code)에 따라 피항의자가 요청할 경우, 항의자의 출석을 배제한 상태에서 개인적 또는 사적인 성격의 증거를 제시할 자격이 있다. 이 경우, 항의위원회는 그 증거를 판결문에 기록해서는 안 된다. 증거를 들은 항의위원회가 그것이 개인적 또는 사적 성격이라고 납득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를 항의자가 출석한 상태에서 다시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증거는 무시되어야 한다.

#### **M.4 벌칙**

규정 (Code)은 항의가 인정되었을 때 보트에 부과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보트가 해당 대회에서 아직 경기하지 않았다면, 보트는 벌칙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대회에서 경기를 한 경우에는, 이미 완료한 모든 경기에서 실격된다. 다만, 그 항의가 선수분류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경기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제기한 항의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항의위원회의 재량으로 벌칙이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선수분류위원회에 의한 변경> 항목에서 추가로 설명한다.

항의위원회는 선수분류를 변경할 권한이 없고, 단지 해당 선수분류가 잘못되었는지 여부만 판단할 뿐이다. 항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제시된 증거의 요약과 함께 항의에 대한 판결을 선수분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M.5 선수분류위원회에 의한 변경**

선수분류위원회가 대회 중에 선수의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대회 시작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이로 인해 어떤 보트가 승정원 제한 규칙을 위반하게 된다고 선수분류위원회가 판단하면, 그 사항을 경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경기위원회는 해당 보트를 항의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의 벌칙은 항의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판결된다.

#### **M.6 항의위원회에 접수된 보고**

항의위원회가 대회 중 선수의 분류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불만 사항이나 정보를 입수하였지만 항의가 제출된 상황이 아닐 경우, 해당 정보는 비공개로 월드세일링 사무국을 통하여 선수분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RRS 부칙 T에 따른 중재의 장점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도 항의 당사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이다. 이는 규칙을 위반한 보트가 실격보다 가벼운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경기-후 벌칙 30%는 상위 2/3에 해당하는 보트에게만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 하위 순위의 보트가 30%의 경기-후 벌칙을 부과받는다 하더라도 실격 점수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 또한, 수준높은 대회에서는 일부 보트가 분쟁을 해결할 의도가 없이 중재회의에 참석하여, 단지 상대방의 증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중재와 이후의 청문을 모두 진행하게 되어, 중재없이 처음부터 청문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N. 슬라럼 윈드서핑 심판 지침

### N.1 머리말

슬라럼은 빠르고 박진감 넘치는 윈드서핑 종목이다. 3 ~ 5 분 정도가 소요되는 짧은 경기는 관중과 가까운 비교적 좁은 수역에서 진행될 수 있다. 경기는 고속으로 진행되며, 짧은 코스 구간과 근접한 마크-돌기가 특징이다. 경기는 엘리미네이션 (탈락) 방식으로 진행되며, 효율적인 경기위원회와 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 일부 대회에서는 하루 200 회 이상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고속으로 이루어지는 마크 돌기 상황을 통제하는 단순하고 명확한 규칙의 필요성은 점점 커졌는데, 기존의 RRS 18 은 고속 경기에서의 판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35 년에 걸친 논의와 개발 과정을 거쳐, 2021 년에 <월드세일링 윈드서핑 슬라럼 경기규칙>이 제정되었다.

윈드서핑 슬라럼 경기규칙 (WSRR)은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의 경기규칙 (Racing Rules)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항목에서 "보드 경기규칙 (Competition Rules Boards)"을 클릭한 후, "개발규칙 21-06 윈드서핑 슬라럼 규칙 (DR 21-06 Windsurfing Slalom Rules)"을 선택하면 열람할 수 있다.

대회공고에는 해당 대회가 <윈드서핑 슬라럼 경기규칙>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 통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윈드서핑 슬라럼 대회에서 심판이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 N.2 일반

항의는 대부분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지 못하는 첫 번째 선수 (보통 4 위-5 위 선수)로부터 제기된다.

첫 번째 마크 돌기는 선수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첫번째 라운드에서는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큰 경우가 많다.

준결승, 특히 결승으로 갈수록 선수들의 기량이 비슷해지며, 그만큼 마크 돌기는 더욱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RRS 2 를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외에도, 위험하거나 무모한 범주에 대해서는 실격을 부과할 수 있다 (윈드서핑 슬라럼 RRS 2).

심판단은 4 위와 5 위 선수 (컷-오프 (탈락)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가 마크를 돌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항의청문이 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 N.3 경기 방식

#### N.3.1 경기 코스

##### Downwind Slal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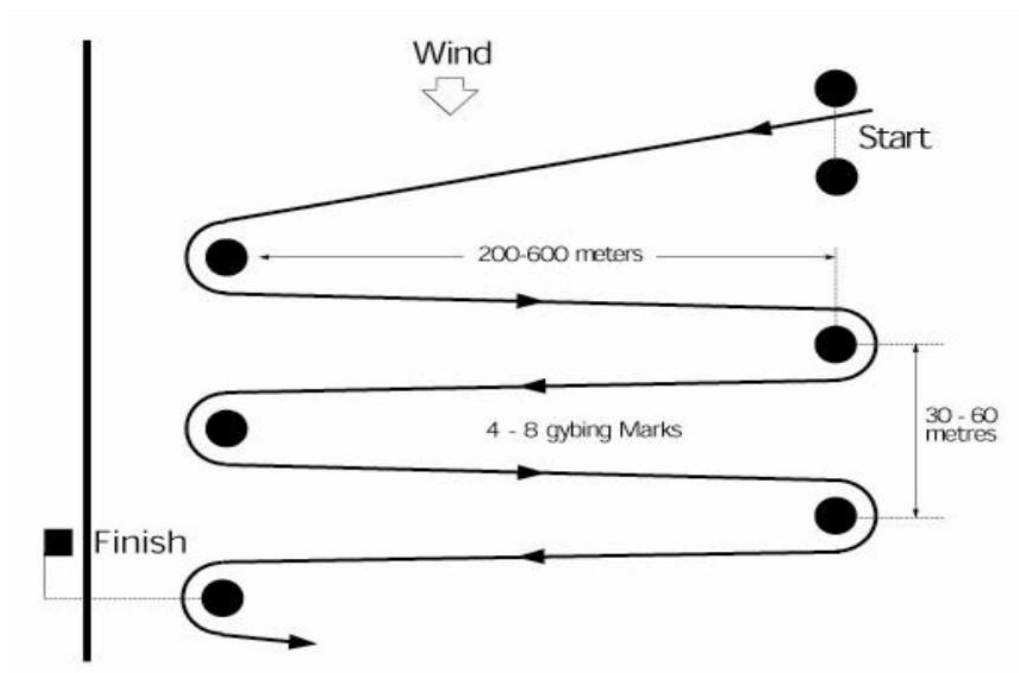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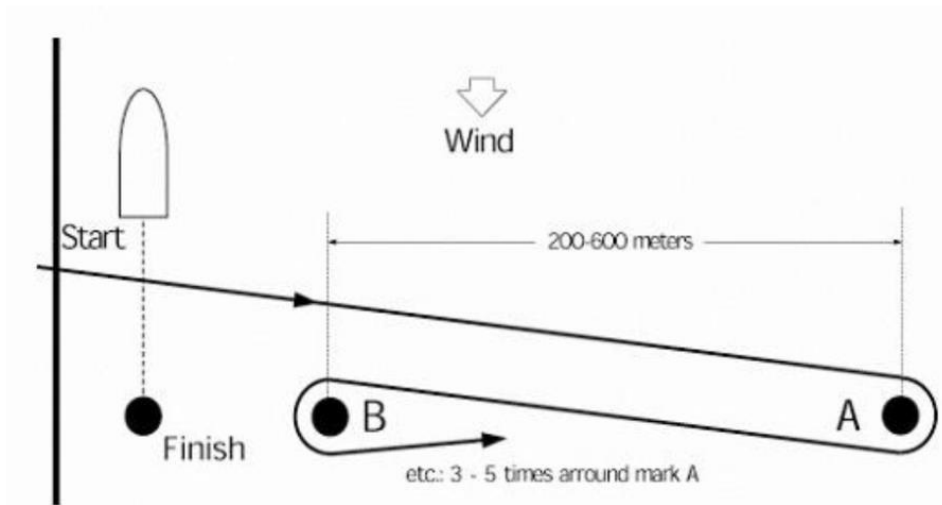


Figure of eight Slalom



**Note:** The start can be from the beach or on the water near the marks A or B. If the wind is not cross shore starts should normally be on the water. The finish can be to windward or leeward of mark B, on the water or the beach.

### N.3.2 엘리미네이션 (탈락) 방식에서의 경기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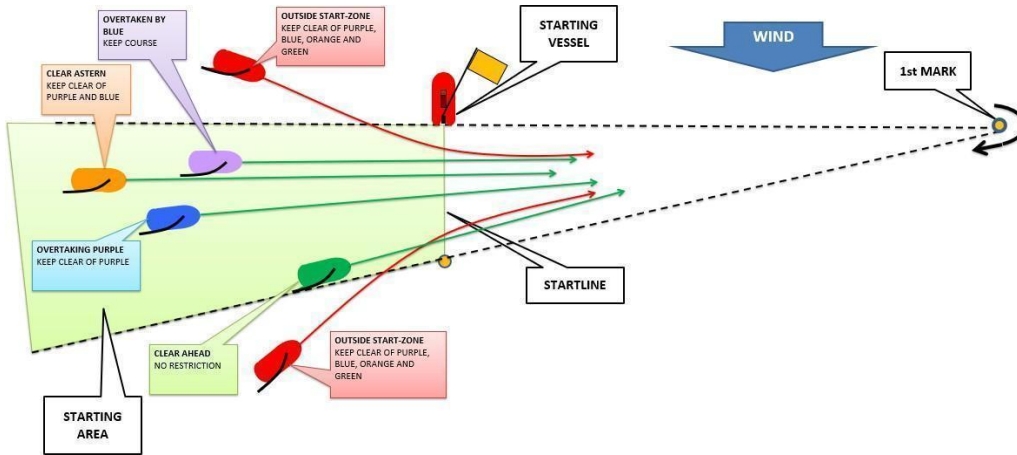
직접 엘리미네이션 (탈락) 방식: 상위 50% 진출

- 예시: 10 명 출발 시 → 5 명이 다음 히트로 진출한다.
- 이 경우 5 위와 6 위 간의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
- 1, 2, 3, 4 위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진출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보통 항의하지 않는다.
- 이는 해당 히트의 하위 4 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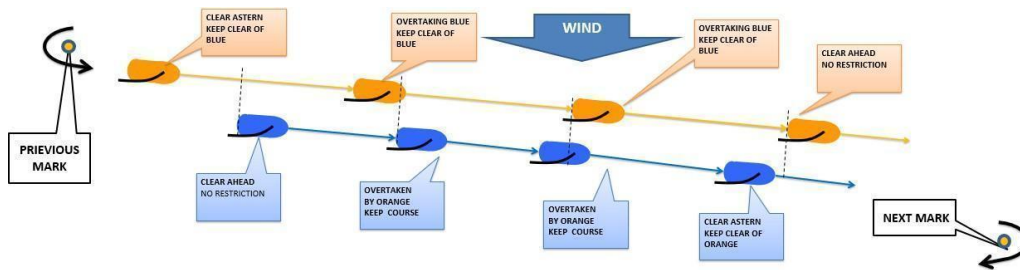
## N.4 규칙

슬라럼 경기규칙은 RRS 와 비교하여 몇 가지 중요한 수정 사항이 있다. 그것들은 윈드서핑 슬라럼 경기규칙 (WSRR) 머리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4.1 스타트 (관련) 시각적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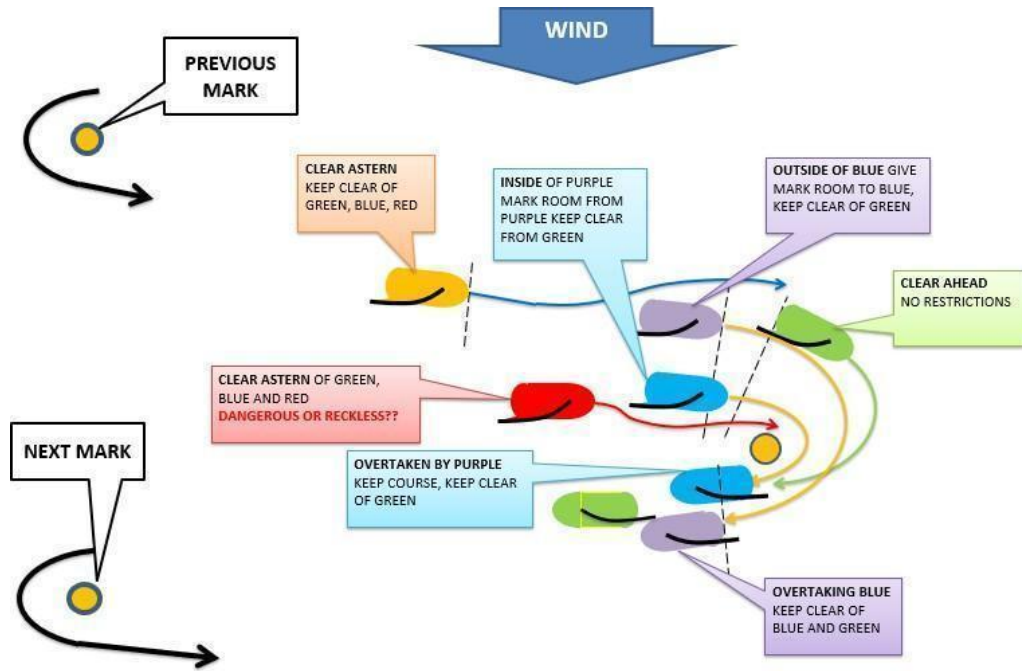


#### N.4.2 리칭 코스 (관련) 시각적 안내



#### N.4.3 마크 돌기

대부분의 항의는 RRS 18 (마크 자리)과 관련된다. WSRR RRS 18 은 보드가 마크를 돌기 시작할 때 (선수는 트래피즈 혹은 풀고, 풋스트랩에서 발을 빼며, 체중을 뒤쪽 및 풍하쪽으로 이동시키고, 마스트를 풍하쪽으로 기울인다.) 적용되기 시작한다. 고속 주행 중에는 보드 뒤에서 발생하는 물보라의 형태가 변하는 것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항의에서 중요한 점은 “선수가 마크를 돌기 시작할 때” 오버랩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1 마크의 경우, 실제로 오버랩이 발생하는 비율은 약 3~5%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보드들이 명확히 클리어 어헤드 또는 클리어 어스턴 상태에 있다.

다른 규칙과 관련된 항의는 매우 드물다.

## N.5 심판의 위치

### □ 경기 중 수상에서의 심판 위치

- 스타트 전의 행동은 보드 뒤쪽에서 관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1 마크에서는 보드가 돌기 직전인 순간의 오버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관찰한다.
- 2 마크, 3 마크에서도 보드가 돌기 직전인 순간의 오버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관찰한다.

슬라럼 경기는 고속 (초속 15m; 약 30 노트)으로 진행된다. 심판은 수상에 있을 때, 자신의 보트 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 경기 중 육상 (해변)에서의 심판 위치

고성능 쌍안경을 사용하여 다음 구역을 관찰할 것

- 스타트 구역
- 마크
- 나머지 코스 구간

□ 경기 관찰 방법

- 즉결판결과 유사하게; 보이는 내용을 소리 내어 말함;
- 마크에 접근하는 세일의 순서;
- 오버랩이 있는 경우 "오버랩"이라고 말함;
- 문제가 없으면 "문제없음"이라고 말함;
- 문제가 된 상황을 기록해 두면, 항의가 제기될 경우 미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경기가 육상 (해변)과 가까운 경우의 청문 장소:

- 타워;
- 심판 깃발로 식별됨.

□ 경기가 먼 수역에서 진행되는 경우의 청문 장소:

- 항의자와 피항의자가 계류할 수 있는 플랫폼 (고무보트);
- 심판 깃발로 식별됨.

## N.6 항의와 구제요청

항의자는 사건 발생 직후 즉시 "Protest (항의)"라고 소리지르기하여 상대 보드에 알려야 한다. 또한 항의자는 피니시 또는 리타이어 후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빨리 피니시라인의 경기위원회 (RC)에 항의할 의사를 알려야 한다.

당사자와 증인은 피니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항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가능한 한 빨리 청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항의자는 피항의자와 증인을 함께 데려오는 것이 권장된다.

항의 결과는 다음 라운드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항의청문은 최소한의 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문은 서면 항의서 없이 구두로 진행되며, 해당 히트 종료 직후 즉시 개최된다.

### **N.6.1 청문 절차**

청문은 대체로 2-3 분을 넘기지 않는다.

이 청문 절차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인 절차와 다소 차이가 있다.

사건 중 접촉이 경미하였거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순위 변동이 없었던 경우에는 규칙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는다.

1. 항의가 다음 히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

- a.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히트의 스타트를 중지하도록 경기위원회에 지시한다.
- b.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항의를 즉시 청문할 지 또는 경기 종료 후 청문할 지 결정한다.

2. 항의의 유효성 확인

- a. 피니시보트에 있는 경기위원회에 알렸는가?
- b. 수상에서 피항의자에게 알렸는가?

3. 각 선수는 상황을 최대 30 초 내로 설명

4. 심판 질의

5. 필요한 경우 증인 청취 (가능하면 피함)

6. 당사자의 최종 진술

7. 사실 확인, 결론 및 판결

8. 항의자와 피항의자에게 판결 통보

9. 경기위원회에 판결 결과 통보 (실격 또는 구제 여부 등) 및 청문 종료 알림

## N.6.2 구제

WSRR 에서 구제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 RRS 1.1 을 준수하는 도움 주기 (자신에 대한 구조는 제외);
- 대회의 경기위원회, 항의위원회, 조직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 또는 임무의 누락, 그러나 그 보드가 청문의 당사자였던 청문에서 항의위원회가 내린 판결에 의한 경우는 제외; 또는
- 보드 또는 그 보드의 지원인력의 행동이 RRS 2 에 따른 벌칙이나 RRS 69.2(h)에서 정한 벌칙 또는 경고를 초래한 경우.

엘리미네이션 (탈락) 경기에서 주어지는 구제는 다음 라운드로의 진출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라운드의 해당 히트에는 원래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보드가 경쟁할 수 있다. 결승과 준결승에서의 구제는 플리트 경기와 비슷하지만, WSRR 에서의 구제는 자신이 속한 히트에서 자신의 피니시순위 또는 마지막 순위보다 나빠질 수 없으며, 해당 히트에서의 최고 순위보다 좋아질 수 없다.

선수를 다음 라운드로 진출시키는 구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선수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었다고 심판단이 확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마지막 마크에서 7 위와 8 위 보드 간에 발생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손상으로 인해 두 경기 이상 (여러 경기)에 대하여 구제가 주어질 경우,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 116 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시리즈에서 구제가 주어질 수 있는 경기 수를 제한한다.

청문 중에, 구제가 전체 플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청문은 중단되어야 하며, 심판단은 전체 플리트를 대신하여 모든 보드가 청문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구제요청을 하여야 한다.

[www.sailing.org](http://www.sailing.org)

sport / nature / technology



World Sailing